

대통령직인수위원회

2008. 1. 4 (금)

업 무 보 고



행정자치부

보고 순서

□ 일반현황	1
□ 지난 5년간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 ...	9
□ 당면 현안사항	25
□ 대선공약 실천계획	51
□ 규제개혁방안	59
□ 예산 10% 절감 및 활용방안	67
□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73
※ 간부명단	78
※ 별첨 : 공약과제별 실천계획	81

일 반 현 황

1. 주요기능
2. 연 혁
3. 기 구
4. 정 원
5. 2008년도 예산
6. 지방자치단체 현황

1. 주요기능

국가행정 분야

- ▶ 국가 운영에 필수불가결한 기본 기능을 총괄 지원
- 정부의전(국무·차관회의 운영, 정부공식행사 주관), 국가상징 관리
- 정부혁신, 조직·정원 관리, 민원제도 개선
- 전자정부, 개인정보보호·정보보안
- 공무원 복무·연금·윤리제도 운영
- 정보공개, 기록물관리, 정부청사관리, 법령·조약의 공포 등 정부 서무 업무

지방행정 분야

- ▶ 자치제도, 지방재정, 균형발전 등 자치단체에 대한 총괄 지원
- 자치제도 개선, 지방행정 지원, 지방자치단체 감사
- 주민등록제도·지적제도 운영, 선거 및 국민투표 사무 지원
- 지방재정 및 지방세 제도 운영, 지방세 심사
- 지역균형발전 업무 총괄,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소도읍·도서·접경지역 지원,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 등 낙후·소외지역 개발

재난·안전 분야

- ▶ 사회적 재난, 자연재해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지원
- 소방·경찰 사무 지도감독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리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지원)

기타 타 부처에 속하지 않는 사무

- 과거사 등 각종 위원회 관리(전체 14개 중 8개 행자부 관리)
- 국무위원이 아닌 중앙행정기관의 법안제안 및 부서 등

※ 관장법률 : 114개(전체 1,223개 중 9.3%, 정부조직법·지방자치법 등)
대통령령 149개, 부령 60개

2. 연 혁

- '98. 2 : 국가행정 총괄 '총무처'와 지방행정 총괄 '내무부'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 출범
※ 일본도 총무청, 우정성, 자치성을 통합하여 총무성 설치('01.1)
- '99. 5 : 『중앙인사위원회』 분리
- 인사정책기능 이관 인사운영·교육·연금 기능 행자부 수행
- '04. 6 : ① 『소방방재청』 분리
- 소방·방재·민방위 운영 기능 이관
② 인사운영 및 교육기능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 연금·복무·윤리, 공무원 노조 기능은 행자부 수행

3. 기 구

○ 본부 : 2차관 · 1실 · 5본부 · 17관 · 2단 · 3센터 · 73팀



○ 소속기관 : 6개 기관

정부청사관리소 정부청사 수급계획, 건축공사, 5개청사 관리

국가기록원 기록물 수집·보존·활용, 대통령 기록관리

지방혁신인력개발원 지방공무원 및 자치행정관련 민간인 교육훈련 총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범죄 수사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분석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 정보관리, 수복대비 정책연구, 월남주민 지원

경찰위원회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 주요 경찰정책 심의·의결

4. 정 원 : 총 2,227명

- 본 부 : 926명(정무 3, 고위 49, 별정 13, 일반 785, 기능 101)
- 소속기관 : 1,289명(정부청사관리소 등 6개 소속기관)
- 전직대통령비서관 : 12명

구 분		계	정무직	고위직	별정직	일반직	계약직	경찰직	기능직
계		2,227	9	49	49	1,530	7	9	574
본 부		926	3	22	13	785	3	-	100
소 속 기 관	소 계	1,289	6	18	33	745	4	9	474
	정부청사관리소	485	-	4	14	135	-	-	332
	국가기록원	360	-	7	5	294	-	-	54
	지방혁신인력개발원	106	-	4	3	75	4	-	20
	국립과학수사연구소	292	-	3	6	227	-	9	47
	이북5도위원회	43	5	-	5	14	-	-	19
	경찰위원회	3	1	-	-	-	-	-	2
	전직대통령비서관	12	-	9	3	-	-	-	-

※ 시·도 부단체장, 기획관리실장은 국가직(79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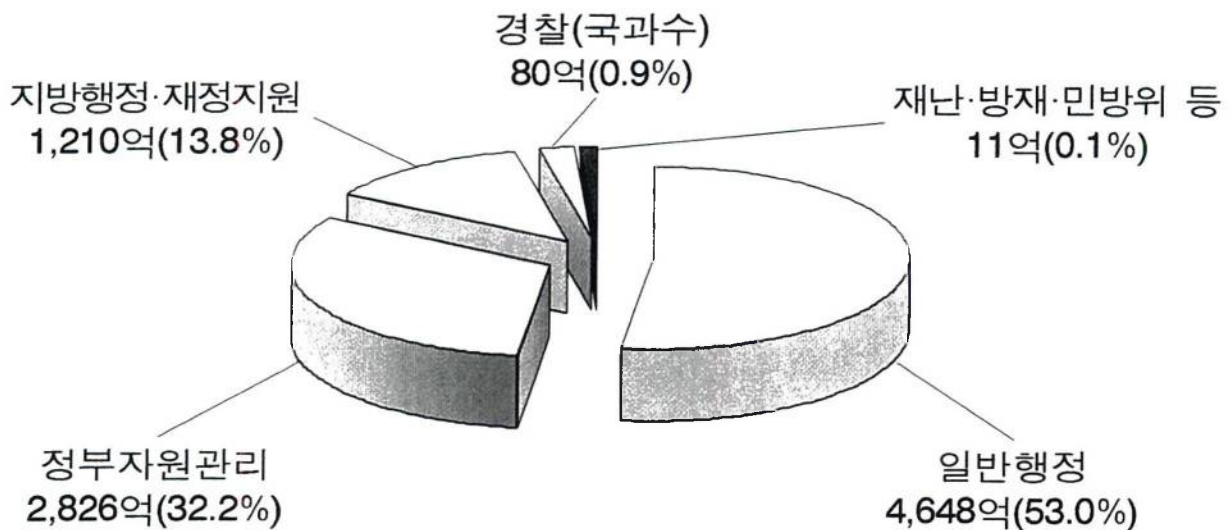
5. 2008년도 예산

- 국가예산(256조 1,721억원)의 12.5% 차지(부처중 2위) -

(단위 : 억원)

구분	예산액	비고
총계	319,353	
□ 일반회계	315,097	
○ 기본적 경비	1,701	○ 본부집행 : 24,622(7.7%)
- 인건비	1,414	
- 기본경비	287	○ 지방지원 : 294,731(92.3%)
○ 주요사업비	23,829	- 지방교부금 : 289,567
- 일반사업비	8,775	- 국고보조금 : 5,164
- 국가부담금	15,054	
○ 지방교부금	289,567	
□ 특별회계	4,256	
○ 지역개발계정	3,881	
○ 지역혁신계정	370	
○ 제주특별자치도계정	5	

<일반사업비(8,775억) 내역>



6. 지방자치단체 현황

□ 지방자치단체 수 : 총 246개

- 광역자치단체(16) : 특별시 1, 광역시 6, 도 8, 특별자치도 1
- 기초자치단체(230) : 시 75, 군 86, 자치구 69
- ※ 행정시 2개, 일반구 26개, 읍면동 3,584개(읍 212, 면 1,206, 동 2,166)

□ 지방공무원 정원 : 총 280,808명

- 시·도 : 78,660명(국가직 79명 제외)
- 시·군·구 : 202,148명
- ※ 행자부는 지방공무원 정원 및 인사 관리의 기준 제시 등 총괄 조정 역할

□ 2007년도 예산 : 111조 9,864억원(당초예산 순계규모)

- 일반회계 : 86조 5,209억원(77.3%)
- 특별회계 : 25조 4,655억원(22.7%)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계	1,119,864	100%	계	1,119,864	100%
자체수입	659,241	58.9%	경상예산	252,530	22.5%
지방세	380,732	34.0%	인건비	144,954	12.9%
세외수입	278,509	24.9%	경상경비	107,576	9.6%
의존수입	425,673	38.0%	사업예산	662,057	59.2%
지방교부세	214,083	19.1%	보조사업	364,521	32.6%
국고보조금	211,590	18.9%	자체사업	297,536	26.6%
			채무상환	33,915	3.0%
지방채	34,950	3.1%	예비비 등	171,362	15.3

지난 5년간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

〈 총괄평가 〉

◇ 행정자치부는 중앙·지방행정의 지원·조정·관리부처로 중앙과 지방행정의 종합성·통합성 유지를 통해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역할 수행'

○ 정부혁신을 통해 국가경쟁력과 행정 생산성 제고

※ 세계경제포럼(WEF)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 : 23위('06년) → 11위('07년)

○ 전자정부 구현, 민원제도 개선, 서비스분야의 인력 확충 등을 통해 대국민서비스 향상

○ 지방분권, 지방재정 확충, 지역균형발전 추진으로 지방 자치 정착 도모

○ 사회안정 및 국민의 안전한 삶 구현을 위한 선진 치안·재난시스템 구축

◇ 미흡한 부분

○ 정부조직·인력관리에 있어 민간이양, 기능재편, 인력 재배치 등 미흡

○ 정부혁신은 공직내부의 일하는 방식·절차·시스템 구축에 치중하여, 국민의 혁신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음

○ 전자정부시스템과 성과는 세계 최고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대국민 활용과 개인정보보호 부분이 다소 취약

○ 지방자치는 자율성 강화에 걸맞는 책임성 확보 및 자치 역량 강화, 지방세 확충 미흡

○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체계·예산의 중복·분산으로 효율적 추진에 한계

정부혁신

□ 정책방향

- 세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하여 정부혁신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
- '일 잘하고 책임을 다하는 정부' 구현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 정부혁신 목표 : 효율적인 정부, 봉사하는 정부, 투명한 정부, 분권화된 정부, 함께하는 정부

□ 주요사업 내용

- '성과와 경쟁' 중심의 정부혁신 인프라 구축
 - 온-나라 BPS(업무관리시스템)를 중심으로 일 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 실시간 국정관리체계 구축
 - ※ 국정관리·디지털예산회계·전자통합평가·지식관리·기록관리 등 연계
 - 성과관리 및 평가시스템의 전면적 도입 및 확산
 - ※ 정부업무평가체계, 직무성과계약제, 성과관리시스템(전 부처, 11개 시도) 등
 - 『혁신기획-진단(GII)-컨설팅-평가』의 통합관리·지원체계 확립
 - ※ 혁신수준 진단(전 행정기관) 및 컨설팅(38개 부처 439회) 실시
 - 공직사회의 기록문화 쇄신을 위해 기록관리시스템 구축, 기록정보 서비스 확대, 대통령기록관 설치
 - ※ 기록관리법 개정('07.4) 및 대통령기록관리법 제정·시행('07.7) 등

○ IT 기반의 빠르고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 전자민원 G4C : 민원안내 5천여종, 민원신청 7백여종 서비스 제공
- 나라장터 : 정부조달 전 과정의 온라인화, 연간 45억달러 절감
- 출입국심사서비스(KISS) : 입국시간 20분('04) → 8분('06)으로 단축
- ※ 『UN 공공행정상』 수상 : 나라장터('03), 정부혁신지수('06), KISS('07)

○ 혁신선도국가로서 국제적 위상 강화

- 27개 국제기구·협회에서 우수사례 50여회 수상·인증
- 행자부 성과관리시스템, 「2007 세계 BSC 명예의 전당」 수상
- ※ WEF 국가경쟁력 순위 상승('06 : 23위 → '07 : 11위)

○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정부인력 운영

- 사회복지·고용지원·치안·교육 등 대민서비스 분야 인력 증원
- ※ 학급당 학생수 감소 : 34.9명('02) → 30.9명('06)
- 본부·팀제('05), 총액인건비제('07) 등 탄력적 조직운영제도 도입

□ 향후 발전과제

새 정부의 '창조적 실용주의', '효율', '선진화' 등 새로운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그 동안 추진해 온 정부혁신의 추진 체계·방식·내용을 전면 재설계·재구축

○ 공직내부의 '일하는 방식' 위주 혁신에서 '국민을 섬기는', '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으로 대전환

○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을 위해 정부혁신의 지속적 추진 및 국가혁신으로 확산

- ※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민관공동 혁신협의회』(가칭) 설치

전자정부

□ 정책방향

- 효율적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한 정부혁신 가속화
 - ※ 전자정부 기능이관('04.3 정통부→행자부) 등 추진체계 강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국민참여 확대 등 대국민서비스 향상
 -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정부서비스 기반 구축
- ⇒ 전자정부 31대 로드맵 과제 수립·추진('03.8~현재)
(총 9,245억원 투입, '07.12월말 현재 과제추진 진척률 95.6%)

□ 주요사업 내용

- 정부업무처리 전자화로 행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온-나라 BPS, 디지털예산회계, 기록관리 등 기반시스템 구축
 - ※ 온-나라 BPS 활용률('07.1 56%→'07.8 96.6%)
 - 신청서 1장으로도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행정정보 공유확대
 - ※ 공동이용대상('03. 20종→'07. 42종), 공동이용건수('03. 3백만건→'07. 7천6백만건)
 - 지자체 공통업무 전산화 및 중앙-지방간 보고통계 온라인화
- 온라인 민원단일창구 개설을 통해 대국민 편익 증진
 - 전자민원(G4C) 서비스 고도화 및 참여포털(www.epeople.go.kr) 구축
 - ※ G4C 이용건수 ('03. 38만→'07. 1,520만건), 국민제안('02. 570건→'07. 40,900건)
 - 기업지원 단일창구(G4B), 통관 및 무역 등 기업지원서비스 확대
 - ※ 전자통관을 통한 수출입 화물처리시간 단축('02. 9.6일→'07. 3.9일)

- 기술적·제도적 인프라 강화로 지속가능한 발전기반 마련
 - 각 부처 전산실을 2개 정부통합전산센터로 통합(대전, 광주)
 -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설치 등 사이버위협 대응체계 강화

< 전자정부 성과 >

- ❖ 로드맵의 성공적 추진으로 전자정부 선도국가 위상 공고화
 - ※ UN 평가('04~'05 연속 5위), 미국 브라운대 평가('06~'07 연속 1위)
- ❖ 전자정부시스템을 통해 괄목할 만한 인적, 물적 절감효과 거양
 - ※ 인력대체(8,984명), 예산절감(1조원), 사회경제적(연간 15조원)

□ 향후 발전과제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에 치중하여 다소 미흡했던 개인정보보호 강화 및 국민·기업에 대한 서비스 이용활성화 제고

-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시스템 확대
 - 기업지원서비스 전달체계 통합, 글로벌 전자물류체계 구축 등
 - ※ 「차세대 전자정부」 핵심사업으로 추진
- 전자정부서비스 이용활성화
 - 수요자 중심 서비스 확대, 전달체계 다양화 및 품질관리 강화
 - ※ 인지도('06. 69% → '07. 85.5%), 활용율('06. 38% → '07. 41.1%)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강화
 - 조직·인력·예산 등 대응체계 보강, 기술적·제도적 대책 강화
 - ※ 전체 정보화예산 대비 보안예산은 2.9% 수준(선진국 8~9%)
- 새로운 전자정부 거버넌스 체계 정립
 - 다원화된 전자정부 추진체계 정비 및 정책과 집행기능 통합

지방행정

□ 정책방향

- 지방의 자율성 확대를 통해 분권형 국정운영 기반 조성
- 확대된 권한을 수용할 수 있는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
- 지방행정의 주요 성과를 주민 스스로 판단하는 성과공시 실시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고객과 성과위주로 전환

□ 주요사업 내용

- 지방분권 로드맵의 역점 추진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 지방분권특별법 제정('03), 제주특별자치도 도입('06), 지자체 총액인건비제 시행('07) 등 총 47개 분권과제 중 37개 완료(79%)
 - 지방이양 지속 추진으로 총 1,211건 이양 완료(5년간 971건, 80%)
- 참여·협력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여건 조성
 - 시·도지사 국정토론회, 시·도 부단체장 회의 정례화 및 중앙-지방간 인사교류 활성화 등 중앙-지방간 소통 확대
 - 지방·애로 건의사항 수렴 등 지역 현안의 체계적 관리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정('05), 제1차 국가기본계획 수립('07)
 - ※ 자원봉사 활동실적 : 5,118천명('03년) → 10,315천명('06년) 51% ↑
- 분권·자율에 걸맞는 주민 참정기반 확대
 - 주민투표('04)·소송('06)·소환제('07) 등 주민 직접참여제도 도입
 - 객관적 정보제공을 통한 주민 자율평가기능 강화('07)
 -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 살림') : 5대 분야 290개 정보

- **분권을 뒷받침하는 자치역량 강화**
 - 개방형 확대, 직위공모제 도입, 상시학습체계 구축 등 성과와 경쟁 중심의 지방인사제도 개선
 - 조직·업무프로세스 등에 대한 컨설팅으로 행정효율성 제고
- **고객과 성과 중심의 지방행정혁신 추진**
 - 4대 핵심분야(고객만족·업무프로세스·행정투명성·성과중심조직) 중점 추진 및 지방행정혁신브랜드 육성('06년 46개, '07년 20개)
- **주민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 시군구 전담조직 설치('07), 통합정보시스템 구축('07),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동사무소 명칭변경 등

□ 향후 발전과제

'선분권 후보안' 등 지방 자율성 강조로 다소 미흡했던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확대된 자율에 걸맞는 책임성 확보에 주력

- **저비용·고효율의 '생산적 지방자치' 구현**
 - 지방행정 여건변화에 따른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자체 기관 구성 자율화, 지방의회제도 개선 등 지방자치의 생산성 제고
- **확대된 자율에 걸맞는 책임성 확보를 통해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형 지방자치 구현**
- **새로운 지방행정수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
 - 국내거주 이주민 정착 지원, 지역간 남북교류협력 지원 등

지방재정 · 세제

□ 정책방향

- 지방재정력 확충 및 자치단체간 불균형 완화
- 지방세정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운용의 자율성 · 책임성 제고
 - ※ 지방분권로드맵 과제로 선정

□ 주요사업 내용



- 지방재정 규모 확충 및 재정불균형 완화
 - 교부세 법정률 인상 ('00년 15% → '05년 19.13% → '06년 19.24%)
 -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세 등 신세원 발굴 및 재산세 과표 현실화
 - 종합부동산세 신설 및 전액 지방 교부 ('07년 1조 8,892억)
 - 서울시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자치구 세수격차 '07년 14.8배 → '10년 5.4배)
- 재정운용의 책임성 · 투명성 제고

계획 · 편성 진 행 평가 · 환류

- | | | |
|----------------|---------------------|----------------|
| ▪ 지방예산 편성지침 폐지 | ▪ 지방계약제도 개편 | ▪ 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
| ▪ 지방채 총액한도제 도입 | (수의계약내역 공개, 전자계약 등) | ▪ 재정분석 · 진단 강화 |
| ▪ 사업예산제도 도입 | ▪ 세출예산 집행기준 제정 | ▪ 재정공시제도 도입 |
| ▪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 ▪ 지역공사 주민참여감독제 도입 | ▪ 교부세 인센티브 확대 |

○ 국토기반정보 주민 서비스 강화

- 세계측지계 기준 지적 기반 마련 및 지적민원 해피콜센터 운영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새주소 사업 추진
- 범정부적 부동산정보 분석·제공을 위한 부동산정보관리체계 구축

□ 향후 발전과제

지방재정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실질적 재정자치권을 확립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성과를 창출하고 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을 배양

○ 지방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구조 개편

- 지방세 구조 개편 및 세원 불균형 완화, 지방교부세 재구조화, 국고보조사업 합리적 정비

○ 성과와 책임중심의 지방재정 관리체계 강화

- 지방재정평가의 타당성·신뢰성 제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관리체계 구축, 지방예산 순기조정

○ 정확하고 체계적인 국토관리 기반 구축

- 지적·부동산 정보 서비스 품질 제고, '12년 새주소 전면 시행 차질없는 준비

균형발전

□ 정책방향

- 균형위 설치('03), 균특법 제정('04), 균특회계 신설('05) 등 범정부적인 균형발전 정책 추진
- 산업, 공간 중심에서 삶의 질을 고려한 종합적 균형발전 정책 추진
 - ※ 균형발전 추진체계
 - 균형위 : 전체 총괄·조정 / 산자부 : 기획단 운영 등 실무지원 총괄 / 기여처 : 균특운영 / 건교부 :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추진
 - 행자부: 지역개발에 대한 일부 총괄·지원기능 수행

□ 주요사업 내용

- 범정부적 균형발전 추진으로 일부 가시적 성과 거양
 - 지방 GRDP 비중('02: 51.3% → '06: 52.6%), 지방수출 비중('02: 60.9% → '06: 68.1%) 증가 및 균형발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 ※ 수도권 인구비중: '02: 47.2% → '06: 48.7%로 증가
- 유사·중복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조정체계 마련
 - 다수부처에서 수평적 연계 없이 분산 추진되는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총괄·지원기능 부여('07.3, 균특법시행령 개정)
 - ※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 시도 균특예산 검토, 지역혁신협의회 관리, 균형발전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 지역의 종합적 생활여건 개선 추진기반 마련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본격 추진('08), 옥외광고, 온천, 화장실 등 종합적 생활여건 개선 추진기반 마련

○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 『대한민국지역홍보센터』 설립('07.11), 지역자원 DB구축, 향토 산업 육성 지원 등을 통한 지역특성화 발전 유도

○ 낙후·특수지역 지원사업의 지속 추진

- 도서, 소도읍 등 낙후지역의 생활서비스 인프라 개선
- 『평택지원법』('04), 『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06) 제정으로 특수 지역 지원 강화

□ 향후 발전과제

각 부처별 분산 추진으로 사업간 유사중복의 비효율 상존 및 중앙주도의 하향식 균형발전 추진으로 지방의 자율성이 미흡

○ 광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새정부의 국정방향과 연계한 생산적 균형발전 추진체계로 재편

- 국가전체적 관점에서 경쟁과 효율을 달성하고, 분산·중복 투자 방지를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조정시스템 구축

○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의 자율·책임·경쟁체계 구축

- 균특회계 제도 개편 등 자립형 지역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균형발전의 성과를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의 질 정책 적극 추진 및 낙후·특수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공무원 윤리복지

□ 정책방향

-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 및 사기진작
- 징계·재산등록·취업제한제도의 엄정운영으로 공직기강 확립
- 성실교섭, 합법전환 등 상생·협력의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 주요사업 내용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정착('05.7) 및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06.3)
- 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05.5), 퇴직자 취업사전확인 의무화('06.1), 고지거부 사전허가제 도입('07.6) 등 재산심사 강화
 -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개발·운영('06년)
- 『공무원노조법』 시행('06.1) 및 합법노조 출범(97개, 165천명)
 - 공무원 노사간 첫 단체교섭의 성공적 타결('07.12)

□ 향후 발전과제

-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리적 공무원 연금제도 개편 및 민·관 균형을 감안한 공무상 재해보상제도 개선
- 퇴직후 청탁행위 방지를 위해 활동제한 제도 도입 검토
- 노사업무의 교섭역량·전문성 제고 및 다양한 노사협력 사업 추진을 통한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 및 불법행위 엄정 대응

재난안전

□ 정책방향

- “국민의 안전한 삶 구현”을 위한 재난안전관리 체계의 내실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가기반체계 개념도입과 관리체계 마련

□ 주요사업 내용

- 재난관리를 국가기반체계까지 확대하여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12개 부처 소관의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를 행자부에서 총괄
 - ※ 국가기반시설 지정(260개소) · 관리
-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정('04.3)
 -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기본틀 구축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
- 사후복구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예방관리체계로 전환
 - 풍수해 등 자연재난과 인적재난에 대한 대응역량 제고

□ 향후 발전과제

- 중앙과 지방, 민관을 연계한 통합적 재난체계 발전
- 선진형 생활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 · 추진
 - ※ 10년후 OECD 10위권 진입 목표
- 국가기반체계 보호 전문화와 초기 대응능력 강화
 - 국가기반시설의 등급화, 국가기반재난 조기 경보시스템 도입
- 신종 사회적 재난 유발요소별 대응시스템 개발
 - 기상이변 등 다양한 재난에 대한 대응매뉴얼 지속적 보완

당면 현안사항

1. 효율적인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
2.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3. 지방행정체제 개편
4. 지방재정구조 개편
5.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합리적 개편
6. 제17대 대통령 취임행사 추진
7. 새 정부 국정철학의 정립 및 전파

1. 효율적인 정부조직 및 인력관리

1] 현 황

□ 정부조직 · 인력

○ 기구 : 중앙행정기관 39개 (18부, 4처, 17청),

준중앙행정기관 16개 (2원, 4실, 9위원회, 1청)

- 참여정부는 대규모 조직개편 없이, 부처간 기능조정을 위해 소폭개편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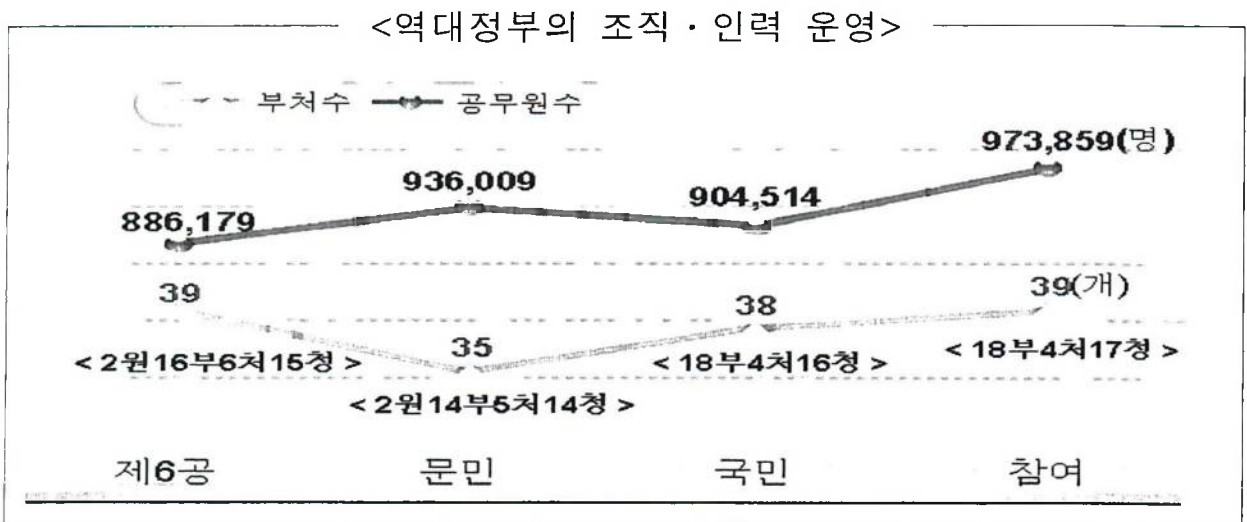
※ 소방방재청 및 방위사업청 신설, 철도청 폐지

○ 정원 : 973,859명

- 참여정부 총 증원규모는 96,512명(국가직 58,206명, 지방직 38,306명)

- 증원인력은 교육, 치안, 복지 등 대민서비스 분야 보장

※ 교원(29,262명), 경찰·교정(8,488명), 고용지원(4,403명), 보건·환경(3,745명)



□ 정부위원회 운영

- 국정과제, 과거사 문제 등 국정현안 추진을 위해 기존 부처와는 별도의 위원회 설치·운영

- '08.1월 현재 총 416개 위원회 운영(참여정부에서 52개 증가)

설치근거별	헌법	법률	대통령령
	4(1.0%)	335(80.5%)	77(18.5%)
기능·성격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헌법상자문기구
	44	368	4

※ 국정과제위원회 12개, 과거사위원회 14개

② 정부기능·조직체계 재설계

〈 기본 방향 〉

- ▶ 새 정부의 실용적 정부조직체계 구축을 적극 뒷받침
- ▶ 공직사회 동요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개편 추진
- ▶ 조직·기능 재편에 따른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① 중앙정부 조직 및 기능 재편

- 대부처·대국주의에 입각한 정부조직체계 설계

※ 일본(1부 11성), 독일(14부), 미국(15부), 프랑스(15부), 영국(18부)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조직개편계획 확정 후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률 및 직제 등의 조속한 제·개정 추진
- 실·국·과체제, 본부·팀제, 장관정책보좌관 등 하부조직 재검토
- 조직개편 및 기능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재배치 방안 마련

② 정부인력은 현 수준에서 동결

- 정부인력을 감축·증원분야로 구분 관리하여 증원 억제
 - 감축분야 : 3년 주기로 연도별 인력감축 계획 수립·운영
 - ※ 국가공무원 총정원령 제3조
 - 증원분야 : 사회복지, 보건, 교육 등 대민서비스 분야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분야 중점 보강
- 중기인력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강화
 -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전 정부차원의 거시적·종합적 인력운영계획 수립·운영
 - 인력증원분야의 주기적 진단을 통해 성과를 평가하고, 인력 재배치 기준으로 활용

③ 정부위원회의 대폭 정비

- 부처와 기능중복, 갈등소지가 있는 위원회 통·폐합
 - 중앙부처 개편 방향과 연계하여 정비를 추진하되, 국정과제 위원회(12개), 과거사위원회(14개) 등 우선 정비
-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엄격한 설치요건, 일몰제(Sun-set) 도입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위원회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참고1 정부기구 및 정원 현황

□ 기 구

구 분	현 황
중앙행정기관(39개)	· 18부, 4처, 17청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16개)	· 2원(감사원, 국가정보원) · 4실(대비실, 경호실, 국조실, 총리비서실) · 9위원회(인사위, 공정위, 청렴위 등) · 1청(행복도시건설청)

※ 헌법상 자문기관(4), 중기특위, 과거사위원회(14)는 별도

□ 정 원

○ 공무원 총정원

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법재판소	선관위
973,859 (100%)	3,486 (0.4%)	15,636 (1.6%)	951,920 (97.7%)	222 (-)	2,595 (0.3%)

○ 행정부 공무원 정원

계	국 가 직							지 방 직		
	소계	교원	경찰	우정	교정·소방	사회복지	일반행정	소계	자치단체	교육청
951,920 (100%)	604,673 (63.5%)	346,135 (57%)	102,897 (17%)	33,359 (6%)	24,919 (4%)	21,860 (3.6%)	75,503 (12.5%)	347,247 (36.5%)	280,808 (29.5%)	66,439 (7.0%)

참고2 역대정부의 인력운영 및 외국과 비교

□ 정부별 정원 변동(행정부) : 참여정부 이후 66천여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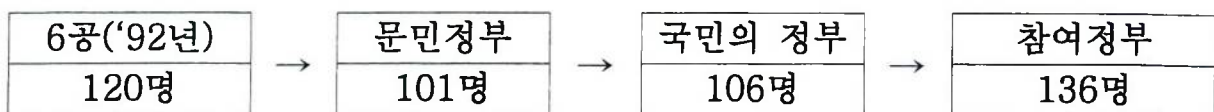
구 분	'60년	제3공 ('61~'72)	제4공 ('73~'80)	제5공 ('81~'87)	제6공 ('88~'92)	문민정부 ('93~'97)	국민정부 ('98~'03.2.24)	참여정부 ('03.2~'07.11)
국 가	123,037	362,396	438,454	477,146	565,115	561,952	576,223	604,673
지 방	111,180	71,019	150,566	222,049	310,957	357,452	308,941	347,247
행정부 계	234,217	433,415	589,020	699,195	876,072	919,404	885,164	951,920
증 감 (연평균 증감률)	-	199,198 (+7.8%)	155,605 (+4.5%)	110,175 (+2.7%)	176,877 (+5.1%)	43,332 (+1.0%)	△34,240 (△0.7%)	66,756 (+1.7%)

□ 외국과의 인력규모 비교 : 선진국의 1/2~1/3 수준

국 가	인구(천명)	공무원수(명)	공무원 1인당인구수	전체인구대비공무원비율(%)
한 국	48,297	1,342,368('06년)	36.0	2.8
일 본	126,926	4,416,332('03년)	28.7	3.5
스 페 인	39,927	2,009,206('00년)	19.9	5.0
이탈리아	57,762	3,108,803('99년)	18.6	5.4
독 일	82,188	4,537,300('00년)	18.1	5.5
뉴질랜드	3,873	228,780('00년)	16.9	5.9
미 국	282,425	19,869,558('00년)	14.2	7.0
프 랑 스	60,594	4,704,087('99년)	12.9	7.8
영 국	59,778	4,695,000('05년)	12.7	7.9

※ 인력 규모 : 「일반정부 (General Government)」 기준
 - 공무원(국가·지방) + 비영리공공기관 + 사회보장기금 + 직업군인·군무원 + 비정규직

□ 정무직 변동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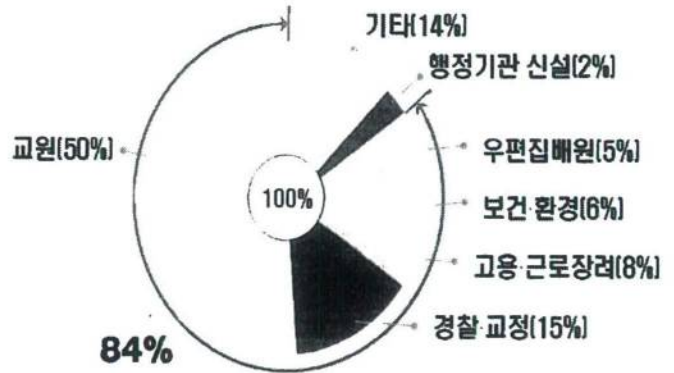


참고3 참여정부 분야별 공무원 증원내역

□ 국가공무원 : 58,206명

○ 증원 인력의 84%가 교육, 치안, 복지 등 대민서비스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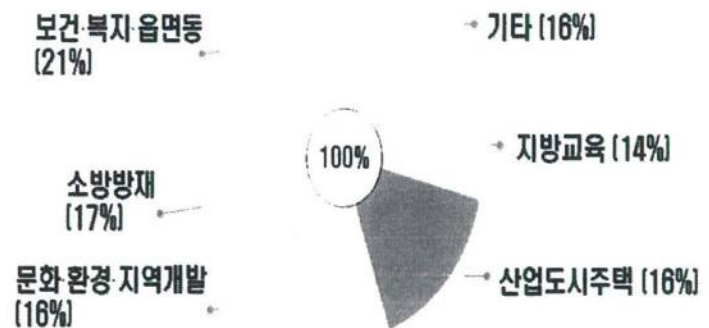
· 교원	(29,262명)
· 경찰·교정	(8,488명)
· 고용·근로장려	(4,403명)
· 보건·환경 등	(3,745명)
· 우편집배원	(2,694명)
· 행정기관 신설	(1,333명)
· 기타	(8,281명)



□ 지방공무원 : 38,306명

○ 보건·복지, 소방·방재, 문화·환경 등 주민서비스 중심 보강

· 보건·복지·읍면동	(8,049명)
· 소방방재	(6,367명)
· 문화·환경·지역개발	(6,241명)
· 산업·도시·주택	(6,040명)
· 지방교육	(5,510명)
· 기타	(6,099명)



참고4 정부위원회 현황

□ 정부위원회 수 : 총 416개

기능·성격별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헌법상자문기구
	44	368	4 ^{※)}

※) 국가안전보장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설치근거별	헌 법	법 률	대통령령
	4(1.0%)	335(80.5%)	77(18.5%)

소속별	대통령소속	총리소속	중앙행정기관소속	독립기관형
	28(6.7%)	52(12.5%)	333(80.0%)	3(0.7%) ^{※)}

※) 방송위, 국가인권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위

□ 정부위원회중 특수목적 정부위원회 : 총 26개

- **국정과제위원회**
 - 총 12개 위원회, 206명 근무(각 부·처·청 소속 사무기구 제외, '07.6 현재)
 - ※ 2개위원회 통폐합, 1개위원회 추가
 - 빈부격차·차별시정위 + 사람입국·일자리위 ⇒ 양극화 민생대책위('07.6.15)
 - FTA국내대책위('07.5)
- **과거사 관련 위원회**
 - 총 14개 위원회, 359명 근무(각 부처 소속 사무기구 제외, '07.6 현재)

□ 연도별 추이

연 도 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위원회수	383	319	352	366	364	368	358	381	403	416
전년대비 증 감	+3	△64	+33	+14	△2	+4	△10	+23	+22	+13

□ 위원회 정비계획 및 실적 : '07년 계획 90개

구 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계	'95년	'97년	계	'99년	'01년	계	'03년	'05년	'07년
계	97	54	43	218	145	73	251	95	66	90
통 폐 합	77	43	34	166	117	49	121	64	40	17
운영개선	20	11	9	52	28	24	130	31	26	73
※위원회수 (행정위)		348 (16)	380 (23)		319 (29)	366 (33)		368 (37)	381 (42)	416 (44)

① 6공화국('88.2~'93.2) : 취임 1년 10개월 후 개편, 추가로 1차례 개편

- 개편시기 : '89. 12
- 추진방식 : 행정개혁위원회('88.5~'89.7) 건의를 토대로 정부입법으로 추진
- 주요내용(+2처 △1청)
 - 문화공보부 → 문화부 + 공보처, 환경청 → 환경처
- ※ '90.2 총무처 주관하에 정부입법으로 소폭 개편(경찰청, 통계청 신설 등)

기 구 : 2원 16부 4처 13청 → 2원 16부 6처 15청 (+2처 +2청)
 정 원 : 705,053명 → 886,179명 (+181,126명)

② 문민 정부('93.2~'98.2) : 취임 직후(10일내) 소폭개편, 추가로 2차례 개편

- 개편시기 : '93. 3. 6
- 추진방식 : 당 주관하에 의원입법으로 추진
- 주요내용(△2부)
 - 문화부 + 체육청소년부 → 문화체육부, 상공부 + 동력자원부 → 상공자원부
- ▶ '93.2.26 미개편 부처 장관 임명, 3.6 개편된 2개부처 장관 임명
- ※ 1차 추가개편('94. 12)
 - 「행정쇄신위」 건의를 토대로 정부입법으로 추진(재경원, 건교부 신설 등)
- ※ 2차 추가개편('96. 8)
 - 총무처 주도로 정부입법으로 추진(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신설 등)

기 구 : 2원 16부 6처 15청 → 2원 14부 5처 14청 (△2부 △1처 △1청)
 정 원 : 886,179명 → 936,009명 (+49,830명)

③ 국민의 정부('98.2~'03.2) : 취임 즉시(3일내) 대폭개편, 추가로 2차례 개편

- 개편시기 : '98. 2. 28
- 추진방식 : 「정부조직개편심의회」 주도로 의원입법으로 추진
- 주요내용(△2원 +3부 △3처 +2청)
 - 재정경제원, 통일원 → 재정경제부, 통일부(부총리 폐지)
 - 과학기술처 → 과학기술부, 내무부 + 총무처 → 행정자치부
 - 공보처 폐지, 기획예산위원회·예산청·식품안전청 신설
- ▶ '98. 3. 3 국무총리 서리 및 장관 임명
 - 국무총리(김종필) 임명동의안 국회 미처리로 장관임명 지연

※ 1차 추가 개편('99.5)

- 「경영진단조정위」 진단결과를 토대로 정부입법으로 추진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 신설 등)

※ 2차 추가 개편('01.1)

- 「정부기능조정위」 검토결과를 토대로 정부입법으로 추진
(여성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설 등)

기구 : 2원 14부 5처 14청 → 18부 4처 16청 (△2원 +4부 △1처 +2청) 정원 : 936,009명 → 904,514명 (△31,495명)
--

④ 참여 정부('03.2~'08.2) : 대폭 개편 없이 5차례 소폭 기능 조정

기구 : 18부 4처 16청 → 18부 4처 17청 (+1청) 정원 : 904,514명 → 973,859명 (+69,345명)

2.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 공무원연금제도 현황

- 20년 이상 재직공무원에게 납부액의 3.6 ~ 4.5배 지급
 - 개인·정부 각 보수월액의 8.5% 부담
 -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의 50%~76% 지급
 - 연금수급자 25만명('07년)으로 지속적 증가
 - 연금수급자(천명) : ('90)25 → ('95)56 → ('00)150 → ('07)252
- 저부담·고급여 수급구조 등으로 재정적자 급증, 연금개혁이 시급한 상황임
 - 정부보전금(억원) : ('04)1,742→('05)6,096→('07)9,725→('08)12,684

□ 지금까지 연금제도 개선 추진상황

1. 추진방향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재정안정 추구
- 공무원의 적정노후소득수준 보장
- 국민과 공무원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대안 도출 필요
 - 공무원노조는 OECD 선진국 수준의 정부 부담 주장
 - 미국(30.5%), 일본(16.45%), 독일(47.1%), 프랑스(51.9%), 한국(11%)
 - 언론, 시민단체, 학계는 공무원의 부담 증가를 주장

2. 추진경과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운영('06.7~) 및 건의안 논의 ('07.1)

-
- 급여산정기준 : 퇴직전 3년 평균 보수월액 → 전기간 평균 과세소득
 - 기여율 인상 : 과세소득 기준 5.526% → 6.5%('08) → 8.5%('18)
 - 지급률 인하 : 30년 재직시 전기간 평균과세소득 기준 64% → 51%
(20.3% 감소)
 - 연금수급요건 완화 : 20년 → 10년
-

○ “그대로 내고 덜 받는” 구조로 국민연금법이 개정('07.7)됨에 따라, 개선안 재검토중

- 당초 건의안에 별다른 이견이 없는 사항(연금수급 요건, 급여산정기준 등)은 그대로 유지
- 기여율 인상·지급률 인하로 재정부담 최소화
- 퇴직수당을 민간퇴직금수준을 감안·조정하여 연금화
※ 공무원 퇴직수당은 민간의 30%~40% 수준

□ 향후 추진계획

○ 연금개혁문제는 군인, 교원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

- ※ 개선안 및 추진일정은 인수위와 협의

3. 지방행정체제 개편

□ 추진배경

- 현행 지방행정체제는 지방화·지식정보화·세계화의 변화 수용 한계
 - 지역발전역량 강화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저비용·고효율의 선진 지방행정체제 구축 필요
- 그간 체제개편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 등의 문제로 연구·논의의 대상으로만 거론
 - 선진화에 대한 국민적 기대, 정치일정('10 지방선거), 신정부 초기의 추진력 등 감안시 금년이 체제개편 추진의 최적기

□ 문제제기

- 자치단체의 자생적 발전역량 확보에 한계
 - 도시는 발전에 필요한 절대면적 부족, 농촌은 지속적 인구감소로 독자생존 기반 붕괴
 - ※ 광명 등 13개 시 100km² 미만(시평균 513), 군 평균인구: 74천명('95)→66('00)→56('07)
 -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 환경·교통 등 대도시광역행정 수행곤란
 - ※ 재정자립도: 최고 서초구-90.5%, 최저 부산서구-13.5%
- 다계층·중복구조의 비효율성으로 국가경쟁력 저하
 - 계층별 절차적 규제 등 거래비용 증가, 도·시군간 상호 갈등
 - 경제권역과 행정구역의 불일치로 인해 지역과 국가경쟁력 약화

□ 개편방안

① 시·군·구 행정체제 개편

- 기초자치단체의 자생적 발전을 위해 인구·면적·재정규모가 취약한 시·시, 시·군, 군·군, 자치구간 통합

※ '94~'98 시군통합 42시 + 39군 → 40시

- 대도시 행정의 통일성·일체성 강화를 위해 대도시 중심으로 자치구 제도 개편

- 자치구를 특별·광역시의 하부 행정기관으로 전환(일반구화)
- 광역과 기초의원 겸직, 구의회의 제한적 의결권 부여 등

② 시·도 행정체제 개편

- 행정구역과 경제권역의 일치를 위해 인구·면적에서 발전 잠재력이 한계에 도달한 광역시와 도 통합

- 도의 기능을 대폭 조정하여 도와 시군간 중복행정 해소

- 도는 광역행정(도로 등 경제인프라 구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을 일부 통합하여 수행
- 시·군은 주민 관련한 모든 서비스 담당

③ 행정계층구조 개편(자치1계층화)

- 도를 폐지하고 2~5개 시·군을 통합하여 전국을 40~70개의 광역시체제로 개편

⇒ 총선('08.4) 이후 국회특위의 본격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형성

※ '09년 상반기 입법 추진, '10년 지방선거 이전 개편 완료

4. 지방재정구조 개편

가. 지방재정 현황 ('07년 당초예산 순계 기준)

- 예산규모 : 111조 9,864억원 (단위 : 원)

자체재원 69.4조(62.0%)			의존재원 42.6조(38.0%)	
지방세 38.1조(34.0%)	세외수입 27.9조(24.9%)	지방채 3.5조(3.1%)	지방교부세 21.4조(19.1%)	국고보조금 21.2조(18.9%)

※ 국가 대 지방(재정사용액 기준) 42.3% : 57.7%

- 재정자립도 : 전국평균 53.6%(최고 서울서초 90.5%, 최저 경북봉화 7.4%)
-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 미해결 단체 : 140개(57%)

나. 문제제기

- 의존재원 중심 재정책충으로 지방재정 규모는 증가된 반면 지방세 비중은 감소하여 자치와 분권원리 구현 미흡
 - ※ 총 조세 중 지방세 비중 ('02) 23.3% → ('07) 20.5%
-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구조로 지역경제 발전과 연계성 부족, 지방세목의 영세성 및 수도권에 세원 편중
 - ※ 재산과세 49.4%(18.8조원) / 소득·소비과세 31.1%(11.8조원)
- 지방교부세 법정율은 인상되었으나 실질적 재정책충 효과는 미흡하고,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 유도기능 미약
 - ※ '00년 이후 법정률 인상(4.24%p)은 지방양여금 폐지 통폐합분(3.3%p)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보전분(분권교부세, 0.94%p)의 합계와 동일
- 국고보조사업의 급증으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체사업 예산 비중 감소
 - ※ 자체사업 예산 비중 : ('05) 30.5% → ('06) 28.5% → ('07) 26.6%

다. 중점 추진과제

① 지방세 구조 개편

□ 지방세 현황 ('07년 당초예산 순계 기준)

○ 16개 세목, 총 38조 732억원[광역 27조(71%), 기초 11조(29%)]

< 세목별 세수 규모 >

· 등록세	6조 7,918억원(18%)
· 취득세	6조 5,179억원(17%)
· 주민세	5조 7,518억원(15%)
· 지방교육세	3조 9,858억원(11%)
· 재산세	3조 3,013억원(9%)
· 주행세	2조 8,051억원(7%)
· 담배소비세	2조 5,099억원(7%)
· 자동차세	2조 479억원(5%)
· 기타	4조 3,617억원(11%)

□ 개편방안

- ▶ 세목 통·폐합 및 조정을 통한 자치단체간 세원불균형 완화
- ▶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비중 확대(20.5% → 25%)

① 지방세 세목체계 간소화

- 취득세·등록세 통합, 부동산 거래세로 단일화
-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를 통합, 재산보유세로 개편
- 일부 세목 통·폐합 및 부가세(지방교육세) 본세 포함

②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 구조 개편

- 주민세와 법인·소득세 일부를 세원으로 지방소득세 신설
- 부가가치세를 국가와 지방간 공동세화 하는 지방소비세 신설
- ※ 일부지역에 편재된 지방세 등은 국세로 전환

③ 세원불균형 완화방안 강구

- 자치단체 계층별 세목 재배분 및 공동과세 등 추진

2 지방교부세 개편

□ 지방교부세 현황 : 24.5조('07년 최종예산 기준)

종 류	재원규모	기 능	비 고
보통교부세	20조 6,912억	재정부족단체 기본경비 보전	내국세 총액의 19.24%
특별교부세	8,268억	재해대책, 지역현안, 인센티브	
분권교부세	1조 1,053억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분 보전	
부동산교부세	1조 8,892억	세수감소분 보전 및 균형재원	종합부동산세

□ 개편방안

- ▶ 신규수요 증가에 상응하는 지방 가용재원의 확충
- ▶ 경쟁·성과 중심 재원배분 및 지역발전 지원기능 강화

① 지방교부세 범정을 인상 (내국세 총액의 19.24% → 21.24%)

- 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의 90% 이상 보전, 낙후지역 지원 강화
 - ※ 재원보전율 : ('05) 86.2% → ('06) 86.5% → ('07) 88.4%
- 복지재정 부담이 큰 광역시 자치구에 교부세 직접 교부 검토

② 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 보통교부세는 기본적 수요 중심으로 산정(균형수요, 인센티브 분리)
 - ※ 특별교부세는 교부기준 명확화, 집행상황 점검 등 투명성 제고
- 교부세 인센티브를 하나로 통합, 성과교부세 도입
- 균특회계 등 지역발전지원 기능 통합, 지역발전교부세 도입
 - 자치단체가 지역차원의 SOC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자율권 부여
 - ※ 재원(안) : 8.1조원 (균특 5조 + 부동산 2조 + 보통 0.9조 + 분권 0.2조)
- '10년 폐지예정인 분권교부세 중 전국적인 균형이 필요한 복지사업은 국고보조금 환원, 기타 사업은 보통교부세 또는 지역발전교부세로 개편

③ 국고보조사업 정비

□ 현 황

- 최근 5년간 지방의 총 예산은 연평균 5.8% 증가한 반면, 국고보조사업 예산은 연평균 17.5% 증가

구 분	'03	'04	'05	'06	'07	증가율
국고보조사업	16.8조	18.9조	23.0조	26.2조	32.0조	17.5%
국고보조금	11.1조(66%)	12.5조(66%)	15.3조(67%)	18.3조(70%)	20.9조(65%)	17.1%
지방비부담	5.7조(34%)	6.0조(32%)	7.3조(32%)	7.4조(28%)	9.7조(30%)	14.3%

※ 재정용자금, 수익자 부담금 등 제외

□ 개편방안

- 사업내용에 대한 정밀진단을 통해 지방이양 및 통·폐합 추진
 - ※ 일본은 '04~'06년 중 약 4조엔의 국고보조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방에 이양
- 국가-광역-기초간 재원분담 비율 재정비
 - 국가시책사업, 전국적 통일을 요하는 복지사업 등은 국고보조율 인상
- 국고보조금 결정과정에 자치단체 참여 확대
 - 지방비부담심의회 기능 보강, 지방 4대 협의체 역할 제고 등

④ 국가-지방간 재정협의시스템 구축

- 국가재정은 매년 대통령 주재 재원배분회의를 개최하는 반면, 지방재정은 공식적 논의기구 부재
 - ※ 기초노령연금, 학교용지 확보 등 지방비 부담에 대한 자치단체의 반발 초래
- 『고위지방재정전략회의』 설치·운영
 -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의 연계성 강화 및 국세의 지방이양,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 등 주요 정책결정 수행
 -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지방 4대 협의체 대표 등이 참여

5. 균형발전 추진체계의 합리적 개편

균형발전정책 추진에 있어 정부 부처간, 중앙·지방간 연계 부족으로 중복투자 및 효율성 저해로 통합·조정 필요

□ 현 황

- 참여정부 들어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 부처별로 다양한 소관 균형발전사업 추진

※ 균특회계('07년 총6.8조) : 개발계정(4.9조), 혁신계정(1.4조), 제주계정(0.3조)

- 균형발전정책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균특법시행령을 개정('07.3), 행자부가 지역개발에 대한 일부 총괄·지원기능 수행

※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3~5월), 균특 시도 예산안 검토(6월)

⇒ 균형위는 균형발전정책의 기획·조정, 산자부·행자부·예산처는 균형위를 실무 지원, 각 부처는 소관 관련정책 추진

※ 건교(행정·혁신도시), 교육(누리사업), 과기(지역R&D투자) 등

균형발전위원회
(사무국: 균형발전기획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정책 총괄·조정 ▪ 국가균형발전계획 심의·조정

산업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균형발전계획 수립 총괄 ▪ 지역전략산업 및 클러스터 육성 등 ※ 균특법 소관

행정자치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 균형발전계획 수립 지원 ▪ 균형발전사업 평가 ▪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총괄·지원 등

기획예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균형발전특별회계 운용·관리 ▪ 균형발전영향평가 제도 운영

□ 문제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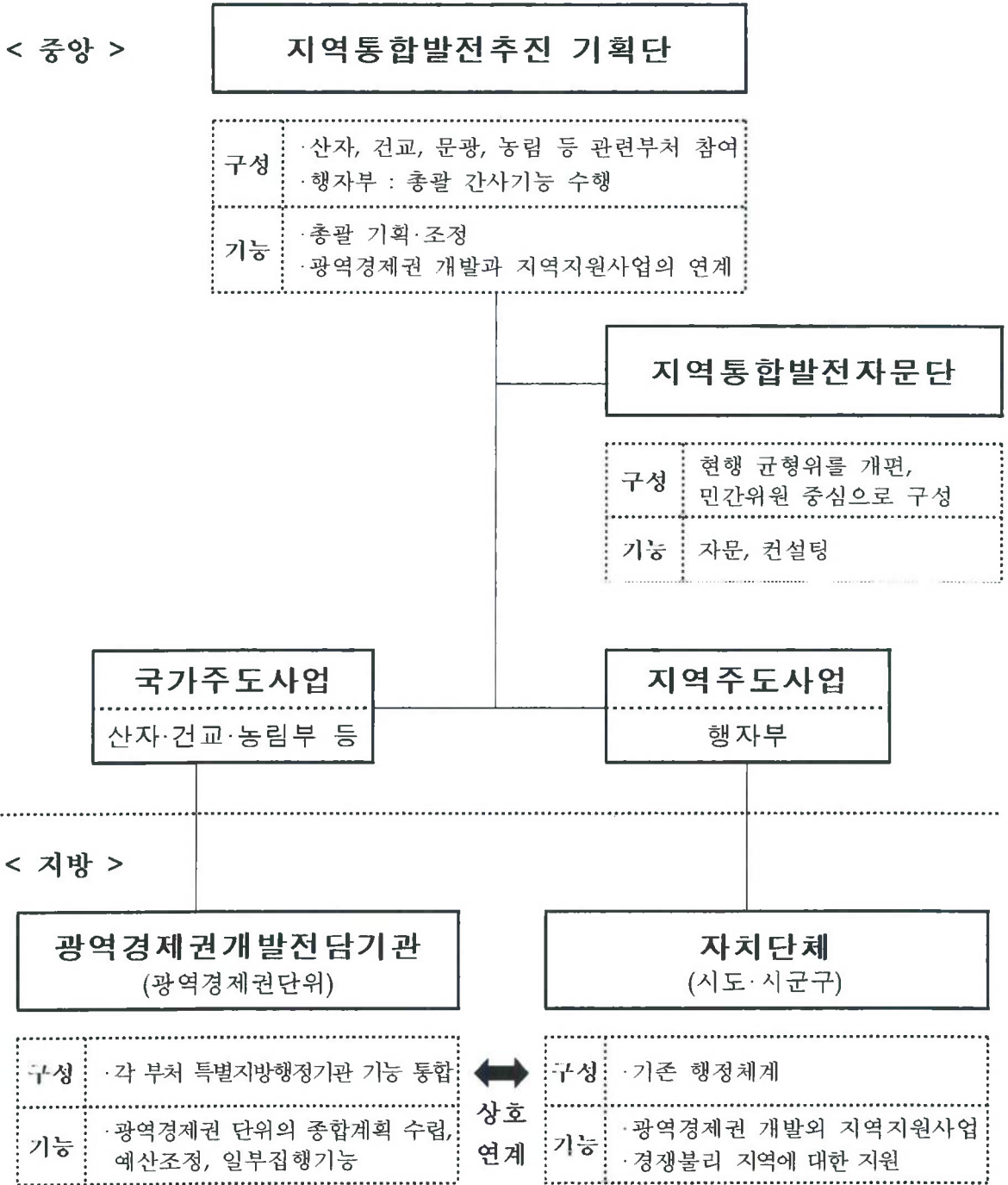
- 추진체계 분산으로 정부 부처간, 중앙-지역간 연계 부족
 -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있어 비효율 및 유사 중복투자 여전
- 행자부에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총괄·지원 역할이 부여되었으나, 균특 예산조정권 결여 등 실질적 역할 수행에 한계
- 중앙주도의 사업 개발 및 추진으로 지방의 자율성 미흡

□ 개편방안

- 국가차원의 통합·조정시스템 구축
 -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가칭)『지역통합발전추진기획단』 구성, 중앙부처간, 중앙·지역간 사업 연계·조정으로 유사·중복 해소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광역경제권단위 개발 추진체계 구축
 - 권역별 『광역경제권개발전담기관』 및 『광역경제권지원특별회계』 신설
 - ※ 전담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 추진
-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역주도의 자율·책임·경쟁체제 구축
 - 광역경제권 개발과 연계, 기존 지역지원사업을 통폐합
 - ※ 균특을 『지역발전교부세』로 개편, 포괄적 재정지원으로 자율성 부여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행자부로 이관,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의 연계
 - 자율에 따른 책임성 부여를 위한 성과평가 등 성과관리 강화
 - 지자체간 경쟁유도를 위한 특별지원프로그램운영
-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및 (가칭)『지역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필요

< 추진체계 개편(안) >

추진
체계



재원

「광역경제권지원특별회계」

- 균특회계 혁신계정
- + 기타 지역개발 관련 특별회계

「지역발전교부세」

- 균특회계 개발계정
- + 부동산교부세 등 일부 교부세 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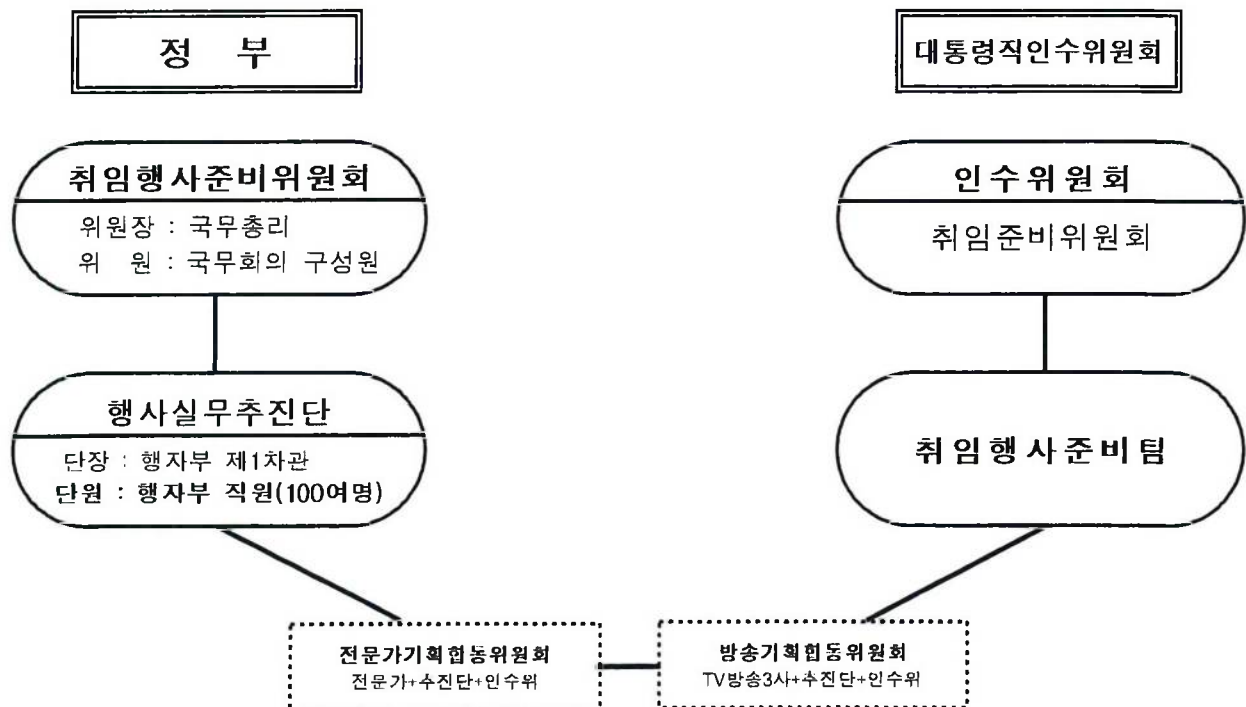
6. 제17대 대통령 취임행사 추진

〈 추진 방향 〉

- 『이명박 정부』의 국정철학과 비전을 국내외에 선포하는 국가 홍보의 장으로 활용
- 각계 각층의 국민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대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내실있고 품위있게 거행

□ 취임식 행사 추진기구

- 정부와 인수위에서 각각의 추진기구를 구성하되 기본방향 및 구도는 인수위에서, 소정부적 지원 및 실행은 행자부가 담당
- 행사에 관한 전문적 검토는 인수위와 행자부간 합동조직이 담당



□ 주요 행사계획(잠정, 별도 보고)

※ 인수위(취임행사 준비위)와 협의하여 결정

○ 임기개시 상징행사 : '08.2.25(월) 00:00

○ 국립묘지 참배 : '08.2.25(월) 오전, 국립묘지 현충탑

○ 대통령 취임식 : 취임선서, 취임사, 경축공연 등

- (1안) : 국회의사당 앞 광장(4만5천명 내외)

- (2안) : 서울시청 앞 광장(8,000명 내외)

- (3안) : 광화문 광장(2~3만명 내외)

○ 경축연회

- '08.2.25(월) 오후, 국회 중앙홀 / 3부요인, 주한외교단 등 약 1,000명

○ 외빈만찬

- '08.2.25(월) 저녁, 청와대 영빈관 / 외빈, 외교사절 3부요인 등 약 200명

※ 건국 60주년 기념행사 준비

○ 추진방향 : 건국 60주년을 맞아 국가위상에 걸 맞는 대대적
기념행사 거행

○ 행사내용 : 학술대회, 기념행사 등(민간단체와 연계)

○ 행사준비 : 새 정부 출범이후 준비위원회 구성, 추진

7. 새 정부 국정철학의 정립 및 전파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정립하고 공직사회에 전파·확산시킴으로써 국정운영의 추진동력을 확보

□ 새 정부 국정목표와 국정철학 구체화

- 창조적 실용주의, 포용적 자유주의, 선진화 등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철학 T/F』에서 토의·확정된 내용을 토대로 실천계획 작성

※ 서구의 실용주의, 우리나라의 ‘實事求是’ 철학을 토대로 이론적 기반을 정립하고, 외국(중국 등소평, 프랑스 사르코지, 독일 메르켈 등)의 실용정부 사례 연구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

- ‘국민을 섬기는 실천하는 공직자상’ 정립
- 기관별 실정에 맞는 실천강령 제정 및 실행

□ 장·차관 워크숍 및 실·국장 연찬회 실시

- 장·차관 워크숍 개최 : 3월 중순, 1박2일 (100여명)
- 실·국장 연찬회 실시 : 3월 하순 (1,500여명, 순차 실시)

※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연찬회 별도 추진

□ 전 공직자 대상 기관별 자체교육 실시

- 기관장 주재로 자체 교육계획 수립·시행
-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실시 의무화

※ 새 정부 국정철학 관련 강사단 구성, 학습교재 발간·지원 등

대선공약 실천계획

□ 행정자치부 공약과제 : 총 43건

- ◇ 국가행정 분야 : 14건
 - 정부조직 개편, 공무원 윤리·복지 강화(11건)
 - 전자정부 고도화 및 개인정보 보호(3건)
- ◇ 지방자치 분야 : 19건
 - 지방분권 촉진, 자치제도 개선, 재난대응체계 정비(9건)
 - 지방재정 건전화, 지방세 개편, 지방공기업 혁신(10건)
- ◇ 지역경제·균형발전 분야 : 10건
 -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6건)
 - 낙후·특수지역 개발 촉진(4건)

□ 공약과제 분석

구 분		총 계	국가행정	지방자치	지역경제
계		43	14	19	10
추진시기	단기('08년)	19	8	5	6
	중기('09년)	18	4	11	3
	장기(임기말까지)	6	2	3	1
추진방향	신규정책	13	4	4	5
	기존 제도 보완·발전	30	10	15	5
추진방법	예산조치 수반	19	5	7	7
	법령 제·개정	38	12	18	8

※ 공약과제 실천을 위해 5년간 총 3조 4,577억원 소요 예상

□ 실천계획

- 우리부 국정수행의 최우선 과제로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성공적으로 추진, 『이명박 정부』의 '신발전체제'를 적극 뒷받침
- 향후 실효성 있는 세부 실천계획 수립 및 집행, 추진성과 점검·보완 등 사후관리에 만전

※ 각 공약과제별 실천계획 : 별첨

〈단기과제(19건)〉 - '08년 완료

공약과제	실천계획
1. 정부기능 통합·재편 및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8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기능의 통합·재편('08년초) ▪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08~'09)
2. 국정홍보체계 근본적인 혁신(9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08년초)
3. 사회다양성위원회 설치(9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법령 제·개정('08년초)
4.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9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기능 조정 및 법령 제·개정('08년초)
5. 안전관련 조직체계 정비(9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조직법 개정('08년초)
6.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9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안 마련 및 입법 추진('08년)
7. 뇌물·청탁사건 연루 공직자 중징계(10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마련 및 훈령 제정('08년)
8.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 강화(10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모니터링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08~계속), 종합관리시스템 구축('09~계속)

공약과제	실천계획
9. 지방 4대 협의체 법정 기구화(107p)	▪ 지방4대협의체 참여보장('08년)
10.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110p)	▪ 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08년)
11. 자동차산업 관련 지방세제 지원(112p)	▪ 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08년)
12. 지방교부세율 2%이상 증액(114p)	▪ 인상안 마련 및 법령 개정('08년)
13. 특별교부세를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116p)	▪ 개선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08년)
14. 지자체 향토산업 육성 지원(118p)	▪ 실태조사 및 법률 제정('08년)
15. 읍면동사무소 등을 창업공간으로 활용(120p)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법령 개정('08년)
16.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122p)	▪ 낙후지역통합법안 마련, 지역진단제도 마련, 차등보조율제도 마련('08년)
17.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자립경제 활성화 지원(125p)	▪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보완 및 법령 개정('08년)
18.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관광레저·대학클러스터로 구성(128p)	▪ 발전종합계획 수정·보완('08년)
19. 부평미군기지 이전 및 명품형 도시공원 조성(130p)	▪ 발전종합계획 수정·보완('08년) ▪ 사업추진('09~'10)

《중기과제(18건)》 - '09년 완료

공약과제	실천계획
2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136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비방안 수립('08년) ▪ 법령 개정('09~'10)
21. 가족간호휴가제 실시(138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방안 마련('08년), 법령 개정('09년)
22. 미래형 도시모델 u-City 등 u-라이프 구현(14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타당성 조사 및 ISP 사업 ('08년) ▪ u-라이프 서비스·통합센터 개발·보급('09~'12)
23. 밝고 건강한 디지털 문화공동체 구성(14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책 수립 및 시스템 재설계('08년) ▪ 전송데이터 암호화('09~'10) ▪ 인증체계 개선('09~'11)
24. 경찰자치제 확대·강화 (14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경찰법 입법('08년) ▪ 시행령·규칙 제정 및 시범실시('09년) ▪ 전면실시('10년)
25. 교육자치 확대·강화 (14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방안 마련('09년) ▪ 지방교육체계 개편('10년)
26. 사회적 갈등관리·분쟁 해결제도 체계화(152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시스템 구축('08년) ▪ 분쟁조정제도 내실화 방안 마련('09년)
27. '희망복지 129센터'를 통합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 운영(15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생활서비스법률 제정('08년) ▪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08~'11)
28. 이주민 이해증진 및 지원시책 추진(15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센터 등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운영('08년) ▪ 프로그램 개발('09년) ▪ 순회교육·실태조사(매년 실시)
29. 행자부의 역할을 지방 분권의 창도자로 전환 (15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간 가교역할 정립('08년)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08~'09) ▪ 지방행정의 책임성·역량 강화 등('08~계속)
30. 안전관련 법령체계 정비(16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방안 연구용역('08년) ▪ 법률 개정 및 조직·기능 재조정('09년)
3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을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163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원 타당성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08년) ▪ 환원 대상사업 확정 및 법령 개정('09년)

공약과제	실천계획
32. 무과업지역에 대한 지방 교부세 지원 확대(165p)	▪ 개선방안 마련('08년), 법령 개정('09년)
33. 지방재정분석제도 운용 (167p)	▪ 재정관리시스템 보완, 지자체 참여확대('08년) ▪ 지방재정분석센터 설치·운영('09년)
34. 최저가 입찰확대 및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예산절감(169p)	▪ 낙찰제도 법령 개정, 원가심사 지원단 설치('08년) ▪ 원가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09년)
35. 중앙과 지역의 상생·융합·경쟁시스템 구축(174p)	▪ 추진기획단·지역개발청 구성, 특별회계·지역발전교부세 신설('08년), 법률 제정('08년)
36.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182p)	▪ 광역경제권 개발 추진계획 수립 및 법령 정비('08년) ▪ 본격적 사업 추진('08~'12)
37. 'Designed in Korea' 멋진 한국(185p)	▪ 국가디자인 전담기구 설치, 종합계획 수립('08년) ▪ 시범사업('09년)

《장기과제(6건)》 - 임기내 완료

공약과제	실천계획
38.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192p)	▪ 일하는 방식 혁신 등 공직문화 혁신('08~계속)
39. 노사관계의 법치화(196p)	▪ 노사정위 '공무원노사관계특별위원회' 설치('08~'09) ▪ 법령 개정('10~'12)
40. 위임사무 폐지 및 국가·자치사무 이원화 (198p)	▪ 위임사무 현황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08년) ▪ 지방자치법 개정('09년), ▪ 개별법령 개정('09~'12)
41. 지방기금의 효율적 운영(201p)	▪ 실태조사 및 통폐합, 성과분석제도 개선('08~'12)
42.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 (205p)	▪ 경영혁신 로드맵 마련('08년), 법령 개정('09년) ▪ 부실기관 민영화·구조조정('08~'12)
43. 신 농촌-도시지역 상생 발전 전략(207p)	▪ 지역별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08년) ▪ 새마을운동 추진('09년~'12)

규제개혁방안

□ **규제현황** : 총 140건(별첨 : 규제 목록)

유 형	건수(비율)	주요사례
경제적 규제	33건(24%)	•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 온천의 이용허가 등
사회적 규제	7건(5%)	•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 등
행정적 규제	100건(71%)	• 온천발견 신고 • 명령·규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등

* 전부처 규제(5,142건) 대비 2.7% 차지

* 행자부 기능상 기업 및 대민집행 업무가 적어 규제건수는 미약

□ **규제 개선방안**

< 기본 방향 >

- Zero-base에서 개선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 이해관계자의 만족도 조사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정비 추진
- 규제 개선사항은 정기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후관리 철저
- 신설·강화규제는 규제영향 분석 등을 강화하여 엄격한 심사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가제는 신고제로 전환 검토 ▪ 허가기준 및 절차 투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킬 수 있는 수준의 기준으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행정편의적 보고·신고의무 등 폐지 ▪ 행정조사시 중복조사 방지

□ **향후 추진계획**

- 규제 만족도 조사(1~2월), 개별규제별 개선방안 마련(4월)
- 관계 법령 개정(6월), 규제개선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9월)

참고 행정자치부 규제목록

□ 경제적 규제(33건)

연번	규제사무명	유형	처리기관	규제시행일
1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	기타	기타	2003-12-31
2	온천전문기관의 등록 및 등록취소 등	등록의무	중앙행정기관	2006-12-28
3	오지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지정	중앙행정기관	1999-01-21
4	옥외광고업 등록	신고의무	시·군·구	2006-12-28
5	온천의 이용허가 및 취소 등	허가	시·군·구	2006-12-28
6	금고 상근이사 등 대표이사 자격요건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2005-11-04
7	새마을금고의 연합회 사업제한	기준설정	단체·협회위탁등	1999-02-08
8	새마을금고 자금의 차입한도 등 제한	기준설정	단체·협회위탁등	1999-02-08
9	농어촌 도로의 점용허가	허가	시·군·구	1999-03-25
10	잡종재산 대부·매각·양여계약의 해지	기타	시·도/시·군·구	2006-01-01
11	새마을금고의 회원자격 최저 회원수 제한	기준설정	단체·협회위탁등	1999-01-18
12	온천수 용출을 위한 토지(온천)굴착 허가	허가	시·군·구	1999-02-05
13	옥외광고물등의 허가·신고	허가	시·군·구	2006-12-28
14	접경지역사업의 시행승인 등	승인	시·군·구	2000-07-21
15	새마을금고예금자보호준비금 제도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2001-07-24
16	새마을금고설립 인가	인가	중앙/지방자치단체	2002-01-19
17	온천의 공동급수방법 및 자격요건	기준설정	시·군·구	1996-07-03
18	지적기술자 등의 직무범위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1976-01-01
19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승인	승인	시·군·구	1996-07-01
20	연금급여권리에 양도, 압류, 담보제공 제한	기타	단체·협회위탁등	1962-09-30
21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등록의무	중앙행정기관	2003-12-31
22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보호의무	기타	시·군·구	1976-03-01
23	한국광고사업협회 설립 등	승인	중앙행정기관	1999-01-18
2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이익금의 처리제한	기준설정	기타	2006-12-28
25	지적측량업무의 의뢰	검사	기타	2003-12-31
26	새마을금고 회원의 출자자금 한도액 제한	기준설정	단체·협회위탁등	2006-12-28
27	농어촌주택조합 설립인가 등	인가	시·군·구	1996-07-01
28	도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지정	중앙행정기관	2006-12-28
29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준설정	중앙/지방자치단체	2006-12-28
30	유료화장실 신고	신고의무	시·군·구	2006-12-28
31	농어촌 도로의 정비허가	허가	시·군·구	1999-03-25
32	농어촌도로의 점용허가에 대한 준공검사	검사	시·군·구	1992-04-25
33	지적편집도 간행·판매업 등록신청	등록의무	중앙행정기관	1999-04-19

□ 사회적 규제(7건)

연번	규제사무명	유형	처리기관	규제시행일
1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기준설정	시·군·구	2004-07-30
2	기부금품 회계감사보고서 등 제출의무	등록의무	중앙행정기관	1999-02-05
3	공중화장실등의 관리기준	기준설정	시·군·구	2004-07-30
4	온천수 채수를 위한 동력장치설치허가	허가	시·군·구	1999-02-05
5	온천지구내에서의 지하수개발 허가	기준설정	시·군·구	1999-02-05
6	옥외광고물등의 안전도검사	검사	시·군·구	2001-11-22
7	온천수질기준	기준설정	시·도/시·군·구	2000-06-16

□ 행정적 규제(100건)

연번	규제사무명	유형	처리기관	규제시행일
1	지적전산정보자료의 이용승인	승인	중앙행정기관	1999-04-19
2	농어촌 도로정비공사 준공검사	검사	시·군·구	2006-12-28
3	도로정비공사의 토지수용시 재결신청 제한	기타	시·군·구	2006-12-28
4	농어촌 도로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금지	시·군·구	2006-12-28
5	농어촌 도로상차량의 운행제한	허가	시·군·구	2006-12-28
6	빈집정비 명령	명령	시·군·구	2006-12-28
7	토지소유자 지적신규등록신청 등	기타	시·군·구	1999-04-19
8	공중화장실등의 적용범위	기준설정	시·군·구	2006-12-28
9	기부금품 모집지의 공개의무 및 회계감사 등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1999-02-05
10	옥외광고관련 명령에 대한 과태료 등 처분	행정질서벌	시·군·구	2001-11-22
1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기타	시·군·구	2006-12-28
12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	행정질서벌	시·군·구	2006-12-28
13	새마을금고 등 유사명칭 사용금지	금지	단체·협회위탁등	2006-12-28
14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임원의 선임 등	승인	기타	2006-12-28
15	정보공개청구 및 공개여부결정	기타	중앙/지방자치단체등	2004-01-29
16	농어촌주택 개선사업기간에 착수	기타	시·군·구	2006-12-28
17	정부투자기관 등 보수를 받는 자 공무원연금 감액	기준설정	단체·협회위탁등	1998-09-12
18	온천협회 인가	인가	중앙행정기관	2006-07-01
19	개인정보의 열람 제한	기준설정	중앙/지방자치단체 등	1999-01-29
20	기부금품 모집규제·법령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행정질서벌	중앙행정기관	1999-02-05
21	접경지역지원 관련 자료제출 및 출입검사	검사	시·군·구	2000-07-21
22	공중화장실 설치명령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질서벌	시·군·구	2004-07-30
23	상근임원을 두는 지역금고의 기준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2005-11-04
24	재산등록대상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기타	중앙행정기관	2005-05-18
25	인감관련 서류 열람의 금지	금지	시·군·구	2002-12-31
26	보유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기준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2005-11-19

연번	규제사무명	유형	처리기관	규제시행일
27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유사명칭 사용금지	금지	중앙행정기관	2004-09-06
28	일제강제동원피해 진상조사 관련 조서 거부 등 금지	금지	중앙행정기관	2004-09-06
29	지적측량수행자의 보고 및 감독	보고의무	중앙행정기관	2003-12-31
30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금지지역·장소	지정	시·군·구	2006-12-28
31	정기변동신고시 사전금융조회 근거 신설	신고의무	중앙행정기관	2007-06-29
32	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허가	중앙행정기관	2001-07-24
33	형벌등에 의한 공무원 퇴직급여 제한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2006-12-28
34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2001-11-22
35	국기등에 의한 공공목적 광고물 표시설치 기준	기준설정	시·군·구	2005-06-24
36	금고에 대한 외부감사제도	명령	중앙행정기관	2002-01-19
37	지주이용간판의 표시방법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2001-11-22
38	불법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행정질서벌	시·군·구	2002-07-01
39	금고에 대한 경영지도제도	지도	중앙행정기관	2002-01-19
40	전기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2001-11-22
41	교통시설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2001-11-22
42	주민등록초본 열람·교부신청시 법안인감증명서 제시	제출의무	시·군·구	2005-07-01
43	공제분쟁조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기준설정	단체·협회위탁등	2002-01-19
44	행정사업의 신고의무	신고의무	단체·협회위탁등	1999-05-24
45	새마을금고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지도·감독	지도	중앙행정기관	2001-07-24
46	상명 및 주민등록번호 진위확인시스템 이용 신청	승인	중앙행정기관	2005-07-01
47	법정 적립금확대 및 잉여배당률범위 설정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2001-07-24
48	연합회가 대리인을 선임할 때 등기의무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2001-07-24
49	새마을금고 임원의 선거운동 제한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2001-07-24
50	새마을금고이사장의 금고운영결과 이사회 보고	보고의무	중앙행정기관	2001-07-24
51	금고의 설립인가 취소	기타	중앙행정기관	2001-07-24
52	금고 및 연합회의 공직선거 관여이용 금지	금지	중앙행정기관	2001-07-24
53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연임회수 제한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2001-07-24
54	온천발견 신고	신고의무	시·군·구	2001-07-27
55	온천이용표시(온천마크) 사용금지	금지	시·군·구	2001-07-27
56	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설정	승인	시·군·구	2001-07-27
57	온천공보호구역의 지정기준 설정	승인	시·군·구	2001-07-27
58	지방소도읍육성관련 지역주민의 우선고용	고용의무	시·군·구	2001-07-09
59	지방소도읍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승인	중앙행정기관	2001-07-09
60	한국화장실협회의 지도·감독	지도	중앙행정기관	2006-11-09
61	접경지역주민의 고용 및 지원	고용의무	시·군·구	2000-07-21
62	금고 및 연합회의 경영 공시제도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2002-01-19
63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기타	시·군·구	1999-07-23

연번	규제사무명	유형	처리기관	규제시행일
64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이용승인	승인	중앙/지방자치단체	1999-07-23
65	공유재산에 불법시설물의 철거	금지	시·도/시·군·구	2006-01-01
66	행정·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철회 등	허가	시·도/시·군·구	2006-01-01
67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허가	시·도/시·군·구	2006-01-01
68	온천중사자 등에 대한 교육	기준설정	단체·협회위탁등	2006-07-01
69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 않는자 과태료 부과	행정질서벌	중앙행정기관	2007-04-05
70	새마을금고 임원의 자격 제한	기준설정	단체·협회위탁등	1999-01-18
71	도로명자료의 제공	승인	중앙행정기관	2007-04-05
72	가로형간판의 표시방법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1999-02-26
73	광고물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기준	기준설정	시·군·구	1999-02-26
74	온천이용허가자의 온천수질 등 결과 게시	기타	시·군·구	1999-02-05
75	애드벌룬의 표시방법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1999-02-26
76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제출의무	중앙행정기관	2007-06-29
77	인감의 신고 등	신고의무	시·군·구	2006-12-28
78	주민등록신고	신고의무	시·군·구	2006-12-28
79	지방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기준설정	중앙/지방자치단체	1966-06-01
80	온천 미발견시 원상회복의무 등	기타	시·군·구	1996-07-03
81	행정사 업무수행중 지득한 사실의 누설 금지	금지	기타	1995-01-05
82	국외이주 신고	신고의무	시·군·구	1962-05-10
83	자전거 무단방치금지 및 처분 매각	금지	시·군·구	1995-07-05
84	도시개발사업등의 신고	신고의무	시·군·구	2004-02-28
85	선전탑, 아취광고물의 표시방법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1991-01-08
86	온천이용시설에출입 검사	검사	시·군·구	1996-07-03
87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2001-11-22
88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	기준설정	중앙행정기관	1995-01-05
89	지역개발기금 지방채 소화	기타	시·도/시·군·구	1992-12-08
90	재산등록범위 확대	등록의무	중앙행정기관	2007-06-29
91	온천자원 보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	시·군·구	1996-07-03
92	지적측량기준점의 이전신청	기타	시·군·구	1976-03-01
93	행정사의 결격사유	기준설정	단체·협회위탁등	1995-02-05
94	제한경쟁입찰의 한도액 설정	기준설정	시·군·구	1995-10-19
95	형벌자 등의 지방공무원 임용제한	기준설정	중앙/지방자치단체	1963-12-01
96	연구지도직 공무원 채용시 학력(과) 제한	기준설정	중앙/지방자치단체	1984-12-31
97	제한경쟁입찰의 지역사업자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1995-10-19
98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1991-01-08
99	자전거도로의 이용 제한	기준설정	시·군·구	1995-07-05
100	공기업 검사의 거부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행정질서벌	중앙행정기관	1980-01-04

예산 10% 절감 및 활용방안

1. '08년 세출예산 현황

□ 총괄

합계 31조 9,353억원 100%	=	일반회계 31조 5,097억원 98.7%	+	군특회계 4,256억원 1.3%
----------------------------------	---	-------------------------------------	---	--------------------------------

※ '08년 정부세출예산 256조 1,721억원 중 12.5% 점유
 ☞ 정부부처 순위 : 교육부(35조 8,974억원/1위), 행자부(2위)

□ 세부내역

'07 세출예산 : 27조 3,308억	'08 세출예산 : 31조 9,353억
○ 사업예산 1조 2,073억	○ 사업예산 1조 3,031억원(958억원 증, 7.9%)
○ 지방교부금 24조 5,134억	○ 지방교부금 28조 9,567억원(4조 4,433억원 증, 18.1%)
○ 기타운영경비 1조 6,101억	○ 기타운영경비 1조 6,755억원(654억원 증, 4.1%)
- 국가부담금 1조 4,548억	- 국가부담금 1조 5,054억원(506억원 증, 3.5%)
- 인건비 1,268억	- 인건비 1,414억원(146억원 증, 11.5%)
- 기본경비 285억	- 기본경비 287억원(2억원 증, 0.7%)

□ 행자부 예산의 주요 특징

○ 지방교부금 등 법정경비가 전체예산의 95.4%로 대부분을 차지

지방교부금 28조 9,567억원 (90.7%)	+	국가부담금 1조 5,054억원 (4.7%)	=	법정경비 30조 4,621억원 (95.4%)
--	---	--------------------------------------	---	---------------------------------------

※ 지방교부세법 및 공무원연금법에 근거한 법적 지출경비

○ 지자체에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비가 전체예산의 1.6%를 차지

군특 지자체 보조 4,196억원 (1.3%)	+	일반회계 지자체 보조 988억원 (0.3%)	=	보조금 합계 5,184억원 (1.6%)
---------------------------------------	---	---------------------------------------	---	------------------------------------

○ 강제동원 보상금, 청사 유지관리, 총사업비, 리스·임차료 등 경직성 경비가 3,464억원으로 전체예산의 1.1% 차지

※ 강제동원보상금 등(2,534억), 광주전남청사(495억), 청사관리(282억), 리스임차료(153억)

2. 세출예산 절감계획

□ 절감대상 및 목표

○ 실제 절감가능 대상 : 사업예산, 인건비 및 기본경비

- 절감대상 총계 : 6,084억원

· 사업예산 4,383억, 인건비 1,414억, 기본경비 287억

※ 절감제외 대상(31조 3,269억)

· 지방교부금(28조 9,567억), 국가부담금(1조 5,054억), 지자체 국고보조금(5,184억), 강제동원보상금 등(2,534억), 청사관리비(777억), 리스·임차료(153억)

○ 절감목표 : 5~10% 수준의 예산절감 검토

□ 절감재원 확보방안

○ 사업수행 방식 전환 등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예산의 절감

- 직접 수행 가능한 부문의 적극적 발굴로 용역수행의 최소화
- 계약심사제, 원가심사제, 최저낙찰제 등 업무프로세스 개선
-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중 입찰가격 평가 비중의 확대

○ 인력 재배치 등 효율적 인력운용을 통한 인건비 절감

- 결원을 유지(연 2~3% 정도), 불요불급한 인력 충원 억제 등

○ 기관운영 등 기본경비 절감 추진

- 자발적 절약 마인드 확산으로 소모성 경비 지출 최소화

☞ 2/4분기 절감배정을 통해 절감계획 시행

3. 절감재원 활용계획

◆ 새정부 공약과제 중 경제살리기 등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부터 중점 투자

□ 절감재원 활용방침

-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08년 예산의 탄력적 운용(세출예산 이·전용, 이체 등)
- 기획예산처의 국가전체 예산절감 및 활용방안과 연계 추진

□ 활용대상 사업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
 -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
 -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지원
 - 낙후지역 재정지원 강화
 - 지역생활여건 개선
- 세계 최강의 디지털 korea 건설
 - 미래형 도시모델 U-city 등 U-life 구현
 - 개인 정보 유출·오남용 방지 강화
- 차별없는 살기좋은 지역사회 공동체 건설
 - '희망복지 129센터'를 통합, 원스톱 서비스센터로 운영
 - 다문화 가족 및 새터민 가족 지원

산하기관 경영합리화 방안

1. 산하기관 현황

□ 대상기관 : 3개 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유관기관(5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치정보화조합

□ 일반현황

구분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대한지적공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립근거	공무원연금법	지적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설립시기	1982년 2월	1938년 1월	2001년 11월
기구 및 정원	○ 3실 1센터 1단 30팀, 8지부 2사업체 ○ 567명	○ 1본사(16개팀), 12개 본부, 연수원, 연구원 ○ 3,988명	○ 1실 2단 4팀 ○ 50명
주요사업	○ 연금 제비용의 징수 및 급여 지급 ○ 유가증권 투자 등 기금 증식 ○ 천안리조트, 상록호텔 등 복지사업 ○ 대여학자금 대부 등 국가위탁업무	○ 지적법 제32조제2항에 의한 지적측량 ○ 지적제도·측량에 관한 외국기술 도입, 국외사업, 국제교류	○ 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 ○ 민주화운동 사료수집 및 관리, 민주화 유적의 보존·관리 ○ 민주화운동의 기념 계승을 위한 사업 및 행사
예산현황 ('07)	○ 기금현황 : 4조 7,351억원 ('07. 11) ○ 예산현황 : 11조 8,489억원 - 연금급여 등 사업비 : 9조 4,478억원 - 여유자금투자 등 : 2조 4,011억원	○ 예산현황 : 3,853억원 ※세입의 99.6%를 수수료 수입에 의존	○ 8,556백만원 - 국비 8,502백만원 - 자체수입 54백만원

2. 그간의 추진성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경영 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 창단이후 '06년까지 기금증식 8조 3,745억원 연평균 11.7% 수익률 달성
 - ※ 기금운용평가에서 2년('05 ~ '06년) 연속 자산운용부문 1위 달성
- 연금매장 등 아웃소싱을 통해 인력 및 경상경비 대폭 절감('98~'01)
 - ※ (인력) 772명 감축/1,278명 → 506명, (경상경비) 420억원 절감
- 활용도가 낮은 자산을 처분, 금융자산 등 고수익 자산으로 전환
 - ※ '98년 이후 부동산 105만㎡, 2,071억원 상당 매각(차익 1,641억원)

□ 대한지적공사

- 적자운영 지사에 대한 지속적인 통·폐합으로 조직 효율화
 - ※ 31개 지사 축소 : 240개('98) → 209개('07)
-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신규사업 발굴 추진
 - 지적측량기술의 해외수출(모로코 등 6개국, 26억 수주)
 - 침수흔적 관리시스템 구축 등 6종의 신규사업 추진
- 기존 측량업무를 디지털화하여 측량성과 품질개선 추진
 - ※ 토탈측량시스템 운영 확대 :19%('05) → 61%('06)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구축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고객만족 경영 실현(고객만족도 '05. 75.2점→'06. 81.5점)
- 윤리경영 선포 및 상임임원 직무청렴 계약제 시행으로 투명경영 추구

3. 경영합리화 추진방안

□ 조직 및 사업체계 구조조정

- 팀단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통·폐합, 핵심기능 위주로 인력 재배치 추진
- 예산 10% 절감, 성과 창출과 연계된 핵심사업·기능에 투입
- 민간위탁체제를 도입·확대하여 경직성 경비 절감
- 신사업 발굴을 통한 사업 다각화 추진
- 임금피크제 도입 검토

□ 경영혁신 역량 강화

- 사업목표와 성과를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신경영 기반체제 구축
- 부서장 성과계약제 및 연봉제 실시 확대, 상여금 차등 확대
-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 체계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경력개발프로그램 도입
- 고객중심의 업무 프로세스 구축 및 처리절차의 획기적 개선

4. 조치계획

- 경영합리화 추진 지침 시달('08.2)
- 기관별 『경영합리화 방안』 수립·추진(상반기 中)
- 정례 협의회 개최를 통하여 실천상황 점검·평가(분기별 실시)

※ 간부명단

직 위	직 급	성 명
〈 본 부 〉		
제 1 차 관	정 무 직	최 양 식
제 2 차 관	정 무 직	한 범 덕
정책홍보관리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남 석
정부혁신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정 남 준
전자정부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서 필 언
지방행정본부장	별정직고위공무원	강 병 규
지방재정세제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황 준 기
지역균형발전지원본부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재 영
혁신기획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오 형 국
조직진단센터장	계약직고위공무원	이 환 범
감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신 정 완
의정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황 인 평
안전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
홍보관리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노 병 찬
윤리복지정책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구 본 충
공무원노사협력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개 호

직 위	직 급	성 명
비 상 계 획 관	별정직고위공무원	신 영 배
재 정 기 획 관	일반직고위공무원	한 경 호
혁 신 정 책 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광 호
조 직 혁 신 단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 상 인
혁 신 컨 설 팀 단 장	계약직고위공무원	김 경 수
전자정부기술정책관	부 이 사 관	추 경 균
지 방 행 정 혁 신 관	일반직고위공무원	구 기 찬
지 방 행 정 정 책 관	부 이 사 관	정 헌 율
주 민 생 활 기 획 관	일반직고위공무원	백 운 현
지 적 정 책 관	부 이 사 관	양 근 우
지 방 세 제 관	일반직고위공무원	이 삼 걸
균 형 발 전 기 획 관	부 이 사 관	주 낙 영
< 소속기관 >		
정 부 청 사 관 리 소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재 혁
국 가 기 록 원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조 윤 명
지 방 혁 신 인 력 개 발 원 장	일반직고위공무원	박 연 수
국 립 과 학 수 사 연 구 소 장	계약직고위공무원	이 원 태
이 북 5 도 위 원 회 위 원 장	차 관 급	신 효 현
경 찰 위 원 회 위 원 장	장 관 급	채 영 수

● < 별 첨 >

● **공약과제별 실천계획**

목 차

단기과제 85

중기과제 133

장기과제 189

단기과제(19건)

〈단기과제 목록〉

1. 정부기능 통합·재편 및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2. 국정홍보체계 근본적인 혁신
3. 사회다양성위원회 설치
4.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5. 안전관련 조직체계 정비
6.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7. 뇌물·청탁사건 연루 공직자 중징계
8.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 강화
9. 지방 4대 협의체 법정기구화
10.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
11. 자동차산업 관련 지방세제 지원
12. 지방교부세율 2%이상 증액
13. 특별교부세를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
14. 지자체 향토산업 육성 지원
15. 읍면동사무소 등을 창업공간으로 활용
16.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17.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자립경제 활성화 지원
18.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관광레저·대학클러스터로 조성
19. 부평미군기지 이전 및 명품형 도시공원 조성

1. 정부기능 통합 · 재편 및 인력의 효율적 재배치

중앙행정조직을 대부처주의로 개편, 사회복지 · 교육 · 보건 · 치안분야 등에 인력 재배치 및 정부위원회 정비를 통해 능력 있는 행정조직 구현

□ 현 황

○ 중앙행정조직 및 공무원 현황

- 중앙행정조직 55개(중앙행정기관 39개, 중앙행정기관에 준하는 기관 16개)
- * 정부위원회 현황 : 총 416개(행정위 44개, 자문위 372개)
- 총 공무원 973,859명('07.12현재)

총계	행정부									헌법 기관
	계	국가직							지방직	
		소계	교원	경찰	우정	교정·소방	사회복지	일반행정		
973,859 (100%)	951,920 (97.8%)	604,673 (62.1%)	346,135 (35.5%)	102,897 (10.6%)	33,359 (3.4%)	24,919 (2.6%)	21,860 (2.2%)	75,503 (7.8%)	347,247 (35.7%)	21,939 (2.2%)

○ 사회복지, 교육, 치안 등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분야 중점 보강

- * 참여정부에서 증원된 국가공무원 58,206명중 대부분(84%)은 교원(29,262), 경찰·교정(8,488), 고용지원(4,403), 보건(3,745), 집배원(2,694) 분야에 집중

□ 추진방향

○ 행정환경 변화, 새정부의 정책운영 방향 따라 정부조직 · 기능 재설계 추진

- '대부처대국주의'에 입각한 부처 조직 · 기능 통폐합 방안 마련

○ 국민생활 밀접분야 보강 등 정부인력의 효율적 운영 추진

- OECD 국가 등의 인력운영 실태분석, 국제 비교기준 마련
- 정부개혁 · 전자정부 추진으로 인력절감이 가능한분야 발굴재배치

- 목적이 달성된 위원회 폐지 등 정부위원회 관리 개선방안 마련
 - 엄격한 설치요건, 목적 달성 위원회를 자동폐지토록 하는 일몰제(Sun-set) 도입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 마련

※ 정부조직·인력운영 체계 보완·발전, 정부위원회 관리방안 제도화

□ 세부 추진계획

- 새정부 정부조직 개편계획과 연계, 조직 및 기능의 재설계 추진
-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 재배치('08년) 및 중·장기적으로 정부 기능에 대한 상시진단으로 인력운영의 효율화 추진('08~'09년)
- 각종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축('08년)
 -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및 정비 지속 추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정부조직 개편	↔									
정부인력 운영의 효율화	←		→							
정부위원회 관리 개선방안 제도화	↔									

□ 기대효과

- 정부조직 재설계 및 기능조정으로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
- 불필요한 기능 축소 및 인력 재배치로 정부부문의 낭비요인 제거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정부조직법」 개정 및 「정부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참고 공무원 정원 및 정부위원회 기본현황

□ 공무원 정원 : 행정부 공무원이 98%차지

공무원 총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헌재선관위
	소 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973,859	951,920	604,673	347,247	3,486	15,636	2,817

□ 정부별 정원 변동(행정부) : 참여정부 이후 66천여명 증가

구 분	'60년	제3공 ('61-'72)	제4공 ('73-'80)	제5공 ('81-'87)	제6공 ('88-'92)	문민정부 ('93-'97)	국민정부 ('98-'02.24)	참여정부 ('03.2-'07.11)
국 가	123,037	362,396	438,454	477,146	565,115	561,952	576,223	604,673
지 방	111,180	71,019	150,566	222,049	310,957	357,452	308,941	347,247
행정부 계	234,217	433,415	589,020	699,195	876,072	919,404	885,164	951,920
증 감 (연평균 증감율)	-	199,198 (+7.8%)	155,605 (+4.5%)	110,175 (+2.7%)	176,877 (+5.1%)	43,332 (+1.0%)	△34,240 (△0.7%)	66,756 (+1.7%)

□ 외국과의 인력규모 비교 : 선진국의 1/2~1/3 수준

국 가	인구(천명)	공무원수(명)	공무원 1인당인구수	전체인구대비 공무원비율(%)
한 국	48,297	1,342,368('06년)	36.0	2.8
일 본	126,926	4,416,332('03년)	28.7	3.5
스 페 인	39,927	2,009,206('00년)	19.9	5.0
이탈리아	57,762	3,108,803('99년)	18.6	5.4
독 일	82,188	4,537,300('00년)	18.1	5.5
뉴질랜드	3,873	228,780('00년)	16.9	5.9
미 국	282,425	19,869,558('00년)	14.2	7.0
프 랑 스	60,594	4,704,087('99년)	12.9	7.8
영 국	59,778	4,695,000('05년)	12.7	7.9

※ 인력 규모 : 「일반정부 (General Government)」 기준
 - 공무원(국가·지방) + 비영리공공기관 + 사회보장기금 + 직업군인·군무원 + 비정규직

□ 위원회 정비계획 및 실적 : '07년 계획 90개

구 분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계	'95년	'97년	계	'99년	'01년	계	'03년	'05년	'07년
위원회수 (행정위)		348 (16)	380 (23)		319 (29)	366 (33)		368 (37)	381 (42)	416 (44)
정비대상	97	54	43	218	145	73	251	95	66	90
통폐합	77	43	34	166	117	49	121	64	40	17
운영개선	20	11	9	52	28	24	130	31	26	73

2. 국정홍보체계 근본적인 혁신

정권 내지 대통령 홍보에만 초점을 두는 국정홍보처와 한국정책방송은 폐지하고 국정홍보체계의 근본적인 혁신 추구

□ 현 황

○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 추진 등으로 국정홍보처와 언론간의 긴장관계 지속

- 각부처 브리핑실·기자실을 통합브리핑실로 재편 추진('07.5)
- 언론 및 정당 등에서 관련조치 비판 및 홍보처 폐지결의('07.6)

※ 한국정책방송(KTV)은 정부정책에 대한 홍보매체로서 기능 강화

○ 해외홍보기능의 분산 수행으로 효율적인 해외홍보 미흡

- 외통부, 문광부, 홍보처간 해외홍보업무 중복 수행으로 부처간 기능연계 부족 및 전략적인 해외홍보 추진에 애로
- 관광공사, KOTRA, 국제교류재단 등 정부산하기관 해외홍보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 미흡

※ 국정홍보처 폐지 정조법 개정안 행자위 소위 계류(정종복 의원 '07.6)

- 홍보처 폐지 및 홍보조정기능의 국조실 이관, 각 부처 홍보 자율추진

□ 추진방향

○ 국정홍보 조직개편 및 기능 조정

- 국정홍보 주관부서는 홍보에 관한 일반기준을 제시하고, 개별 부처의 자율적 홍보기능 강화로 정부정책에 대한 책임성 제고

※ 한국정책방송은 국정홍보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개편 추진

○ 기관별 분산 수행하는 해외홍보기능의 재편

- 해외홍보 기능간의 연계성 강화로 국가이미지 제고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행정환경 변화 및 새정부의 정책 운영방향과 연계하여 국정홍보기능 수행체계 재설계 추진('08년)
- 정부조직법 및 관련부처 직제(대통령령) 개정('08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국정홍보기능 개선방안 수립	↔									
정부조직법 개정	↔									

□ 기대효과

- 국가이미지 제고의 효율적 추진 및 각 부처의 정책과 홍보의 연계성 및 책임성 강화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정부조직법』 개정 등

3. '사회다양성위원회' 설치

다문화시대에 소수자 지원정책 개발 및 사회참여 보장을 위한 '사회다양성위원회' 설치 운영

□ 현 황

- 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 및 새터민 등의 급속한 증가
 - 국내 체류 외국인 95만명(주민등록인구 4,913만명의 2%, '07.8월)
 - 국제결혼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107,641명('07.9월)
 - 새터민의 지속적 증가 : 1,043명('01년) → 11,499명('07.9월)
 - 종합적·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이주민 등 지원정책 미흡
 - 법무부가 이주민 정책 종합 수행기관으로서 법적지위 문제에 국한된 기능 수행, 실질적 지원기능은 각 부처에서 분산 수행
- ※ 부처별 수행업무 현황
- 법무부 : 이주민 관리·법적 지위 등의 측면에서 총괄조정
 - 행자부 :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시책, 다문화지역사회 커뮤니티 구축
 - 여가부, 복지부, 노동부 등 : 소관부처 기능과 연계한 시책 추진

□ 추진방향

- 외국인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조정체계 구축
 - 단속·규제 등 소극적 지원 탈피, 지역사회 주민으로서의 정착 및 융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정책 중심 전환
 -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방안 검토
- 각 기관별 유사 기능의 조정 추진
 - 문화적응 정책(문광부·교육부 등), 주류사회 편입기회 확대 정책(교육부·노동부 등), 차별 제거 정책(법무부·인권위 등) 등 연계

□ 세부 추진계획

- 다문화시대의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업무조정체계 구축을 위한 의견수렴·추진방안 마련('08년)
 - 소수자 정책 총괄조정기구(위원회 등) 설치 등
 - * 해당부처와 협조, 관련 법률 제·개정시 근거규정 마련('08년)
 - ※ 장항숙의원 대표발의('07.5.2)로 「다문화가족지원법안」 국회 법사위 계류중
- 정부조직 개편과 연계, 기관별 유사중복기능 조정 추진('08년)
 - 종합적인 외국인관리 및 이민정책 주관부처 선정
 - 기타 각 부처 관련업무는 상호 협력적 역할 분담체계 구축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업무조정체계 구축 방안 수립	↔									
관련법 제·개정	↔									
기관별 유사·중복 기능 조정	↔									

□ 기대효과

- 사회적 소수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통해 사회통합 및 국가 발전에 기여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사회적 소수자 지원법』(가칭) 등 관련법 제정 및 개정

4. 국가디자인위원회(NDC:National Design Council) 설치

공공디자인을 국민적 공감대에 기반하여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조직 구축

□ 현 황

- 창조산업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역량으로 등장함에 따라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 증가
 - 우리나라의 디자인 산업 경쟁력은 선진국의 80% 수준
 - 공공디자인 정책은 다수 기관이 개별적으로 추진, 상호연계 미흡
 - 도시기반시설(건교부, 지자체), 국가·행정상징매체(행자부), 관광·문화매체(문광부), 제품디자인(산자부) 등
 - 산업디자인과 공공디자인정책 추진관련 산자부와 문광부간 갈등
- ※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이 동시에 법사위 계류중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과 공공디자인법안 비교 >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안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디자인=제품,포장,시각,환경등 · 공공디자인 → 산업디자인의 일부 · 국가디자인위원회(총리 소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 : 산자부장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디자인=제품디자인 · 공공디자인 → 독자적 영역 · 공공디자인위원회(총리 소속)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사 : 문광부장관

□ 추진방향

- 국가디자인정책 총괄 조정기구(위원회 등) 설치 검토
 - 총괄기구를 신규 설치하거나, 관련기능을 통합 재편하는 방안 등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방안 마련

- 새정부 조직개편과 연계, 기관별 유사중복기능 조정 병행 추진
 - 각 부처 디자인기능의 합리적 조정 등을 위한 법률 개정 등

※ 국가디자인 총괄기구 역할(안)

- 디자인의 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조정
- 디자인에 관한 법률·제도의 개선
- 공공기관의 디자인 관련 업무 협의·조정 및 주요사업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공공디자인 정책의 업무조정체계 구축방안 수립('08년)
 - 정책대상별 업무의 상호 협력적 역할 분담체계 구축
- 해당부처와 협조, 관련 법률 제·개정시 근거규정 마련('08년)
- 부처별 유사중복기능 조정 병행 추진('08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업무조정체계 구축 방안 수립	↔									
관련법 제·개정	↔									
기관별 유사·중복 기능 조정	↔									

□ 기대효과

- 공공디자인 발전 기반 조성으로 국가경쟁력 제고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국가디자인진흥지원법』 제정 또는 『산업디자인진흥법』 개정 등

5. 안전관련 조직체제 정비

현재 NSC, 비상기획위원회, 행자부 등에서 분산 수행중인 국가 위기관리체계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인 위기관리조직으로 체계화

□ 현 황

- 재난 및 위기관리체제는 국가위기관리, 자연 및 인적 재난 관리, 생활안전관리 등으로 구분, 각 부처별로 분산 관리

<위기관리기능 수행조직 현황>

구 분	관련 부처	비 고
국가위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SC(대통령소속) : 국가안보 정책 총괄·조정 ▪ 비상기획위 : 비상대비 계획수립, 자원 관리 ▪ 행자부 : 민방위자원관리, 인력동원 총괄 ▪ 경찰청 : 사회질서 유지, 안전관리 	
자연·인적재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자부 : 국가기반 재난 관리 ▪ 소방방재청 : 자연 및 인적 재난 관리 * 기타 기상청, 산림청 등에서 일부기능 분담 	
생활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청 : 교통안전 ▪ 복지부 : 어린이 안전 ▪ 행자부 : 스쿨존 	

- 위기관리가 재난·안보 등으로 나뉘어지고, 관련 기능이 여러 부처에 분산·중복되어 효과적 위기관리 대응에 한계

□ 추진방향

- 위기관리 수행조직 재정비로 국가위기관리체계 효율화
 - 전통적 안보와 함께, 테러 등 새로운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정체계 구축 필요

○ 각 기관별 분산 중복 수행중인 기능의 조정 추진

- 국가비상대비 기능 수행체계 재검토 및 자연·인적재난 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 조정
 - 위기·재난 관련 법률에 대한 체계적 정비 병행 추진
- ※ 신속·효율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 및 기능 통합방안 마련

□ 세부 추진계획

- 새정부 조직 및 기능 개편과 연계, 국가위기관리 기능의 효율적 개편방안 수립('08년)
 - 기관별 유사중복기능 통합 등을 통한 위기관리시스템 재설계
- ※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국가위기관리 체제 정비	↔									

□ 기대효과

- 신속하고 효율적인 위기대응체제 구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정부조직법』 등 개정

6. 공무원연금제도의 합리적 개선

-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여 연금간 이동으로 인한 연금 사각지대 발생 방지

□ 현 황

-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증과 저부담·고급여의 수급구조 등으로 매년 연금재정수지 부족액(정부보전금) 증가
 - 연금수급자(천명) : ('90)25 → ('95)56 → ('00)150 → ('07.6)240
 - 정부보전금(억원) : 599('01) → ('04)1,742 → ('05)6,096 → ('07)9,725
-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간의 연계장치가 없어 민·관간직업 이동에 따른 제도단절로 연금 사각(死角)지대 발생

□ 그간의 추진경과

- KDI 공무원연금 제도 개선안 연구 용역('06. 5 ~ 10)
-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 운영('06.7 ~) 및 건의안 마련('07. 1 ~)
- “발전위 건의안”에 대한 114개 주요 기관·단체 의견조사('07.2~3)
- 국민연금법이 “그대로 내고·덜 받는 구조”로 개정('07. 7)
 - 제2기 발전위원회 운영('07. 7) 및 각계의견을 반영한 수정건의안 마련중

□ 추진방향

-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재정안정 추구
- 공무원의 적정노후소득수준 보장
- 공적연금간 연계장치 마련으로 민·관 직업 이동에 따른 연금 사각지대 해소

※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연계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협의중

□ 세부 추진계획

- 연금개혁문제는 군인, 교원 등 특수직역연금과 국민연금제도 개선과 연계하여 추진
 - ※ 개선안 및 추진일정은 인수위와 협의
- 공적연금 연계는 보건복지부 '공적연금 연계협의회'에 참여하여 지속 논의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연금개혁 논의	↔									
정무안 마련 및 연금개혁 추진		↔								
관계부처간 공적연금 연계방안 모색	←—————→									

※ 공적연금 연계방안은 복지부 주관하의 추진일정임

□ 기대효과

- '70년까지 현행제도 대비 장기적 연금재정이 최소 35% 정도 절감
- 공적연금제도 연계로 민·관 직업이동에 따른 연금사각지대 해소
 - '70년 기준 972천명이 추가 혜택 전망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제도개선 내용에 따라 상이
- 입법조치
 -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등 전부 개정
 - 『공적연금 연계 특별법』 제정(보건복지부 주관)

□ 공무원 수 · 퇴직자수 및 연금수급자 현황

(’07.6월말 기준. 단위 : 명)

구 분	’90	’95	’00	’05	’07.6
공무원수	843,262	957,882	909,155	986,339	1,020,285
퇴직자수 (퇴직률)	27,866 (3.3%)	42,907 (4.5%)	64,345 (7.1%)	34,762 (2.4%)	13,240 (1.3%)
연금선택률	33.3%	50.1%	78.9%	94.6%	92.0%
연금수급자수	25,199	55,980	149,799	216,017	240,379

- ’98~’00년 정부 구조조정 이후 안정적인 퇴직률 유지
- 저금리 및 연금에 대한 인식제고로 연금 선택률은 지속적 상승
- 재직자는 1,020,285명으로, 부양률(연금수급자/재직자)은 약 23.8%

□ 재정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01	’02	’03	’04	’05	’06	’07.6
수입 (기여금+부담금)	29,072	34,296	36,521	39,085	40,935	44,076	22,525
지출	29,671	30,520	37,069	40,827	47,031	50,553	31,540
보전금	599	-	548	1,742	6,096	6,477	4,197
기금총액	20,896	27,276	30,675	33,218	38,295	42,229	45,610

- ’60년에 도입된 공무원연금이 제도 성숙기에 접어든 ’90년대부터 재정문제 가시화
 - 수지 부족액 : △65억(’93) → △6,385억(’95) → △9,458억(’00)
- ’90~’00년 재정추이
 - 662억(’90) → 632억(’91) → 672억(’92) → △65억(’93) → △1,831억(’94) → △6,385억(’95) → 439억(’96) → △764억(’97) → △17,534억(’98) → △27,520억(’99) → △9,458억(’00)
- ’95년과 ’00년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와 불균형 수급구조 등으로 정부 보전금 확대 전망
- ※ 정부 보전금 전망 : 9,725억(’07) → 21,047억(’10) → 105,656억(’20)

□ 기여율 · 지급율 변동내역

- 기여율 : 2.3%('60) → 3.5%('69) → 5.5%('70) → 6.5%('96) → 7.5%('99) → 8.5%('01)
- 지급율 : 30~50%('60) → 40~50%('62) → 50~70%('67) → 50~75%('80) → 50~76%('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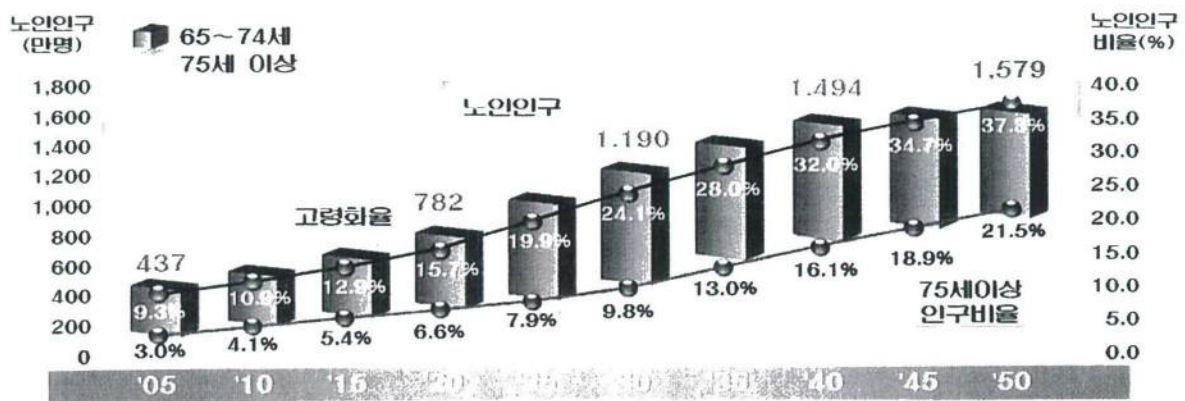
□ 평균수명/기대여명 추이(과거/현재/미래)

- 평균수명 추이
 - 평균수명 : 52세('60) → 66세('81) → 77.46세('05) → 81.53세('10)
- 공무원연금 평균 수급기간

구 분	1970	1980	1990	2000	2010
연금수급개시 평균연령	45	52	56	54	58.11
기대여명(=수급가능기간)	26	23.33	21.93	28.79	23.91*

□ 고령화/고령사회/초고령사회 진입시기

- 용어 정의 :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 7% 이상(고령화 사회) → 14% 이상(고령사회) → 20% 이상(초고령 사회)
- 우리나라 고령화 정도
 - 고령인구 추계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 2018년 고령사회 → 2026년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7. 뇌물·청탁사건 연루 공직자 징계

공무원 뇌물·청탁사건 연루 공직자에 대해 징계 방안 강구

※ 공직자 뇌물 수수시 수수액의 50배 벌금형 병과 : 법무부 차원의 검토 필요

□ 현 황

- 뇌물·청탁사건과 관련하여 행정부 내 각 기관을 일괄적으로 기속할 수 있는 일원화된 처리기준이 없는 상황임
- 공무원 범죄사건에 대한 기관별 처리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징계의 형평성 문제 대두

· 예시 : 형사별로 동일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A기관은 경고처분, B기관은 경징계요구로 처리하는 등 처리기준이 상이함

※ 현재 뇌물사건의 경우 해임시 1/4 급여제한, 징계시효 3년(일반사건 2년), 표창감경 미적용 등 일반비위 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음

□ 추진방향

- 공무원 범죄사건 중 뇌물·청탁사건에 대해서는 관용의 여지없이 징계의결요구 등 엄중 처리토록 처리기준 제정
- 뇌물·청탁사건 관련 처리기준 제정시 각급 행정기관 등 광범위한 외부 의견 등을 적극 수렴

□ 세부 추진계획

- 뇌물·청탁 사건에 대한 기관별 자체 처리기준(징계요구 기준 등) 유무 파악 및 광범위한 의견수렴, 사례연구 등('08.상반기)
- 뇌물·청탁 사건 관련 유형별·사례별·금액별 강화된 처리 기준 제정('08.하반기)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기관별 처리기준 파악, 의견수렴, 사례연구 등	↔									
처리기준(훈령) 제정		↔								

□ 기대효과

- 공무원 뇌물·청탁 수수사건에 대한 처리기준 강화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에 기여
- 행정부 내 공무원범죄사건 처리기준 일원화를 통한 징계 등 처벌의 공정성 및 형평성 제고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가칭)『공무원범죄사건 처리기준(대통령훈령 또는 총리훈령)』 제정 추진

8.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방지 강화

통신사업자 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강화하고, CCTV·RFID 등 새로운 정보매체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 통신사업자 관련 개인정보보호는 정통부 주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현 황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07.5)
 - 개인정보파일 사전협의제 및 개인정보침해신고제 도입
 - CCTV 등 새로운 정보매체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근거 마련
- 매년 공공기관 웹사이트 대상, 개인정보 노출을 지속 점검, 주요 노출 사안에 대한 시정 요구 및 맞춤형 컨설팅 실시
 - 주요 공공기관(중앙, 지자체, 교육청 등 700개)에 대한 반복점검 결과 개인정보 노출이 감소 추세이나 근절되지 않고 있음
 - ※ '07년.7월(47,636건) → 9월(10,154건) → 11월(557건)
 - 주요 노출 원인으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 게재 등 업무담당자의 부주의가 대부분(74%)

□ 추진방향

- 제도·관리·기술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련
- 새로운 정보매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 지속적인 연구 및 제도 개선

□ 세부 추진계획

- 기관별 개인정보보호 수준측정을 위한 진단지표 적용 및 확산('08년~)
- 행자부 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활성화('08년~)
- 개인정보 활용현황 관리·노출점검등을 위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09년~)
- 웹사이트 상의 개인정보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강화('08년~)

9. 지방 4대 협의체 법정기구화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자치문제의 의견 창구로 활용

□ 현 황

- 지방자치법에 지방 4대 협의체 설치근거 마련('99.8)
 -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
- 지방 4대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연합체 설립근거 마련('06.1)
- 지방 4대 협의체의 국정참여의 통로가 제한되어 지방이익 대변자로서의 기능·역할에 한계 노정

□ 추진방향

- '중앙-지방간 정책협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 의견을 국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참여기반 마련
- 지방 4대 협의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실질적 대변자로서의 대표성과 위상 제고
 -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

□ 세부 추진 계획

- 주요 법령 및 정책 과정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보장('08~'09)
 - 지방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정책수립시 지방 4대 협의체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일정기한 내 회신토록 의무화
 -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 등 주요 회의에서 지방 관련 안건 논의시 대표자 출석 및 발언권 부여

- 지방 4대 협의체 위상 및 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08)
 - 지방 관련 부처 및 지방 4대 협의체와의 중앙-지방간 연석회의 정례화 및 지방 4대 협의체 대표의 국무회의 참석 제도화
 - 지방 관련 정부위원회 구성시 지방 4대 협의체에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국정참여 기회 확대
- ※ 현재 지방이양추진위원회·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등 일부에 불과

- 지방 4대 협의체 역량 강화 방안 마련('08)
 - 협의체의 정책개발 및 자치제도 연구기능 보장 등을 위해 사무기구 및 인력 확충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주요 법령 및 정책 과정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보장	←		→							
지방 4대 협의체 위상 및 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	←		→							
지방 4대 협의체 역량 강화 방안 마련	←		→							

□ 기대효과

-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한 지방의견의 충실한 반영을 통해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수용성·실현가능성을 제고
 - ※ 지방 관련 법령 제·개정시 지방의견 반영 15건('07)에 불과
법령·제도 개선 관련 지방 건의 459건중 수용률은 28%(128건)에 불과
- 중앙-지방간 상생협력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지방자치법 개정

참고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 · 운영**

국가명	주요 내용
<p>일본 (지방 6단체 협의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은 집행 3단체(전국지사회, 전국시장회, 전국정촌회)와 의장 3단체(전국도도부현의회의장회, 전국시의회의장회, 전국정촌회의회의장회) 등 지방 6단체 협의체를 구성 · 운영중에 있음 ※ 협의체별 사무국 : 전국 지사회(사무총 · 차장, 5부 1실, 약 40명), 전국 시장회(사무총 · 차장, 기획조정실, 7부, 약 75명), 전국 정촌회(사무총 · 차장, 8부, 약 80명) ○ 일본에서는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또는 시행령 기타 사항에 관해 내각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해 의견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새로운 사무 또는 부담을 지운다고 인정되는 시책에 관한 것일 때에는 내각은 이에 지체없이 회답한다는 내용을 지방자치법에 규정
<p>영국 (지방 정부 연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연합(LGA: Local Government Association)은 1997년 노동당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광역자치단체 연합, 기초자치단체 연합, 대도시 자치단체 연합 등이 합병되어 전국적 수준에서 출범 ○ 중앙정부는 LGA를 지방정부의 대표기구로 공식인정하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며, 지방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책쟁점을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지방정부의 보조금 결정기준 등 재정적인 문제와 지방정부의 권한에 관한 법안 등은 반드시 LGA의 자문을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또한, 중앙부처의 장관들을 초청하여 새로운 정책을 토의하거나 지방 정부사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중앙정부에 대처할 것 인지에 대해 논의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기별로 중앙-지방정부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상호간 고위급실무회의를 통해 지방자치에 관련된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p>프랑스 (지방 자치 단체 협의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는 3계층 이상의 다양한 수준을 대표하는 자치단체협의회들이 구성되어 있어 기초, 도 및 광역자치단체, 도시와 농촌 자치단체, 대도시와 소도시 자치단체 등 각 계층을 광범위하게 대변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의장협의회, 시장협의회, 프랑스 도의원연맹, 대도시 시장협의회 등 ○ 이중, 시장협의회는 1920년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치단체의 대변자로서 인정받았고, 중앙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들과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를 대변하는 대표적인 대화의 상대자

10. 주택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

1가구 1주택 보호를 위해 취·등록세를 통합하고 재산보유세 증가에 맞춰 세율 인하

□ 현 황

- 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거래세 완화 필요
 - 다만, 보유세는 시군세이고 거래세는 시도세이므로, 보유세 증가에 따른 거래세 인하 시 시도 세수는 결손 초래
- 주택 거래세율을 '04년 5.0%에서 '06년 2.0%(현행)까지 인하
 - 추가 1.0%p 인하시 1조 2,500억원의 시도세수 결손 초래
 - ※ 취·등록세는 시도세의 49%를 차지하는 핵심적인 세원
- '06년 거래세 인하는 종부세 증가분으로 보전할 수 있었으나, 추가 인하는 종부세 증가분('08년 3,500억원 예상)으로 보전 곤란
 - 교부세 자연증가분으로 보전을 추진할 경우, 교육·복지투자 등 국정시책 추진으로 재원이 부족한 지방의 반대 예상

□ 추진방향

- 시도 재원보전 방안과 함께 거래세 인하 추진을 검토하되, 안정적이고 구조적인 보전방안 마련 필요
- 제1안 : 세원이양 방안
 -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도입과 함께 거래세율 인하 추진
 - 취·등록세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자립도 감소 효과 보완
- 제2안 : 교부세율 인상 방안
 - 교부세율 1%p(1조2,500억원) 인상으로 세수감소분 보전 가능
 - 자주재원 비중 저하 우려, 불교부단체는 재원보전 불가
 - ※ 재정자립도가 '03년 65.4%에서 '08년 52.8%으로 5년간 12.6% 감소

- 재원보전 방안 마련을 위해 재경부와 협의 추진
 - 취득세와 등록세 통합은 주택 외에도 토지 및 일반건물 등과 형평성을 고려, 세목체계 개편과 함께 추진(신규)

□ 세부 추진계획

- 거래세 완화 및 재원보전 방안 연구·분석 ('08년 상반기)
 - 거래세제 개선 추진단(TF) 구성('08.2)
 - 지방세연구원('08.2 설립예정)과 공동으로 세수·세부담 분석
-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 ('08.6~9)
 - 재경부·예산처 등 정책협의, 시도 의견수렴
- 지방세법 개정 추진 ('08.9~12)
 - 정부입법안을 마련, '08년 정기국회에서 통과 추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거래세 완화방안 연구·분석	↔									
관계부처 협의 및 법 개정 추진		↔								

□ 기대효과

- 주택거래 시 납세자 세부담 감소 (현행 : 주택가액의 2%)
- 부동산거래 활성화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 기대
- 적극적인 주택공급 정책에 부응하는 세제상 조치 마련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개정

11. 자동차산업 관련 지방세제 지원

소형차,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

□ 현 황

-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취·등록세 면제 및 자동차세 저율과세
 - 800cc 미만 승용자동차 : 취·등록세 면제, 자동차세율 cc당 80원
- 하이브리드카는 지방세제 혜택 없음

□ 추진방향

- 에너지 절약, 교통난 해소, 자동차공해 저감,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보급촉진 등을 위하여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필요
 - 취·등록세 감면 및 자동차세 저율과세 또는 감면

□ 세부 추진계획

- 한·미 FTA와 연계하여 경형 승용자동차(1000cc)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하
 - 과세구간을 5단계→3단계로 축소, 세율을 cc당 100원 → 80원으로 인하
 - ※ 경형자동차 기준 확대에 따른 취·등록세 감면 확대('08.1월 시행)
 - 경차기준 확대(800cc→1000cc) 및 경형 상용자동차 취·등록세 50% 감면
-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세제혜택 검토 : '09년 이후 시행목표
 - 취·등록세 감면 및 자동차세 저율과세 또는 감면 등
 - ※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에 '09년부터 세제혜택 부여 규정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취·등록세, 자동차세 감면 및 저울과세 검토	↔									
지방세법 개정		↔								

기대효과

- 경차의 자동차세 부담완화를 통한 이용활성화 유도
- 친환경자동차의 기술개발 및 보급촉진 유도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지방세법 개정

12. 지방교부세율 2% 이상 증액

현행 19.24% 수준의 지방교부세율을 2%이상 증액하여 낙후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 현 황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해소 및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
 - '08년 지방교부세 규모(내국세의 19.24%) : 25조 7,465억원
- 지방교부세의 법정율이 인상되었으나, 실질적인 인상 효과는 미흡
 - '00년 이후 법정률 인상(4.24%p)은 지방양여금 폐지 통폐합분(3.3%p)과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 보전분(분권교부세, 0.94%p)의 합계와 동일
 - ※ 법정률 인상 : 내국세의 13.27%(문민정부)→15%(국민의정부)→19.13%('05년)→19.24%('06년)

□ 추진방향

- 지방교부세 법정률 적정 인상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수요증감, 재정부족액 등 종합 분석
-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법정률 인상협의
- 지방교부세법 개정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지방교부세 법정률 적정 인상안 검토 : '08년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협의 : '08년
-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 : '08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법정률 인상안 검토	↔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협의	↔									
지방교부세법 개정		↔								

□ 기대효과

-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로 지역발전 촉진예상
 - 낙후지역 수요반영 : 현행 9,325억원 ⇒ 변경 1조 1,954억원 (증 2,629억원)
- '08기준 2%인상시 지방교부세가 2조 6,797억원 증가되어 자치단체 재원보전률이 90%이상으로 증가 예상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지방교부세법 개정

13. 특별교부세를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

원칙없는 지역별 차등지원과 권력층의 시혜성 지원금으로 논란이 되는 특별교부세를 포괄지원방식으로 전환하여 지방재정 자율성 제고

□ 현 황

<제도의의>

-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충당

<교부요건 - 지방교부세법 제9조>

- 보통교부세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
- 보통교부세 산정후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 지방행정·재정 우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제도개선('05.1) : 재원축소(9.1% → 4%), 수요축소(5개 → 2개수요)

□ 추진방향

- 지방교부세 포괄지원방식은 현행 보통교부세(96%) 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특별교부세(4%)는 보통교부세의 보완적 성격
- 국가적 행사, 지역현안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발생에 따른 지방비 보전 등 특정 재정수요 발생시 지원
- 따라서, 특별교부세 설치목적과 중앙의 정책실현 위하여 포괄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제도개선을 통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
※ 자치단체별 평균 지원액은 14억원정도(지연현안수요)로 재원의 규모면에서도 포괄지원 제도의 실익이 미약

- 특별교부세 제도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 교부기준 명확화, 교부시기 정례화, 특별교부세 명칭변경 및 성과교부세 신설 등 제도개선 추진
- ※ 특별교부세 제도를 보완·발전시키고, 성과교부세를 신규 도입

□ 추진계획

- 제도개선(안) 마련 및 자치단체 등 의견수렴 : '08년 상반기
- 관계법령 개정안 확정 : '08년 하반기
 - 지방교부세법령 개정 : 명칭변경, 교부시기, 성과수요 신설 등
 - 지방교부세법시행규칙 : 교부기준 및 산정항목 조정
- 관계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상정 : '08년 하반기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제도개선안 마련 및 자치단체 의견수렴	↔									
지방교부세 개정안 확정		↔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 상정		↔								

□ 기대효과

- 특별교부세 제도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

14. 지자체 향토산업 육성 지원

지방 중소기업의 지역특화업종 전환을 지원하고, 지자체의 향토산업 육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

□ 현 황

- 국가 및 지역경쟁력 차원에서 향토지식자원 가치의 중요성 인식 부족
 - 지역에서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과학기술 등 향토지식자원 사장위기
- 향토자원 정책이 농·특산물 및 문화재보존 중심으로 산업화 미흡
 - 개별 부처별·단편적 사업추진으로 정책 연계성 부족
- 자금·기술 등에서 열세에 있는 지역향토기업 경영 악화 가중
- 국제적으로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등에서 전통지식과 민간 전승물에 관한 권리보호방안 등을 활발히 논의하는 추세

- 『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노현송 의원등 발의('06.9)
 - 농림부등 업무중복 및 균형위 행자부 총괄 등 이유로 법제정 추진반대

□ 추진방향

- 21c 지식정보화시대에 대응한 자립적 지역경제 실천
 - 향토지식자원의 발굴 및 복합산업화를 통한 내생적 성장동력 창출
 - ※ 향토자원의 개념을 향토지식자원으로 보완하여 법률제정 재추진
- 전국 향토지식자원 D/B구축, 지역 공동브랜드 개발·체계적 지원
- 법률제정을 통한 부처별 정책적 통합 및 체계적 개발·육성
 - 종합개발계획수립, 통합추진체계 구축, 예산 및 자금지원 등
 - ※ 행자부의 지역진흥재단을 활용, 홍보·컨설팅·마케팅 지원

□ 세부 추진계획

- 전국 향토지식자원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 '08 상반기
 - 시·도 및 전문연구기관 합동으로 조사 실시
- 실태조사 자료를 토대로 법률 제정 추진 : '08 하반기 이후
 - 법안 마련('08 하반기), 법률제정('09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실태조사/DB구축	←→									
근거법률 제정		←→								
향토지식산업육성					←→					

□ 기대효과

- 지역성·전통성을 갖고 있는 향토지식자원의 개발 및 육성으로 자립형 지방화 실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200억원
 - 전국 향토지식자원 실태조사 및 DB구축 : 10억('08년)
 - 향토지식자원 개발 및 육성 제도화 연구 : 10억('09년)
 - 향토지식자원 개발 및 육성 지원 사업 : 180억('10년~'12년)

총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0억원	10억	10억	60억	60억	60억

○ 입법조치

- 『향토지식자원 개발 및 육성 법률』 및 시행령 제정

15. 읍면동 사무소 등을 창업공간으로 활용

읍면동사무소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유휴공간을 창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POHO(Public Office Home Office) 프로그램을 운영

□ 현 황

- 지자체 소유 공유재산의 경우 모든 주민에게 동등한 이용 기회를 부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29조)
 - 일반경쟁입찰을 통한 창업자의 공유재산 이용은 가능
 - 행정재산의 임대기간은 3년(잡종재산은 5년 임대 가능)
- 공유재산 임대료는 시가로 산정·부과
 - ※ 현 임대료 : 시가로 하되 재산가액의 5%를 하한액으로 함
- 임대료가 '시가'로 부과되어 창업자에 대한 merit 부재 및 짧은 임대기간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

□ 추진방향

-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유휴 공유시설 이용 기회 확대
 - 수의계약 허용, 임대료 부담 완화, 기간 연장 등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추진
- ⇒ 창업지원을 위한 전향적 제도개선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유희 공유시설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중소기업 창업지원 공간에 대한 **수익계약 허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29조 개정
 - 창업자에 대한 임대료 부담 완화
 - 시가 예외 규정 신설 : **재산가액의 2.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1조 개정
 - 창업자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기간 연장
 - 3년 사용·수익허가후 **2년 갱신 허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 개정
- ⇒ 창업지원을 위한 전향적 제도개선 추진

<추진일정>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08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공유재산법 개정	←→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							

□ 기대효과

- 민간부분의 창업투자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유희 공유시설의 창업지원시설로의 활용도 극대화

□ 소요 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 없음
- 입법조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16.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강화

□ 현 황

- 낙후지역 지원이 증가추세이나 여전히 낙후지역 개발수요 및 계획 대비 재정지원 부족
 - ※ 소도읍사업('03~'07) : 74.2%, 접경지역지원('06~'07) : 77.5%, 도서개발('98~'07) : 91.8%
- 자치사무 성격의 낙후지역사업을 부처별 개별 분산 추진함에 따라 유사·중복문제 발생 및 사업 효율성 저하
 - 행자부를 중심으로 8개 부처에서 19개 (협의)낙후지역사업 추진
- 획일적 국고부담비율, 중앙주도(Top-down) 계획 등 자치단체의 특성 및 자율성을 고려하지 않는 낙후지역 개발 방식
 - ※ 소도읍(4년간 국비 50억), 도서,접경지역지원 : 국비 70%

□ 추진방향

- 낙후지역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 지방에 대한 종합적 관점과 관리 노하우를 가진 행자부 중심의 통합·일원화로 유사·중복을 방지하고 낙후지역사업 효율성 제고
 - ※ 낙후지역사업 추진 부처간 협의(사업별 참여방법 등) 필요
-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특성을 고려한 낙후지역 개발
 -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율적 낙후지역종합계획 수립
 - 지역진단을 통한 지역특성화 종합계획 수립,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제도 마련
 - ※ 보조율 관리부처와 협의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낙후지역사업 추진체계 개편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 낙후지역사업 관련 통합 법안 마련('08 상반기)
 - ※ 낙후지역개발촉진특별법(안) :국회 계류중(권경석 의원 발의)
- 지방의 자율성과 특성을 반영한 낙후지역 개발 추진
 - 지역맞춤형 낙후지역개발을 위한 지역진단제도 마련('08년)
 - 낙후도 및 재정력 등을 감안한 차등보조율 방안 마련('08년)
- 낙후지역의 자립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강화
 - 낙후지역 지원사업의 재정규모 지속적 확대, 세제감면 등

<추진일정>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1/2	2/2	1/2	2/2	1/2	2/2
낙후지역통합법안 마련	←→					
지역진단제도 마련	←→	→				
차등보조율제도 마련	←→	→				
재정지원 지속 확대	←					→

□ 기대효과

- 낙후지역 재정지원확대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삶의질 향상
 - ※ 계획대비 지원실적 상향 조정 : 81.1 ⇒ 90%이상
- 낙후지역사업 유사·중복 해소로 예산절감 및 사업 효율성 제고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낙후지역통합법안 마련 및 진단제도 연구용역 : 3억('08년)
- 낙후지역 사업 차등보조율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 2억('08년)

총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억	5억	-	-	-	-

○ 입법조치

- 낙후지역 통합관련 법안 제정 : (가칭)낙후지역개발촉진특별법

□ EU 등 외국의 낙후지역개발 최근 경향

- 통합적 사업체계
 - 낙후 정도 및 낙후지역의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고 유형별 차등 지원
- 자율계획 수립 등 자치단체 주도의 추진체계
- 포괄재원 지원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사업 추진

□ 일본의 낙후지역 개발 정책

- 개요
 - 지역의 과소를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 「과소지역자립촉진특별조치법」 중심으로 간편한 추진 체계
- 특징
 - 총무성 중심의 추진체계
 - 자치단체 사정에 정통하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있는 총무성(자치행정국 과소대책실)에서 총괄 추진
 - 특성화된 소득창출 사업 활성화
 - 물적 기반형성위주에서 소프트한 소득창출 사업으로 변화 모색
 - 자치단체 주도의 개발사업
 - 국가는 과소지역 선정, 고시 등 정책전반지원 및 행·재정, 금융, 세제 지원
 - 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계획 수립 추진

구분	국가(*총무성 주관)	도도부현	시정촌
역할	-도도부현 계획 협의 -시정촌계획 부처 협조 -시정촌 계획에 대한 행·재정 지원, 금융·세제 지원	-도도부현계획 수립 -시정촌계획 지침 수립 및 제공 -시정촌 계획 협의	-특성화된 시정촌 계획 수립 -도도부현과 협의 -시정촌 계획 제출

17.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내실화 및 자립경제 활성화사업 지원

- 지원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규의 개정 추진
- 접경지역을 남북경제협력의 중심으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정주환경 개선

□ 현 황

- 각종 인프라가 부족하고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이용 규제로 낙후도 심화
- 접경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부족(계획대비 55%수준) 및 사업 실효성 미비
- 남북교류 확대에 따른 난개발 및 비무장지대 환경훼손 우려

【 접경지역 지원사업 현황 】

- 사업기간 : 2003~2012(10년)
- 총사업비 : 5조 1,278억원(국비 21,649, 지방비 14,284, 민자 등 15,345)
- 지원형태/사업시행주체 : 지자체 자본보조, 지방자치단체
- 법적 지원근거 :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제11조
- ※ 접경지역 : 민통선 이남 20km이내, 3개 시도, 15개 시·군

□ 추진 방향

- 접경지역 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 마련
 - 접경지역지원법의 각종 지원규정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
 - 남북협력기금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 마련
-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조정 등 중첩 규제의 합리적 완화 추진
 -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25km→15km) 및 탄력운영을 국방부와 협의
- 종합계획의 합리적인 수정·보완 및 관계 부처의 참여 증진 추진
 - 10개년 종합계획의 수정·보완 및 관계부처의 실질적 지원 유도
-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을 위한 기반마련 및 연구용역 추진
- ※ 기존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확대·발전시키고, 평화벨트 구축을 신규도입

□ 세부 추진계획

- 접경지역 지원사업 세부 발전방안 마련 및 보고('08상반기)
-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보완 추진('08상반기)
-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08년)
- 접경지역 평화거점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08년~'09년)
- 남북협력기금 활용방안 마련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협의('08년)

<추진일정>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비 고
	1/2	2/2	1/2	2/2	1/2	2/2	
발전방안 마련 및 보고		←	→				
종합계획 수정·보완			←	→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	→			
평화거점 구축 연구용역			←	→		→	
재원확보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 협의				←	→		

□ 기대 효과

- 접경지역 지원확대로 지역경제 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
 - ※ 계획대비 지원비율 : 77.5%⇒ 90% 이상
- 남북한 접경지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로 자연환경 보전 및 평화통일기반 조성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5,047억원
 - '08년도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 511억('08년)
 - 접경지역 평화거점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 5억('08년~'09년)
 - '09년 ~ '12년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 : 4,541억('09년 ~ '12년)

총 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047억원	516억(기 확보)	1,135억	1,135억	1,135억	1,136억

- 입법조치
 - 접경지역지원법, 접경지역지원법시행령 개정

□ 접경지역지원 사업목적

- 남북분단에 따라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통일대비 기반시설 구축

※ 접경지역지원법 제정·공포('00. 1. 21), 시행령 제정·시행('00. 8. 28)

□ EU(유럽연합)의 접경지역 협력사업

- 사업개요 : EU(유럽연합)본부는 27개 회원국 중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하는 공동협력 프로그램 운영
- 사업목적 : EU 역내시장의 통합과 회원국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협력
- 사업기간 : 2007~2013년(7년간)
- 사업비 : 77.5억 유로(10조원 규모)
- 사업내용 : 혁신, 환경보호, 교육, 문화 등의 사업에 우선 지원

□ 정책적 시사점

- 사업방식의 다양화
 - 물적 위주의 인프라 구축에서 환경,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사업추진 필요
- 접경지역 국가간 협조로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 필요
 - 남북한 접경을 아우르는 종합적·체계적 계획 수립으로 환경문제, 난개발 등을 해소

18.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관광레저·대학 클러스터로 조성

- 반환공여지 규제완화, 첨단 R&D단지 및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
- 대학유치를 통한 경기북부지역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 등

□ 현 황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정('06. 3월)
 - 시·도지사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제출, 행자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위원회 심의후 확정
-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 1차 발전종합계획 수립·확정
 - 15개 부처, 328개 사업(약 12조 규모), 공여구역 주변 주민편의시설 등

□ 추진방향

- 국방부의 관리계획 수립 추진 독려
 - 국방부에서 법시행후 반환된 23개 기지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08. 4월)후 지자체와 기지 활용문제 협의(법 제12조)
- ※ 79개 전체 반환기지에 대한 관리계획은 2012년까지 확정 예정
- 국방부와 지자체간 협의된 반환기지 활용계획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 대학유치 등 민자사업의 경우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토지수용 및 도시계획결정 등 인·허가 의제처리 등으로 사업 기간 단축 가능

□ 세부 추진계획

- 국방부의 관리계획 수립 추진('08년)
 - 23개 기지에 대한 국방부 관리계획 수립 추진 독려
- 발전종합계획 수정 보완('08년 하반기)
 - 국방부와 지자체간 협의 완료된 반환기지 활용계획은 발전 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확정
- 민자사업은 사업시행자 지정 등 특별법에서 마련한 규제완화 및 인·허가 의제처리로 사업 조기시행 독려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2	2/2	1/2	2/2	1/2	2/2
반환기지 활용계획 협의	↔					
발전종합계획 수정·보완		↔				

□ 기대효과

- 미군기지 주변지역에 대한 체계적·종합적 계획수립으로 난개발 방지, 지역 경제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
- 민간자본의 효과적 투자유치 및 훼손된 지역이미지 재구축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이화여대, 서강대 파주 캠퍼스 유치를 계기로 인근의 LG 필립스 등 첨단산업단지와 연계, 파주를 대학주도형 산학협력 클러스터로 육성

※ 이대 : 2,000억원('08~'10), 서강대 : 1,000억원('08~'10), 민자유치로 추진

- 포천 대도시 근교형 관광레저타운 조성

※ 사업규모 3조 5,335억('08~'14), 민자유치로 추진

19. 부평미군부대 이전 및 명품형 도시공원 조성

- 해양생태 관광단지 및 박물관 등 여가와 문화를 융합한 명품형 도시공원 조성
- 연구소·전시·컨벤션 등 시민친화적 도시공원형 산업클러스터 구축

□ 현 황

-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등 지원특별법” 제정('06. 3월)
 - 시·도지사가 발전종합계획을 수립·제출, 행자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발전위원회 심의후 확정
-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발전종합계획 수립
 - 공여구역 및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발전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 ※ 1차 발전종합계획 수립·확정
 - 15개 부처, 328개 사업(약 12조 규모), 공여구역 주변 주민편의시설 등

□ 추진방향

- 주한미군 반환기지인 부평 캠프 마켓에 대한 국방부와 인천 광역시간 활용계획 협의(법 제12조)
 - ※ 인천시 : 도시공원 조성, 국방부 : 전체 공원조성에는 반대
- 국방부와 인천시간 캠프 마켓 활용계획 협의완료시 발전종합 계획에 수정 반영
 - 인천시가 도시공원조성시 반환기지내 국유지 매입비용의 60~80%를 국가가 보조

□ 세부 추진계획

- 국방부와 인천시간 반환기지 활용계획 조기 협의('08 상반기)
 - 국방부와 인천시간 협의 완료시 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반영·확정
- 공원조성에 따른 국비 지원규모 및 기준 등에 대하여 기획 예산처와 협의·지원('08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1/2	2/2	1/2	2/2	1/2	2/2
반환기지 활용계획 협의	←→					
발전종합계획 수정·보완		←→				
국비지원규모 및 기준 협의	←→					
사업추진			←→			

□ 기대효과

- 미군기지 주변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시민 휴식공간 제공 및 미군주둔으로 훼손된 지역이미지 재구축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1,750억원(국비)
 - 캠프 마켓 부지매입비용(2,500억원)의 70%를 국비 지원
- 입법조치 : 해당 없음

중기과제(18건)

〈중기과제 목록〉

2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21. 가족간호휴가제 실시
22. 미래형 도시모델 u-City 등 u-라이프 구현
23. 밝고 건강한 디지털문화공동체 구성
24. 경찰자치제 확대·강화
25. 교육자치 확대·강화
26. 사회적 갈등관리·분쟁해결제도 체계화
27. '희망복지 129센터'를 통합 원스톱 서비스 센터로 운영
28. 이주민 이해증진 및 지원시책 추진
29. 행자부의 역할을 지방분권의 창도자로 전환
30. 안전관련 법령체계 정비
3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을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
32. 무과업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 확대
33. 지방재정분석제도 운용
34. 최저가 입찰확대 및 계약심사제도를 통한 예산절감
35. 중앙과 지역의 상생·융합·경쟁시스템 구축
36.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
37. 'Designed in Korea' 멋진 한국

20.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및 민간 이양

6,500여개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중앙 행정기능의 간소화 및 지자체의 활성화 추진

□ 현 황

- 노동부 등 25개 부처에 총 4,510개 기관 설치 운영('07.12월 현재)
 - 인력은 20만명으로 전체 국가공무원 60만4천명의 33% 차지
 - * 세무·공안·현업기관 제외시 16,419명(국가공무원 전체의 3%)

	기 관 수(개)			정원(명)
	총계	1차기관	2·3차기관	
총 계	4,510	246	4,264	200,139
노동행정기관	46	6	40	4,208
세무행정기관	182	53	129	22,969
공안행정기관	1,916	73	1,843	130,174
현업행정기관	1,973	8	1,965	30,577
기타행정기관	393	106	287	12,211

-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능 중복으로 자치역량 저해 및 효율성 저하
 -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실질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
 - ※ 참여정부 로드맵 과제로 선정('03.7) 후 외부전문가 중심으로 지방이양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합의 도출 실패

□ 추진방향

- 단기간내 추진 가능한 기능조정 방안부터 점진적으로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새정부 조직 개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단계별 추진방안 강구
 - 지자체와의 기능 중복분야 및 민간위탁 가능 기관의 지방 위임(이관)·민간위탁 등 추진
 - ※ 대상기관(안) : 노동부, 환경부, 건교부, 공정위, 통계청, 중기청, 식약청
 - 중간감독기관의 광역화·계층축소 및 통폐합 추진
 - ※ 통합지역담당기구 설치 등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하여 추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방안 수립	←→									
광역화·계층축소 및 통폐합추진	←		→							
관련법 개정		←→								
지방위임 및 민간 위탁 추진		←→								

□ 기대효과

-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행정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의 자치역량 강화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입법조치
 -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21. 가족간호휴가제 실시

노인, 어린이, 환자 등 장기적인 간호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가족간호휴가제 도입

□ 현 황

- 공무원은 가족간호를 위해 연가 또는 가사휴직 활용 가능
- 행정부 국가공무원(약 58만3천명) 가사휴직 활용 : '05년 142명, '06년 148명

종 류	연 가	가사휴직
근 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 제5호
요 건	본인의 정신적·육체적 휴양 및 사생활 편의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부모·배우자·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 간	3~21일(재직기간에 따라)	1년 이내 (총3년)
급 여	유 급	무 급

- ※ 민간부문의 경우 현재 가족간호휴직제를 도입한 기업은 약 20%미만으로 추정
- '07. 1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가족간호휴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추진방향

- 공무원은 연가 또는 가사휴직을 통해 가족 간호 가능
- 다만, 6개월 미만 가족간호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으로 휴직을 실시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제도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가족간호휴직이 가능토록 조치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 개선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공무원 가족간호휴직(가사휴직)제도 운영실태 파악
-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및 외국의 선행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검토('08년)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공무원휴가업무예규 개정('08년~'09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전문가 의견수렴 등 개선방안 검토	←→									
국가공무원복무 규정 개정			←→							

□ 기대효과

- '일·가정의 양립' 지원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을 통한 직무전념 여건 마련
- 가족사랑의 가치를 중시하는 문화 확산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유급으로 휴가 또는 휴직을 실시한 경우 추가 예산 소요 예상
- 입법조치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22. 미래형 도시모델 u-City 등 u-라이프 구현

- u-보건·의료, u-산업, u-생활, u-치안, u-시티 등 서비스와 산업을 접목한 새로운 성장엔진 육성
- u-city의 기반 및 응용서비스 표준화, 'u-Quick 119 제도', 'u-서민경제 클러스터' 등 주민생활 밀착형 u-라이프 구현

□ 현 황

- 화성 동탄, 파주 운정 등 11개 신도시 중심으로 u-City건설 추진 중
 - 정통부·복지부·건교부 등이 산발적으로 u-서비스 개발·보급
 - ※ 화성시 동탄 u-City의 경우, 시청 전산실과 별도로 u-City운영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연간 30억~40억원의 운영비 낭비 예상, 기 구축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새올)과의 상호호환 미흡(감사원 지적)
- 행자부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u-Life21 기본계획' 수립('07.10.25)
 - ① 유비쿼터스 기반의 57개 주민 밀착형 지역정보서비스 모델 개발
 - ② 지역정보통합센터 구축
 - ③ 지역정보서비스의 표준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 등
- 지자체의 경쟁적인 u-City 사업 추진에 따른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공통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기 구축된 시도·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과 연계 구축
- ※ 지역정보화 촉진·지원을 위해 예비타당성(9,673억) 진행 중

□ 추진방향

- u-Life21기본계획에 따라 u-서비스 개발·보급 시행

□ 세부 추진계획

- 예비타당성 조사 마무리('08.5, KDI)
- 지역정보화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공통기반 ISP('08.1~)
- u-라이프서비스·통합센터 등 단계별 개발·보급('09~'12)
 - ※ 'u-Quick 119 제도', 'u-서민경제 클러스터'구축 공약과제는 수정 보완하여 추진
 - ※ 지역정보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원발의, 행자위 법안소위 계류, '08)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예비타당성 조사 마무리	↔									
지역정보화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표준화된 공통기반 ISP	↔									
u-라이프서비스·통합센터 단계별 개발·보급			←————→							

□ 기대효과

- 2011년까지 9,953억원을 투입, 생산유발효과 약 1조5천억, 부가가치유발효과 5천627억원, 고용유발효과 2만여명 기대
- 도심에서 낙후지역까지 지역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간 정보화 불균형 해소 및 풍요롭고 살기 좋은 지역생활환경 조성에 기여

□ 소요예산

- 소요예산 : 총 9,953억원(u-Life21, 5년간 소요예산)
 - ISP, u-라이프서비스 개발·보급 등 : 5,455억('08~'12년)
 - 공통플랫폼, 통합센터, 네트워크 등 : 4,498억('09년~'12년)

총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9,953억원	25억	1,039억	3,173억	5,716억	고도화계획수립

참고

u-라이프서비스 개발 대상 현황

구분	영역	서비스명	영역	서비스명
공통 서비스	행정	원격검침서비스	기 반 시 설	u-시설물관리서비스
		현수막관리서비스		u-자산관리서비스
		맞춤형행정정보공유서비스		가로수관리서비스
		도면협업관리서비스		옥외광고물관리서비스
		공간데이터웨어하우스서비스		u-지하매설물관리서비스
		공간영상관리서비스		u-Learning서비스
	교통	맞춤형주차관리서비스	생 활	도서관자동화관리서비스
		불법주정차치능관리서비스		Onecard서비스
		이동차량추적관리서비스		지역 생활기상과학 체험 서비스
		지역교통지원서비스		미아방지서비스
	안전	화재/가스사고대응서비스	복 지	가족사랑맞춤형서비스
		하천범람예보서비스		Total원격진료서비스
		공영주차장대피관리서비스		생활체육연계노인건강관리서비스
		u-치안서비스		재난재해Care&Help서비스
	환경	음식물쓰레기통합관리서비스	응 복 합	이사서비스
		배출부과금관리서비스		원클릭창업지원서비스
		정화조관리서비스		OneStop행사서비스
	특화 서비스	안전	산불예방관리서비스	지 역 산 업
질개지안전관리서비스			양곡청고관리서비스	
제설관제서비스			축산관리서비스	
환경		대기오염추적서비스	특화농작물환경관리서비스	
		지하수오염관리서비스	토양지도관리서비스	
복지		결혼이주여성생활지원서비스	원격축사관리서비스	
		시각장애인길안내서비스	해수수온측정서비스	
문화 관 광		USN등산정보서비스	고급수목관리서비스	
		u-텔레매틱스서비스	수산물정보관리서비스	
		u-Museum서비스	지역산업체지원서비스	
		u-문화관광정보서비스	산업특화거리서비스	
			지역물류지원서비스	

23. 밝고 건강한 디지털문화공동체 구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전송데이터 암호화와 인증체계를 수립하여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현 황

○ 전송데이터 암호화

- 유통되는 공문서는 모두 암호화하여 시행중
- 공문서가 아닌 행정정보는 「행정정보공유」 등 극히 일부 시스템에서만 암호화 적용

○ 인증체계

- 행정기관의 정보시스템 접근을 위한 인증체계는 보안성이 미흡한 단순 ID·패스워드 방식으로 이용중

구 분	단순 ID·패스워드 방식	행정전자서명(GPKI)방식
비 율	85%	15%

□ 추진방향

- 전자정부시스템 전반에 대해 암호화·인증체계의 필요성 분석
 - ※ 개인정보보호 효과성, 기술적 문제, 재정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 전송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체계 도입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와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추진
- 전자정부시스템 전송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체계 개선 추진

전송 데이터	인증체계
평문 유통 ⇨ 암호화 유통	ID·패스워드 ⇨ 전자서명(GPKI) 방식

□ 세부 추진계획

- 정보시스템 암호화·인증체계 조사 및 개선 대책 수립('08.3~6)
- 암호화 및 인증체계 적용을 위한 시스템 재설계('08.7 ~ 12)
- 암호화 및 인증체계 개선은 3개년 계획으로 단계별 추진('09~'11)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현황분석 및 대책 수립	↔									
암호화·인증체계 재설계		↔								
전송데이터 암호화			↔							
인증체계 개선			↔							

□ 기대효과

- 행정기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비용 절감(년간 2,000억원)
 ※ 1만대(정보시스템 수) × 100건(대당 정보유출 예상건수) × 20만원('07.11 고법판결)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총 508억원
 - 암호화 및 인증체계 개선대책 수립(ISP) : 8억 ('08)
 - 전송데이터 암호화 및 인증체계 개선 : 500억 ('09~'11)

총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08억원	8억	170억	170억	160억	-

- 입법조치 : 해당없음

24. 경찰자치제 확대 · 강화

자치경찰제의 본격 도입을 통한 지방자치의 확대 · 발전

□ 현 황

- 정부는 자치경찰법안 국회 제출('05.11.3), 공청회('05.5.9, '06.2.17) 등
지난 2년간 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별도 법안을 발의('06.2.15 행자위 상정)
- ※ 자치경찰 도입단위(정부안: 기초, 유기준안: 광역단체) 및 수행업무(정부안 : 생활안전 · 지역교통 등 국가경찰과 공동수행, 유기준안: 수사 · 정보업무 등까지 단독 수행)에 있어 차이
- '07.4.13 행자위 법안소위 최초 논의 후, 07.12 현재 국회 계류중

□ 추진방향

- 자치경찰제 확대 · 강화 방안 마련
 - 국회에 계류중인 현행 정부안을 기초로 광역단위 기능을 보장한 수정안 마련
 -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치안사각지대 보강으로 전체적인 치안역량 강화확대
 - 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 및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 확보
 -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성 제고로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자치경찰제 법안 마련('08 상반기중)
 - 학계, 자치단체 등 각계의 여론 수렴
- 자치경찰법 후속조치('08년 하반기) -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자치경찰제 재정지원방안 마련('08년 하반기)
- 자치경찰 시범실시('09년 상반기)
- 자치경찰 전면실시('10년 상반기)
- 자치경찰제 개선·보완 등 제도정착 추진('10년 이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자치경찰법 입법	↔									
자치경찰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								
자치경찰제 시범실시			↔							
자치경찰제 전면실시					↔					

□ 기대효과

- 지방자치의 종합성을 제고하여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
 - 주민의사와 지역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연간 4,357억원
 - 인건비 : 3,611억원, 장비구입비 : 699억원, 복제구입비 47억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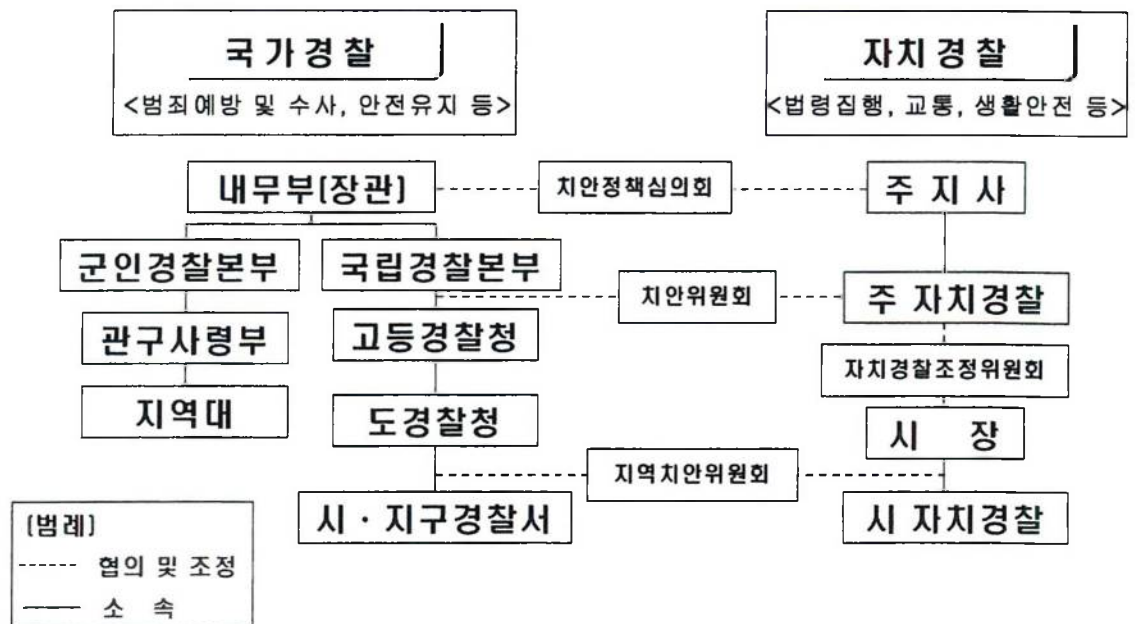
총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3,388억원	0	317억	4,357억	4,357억	4,357억

○ 입법조치

- 자치경찰법·자치경찰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 스페인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적 구조
 - 국가경찰은 내무장관 지휘하에 국립 및 군인경찰로 구성
- 자치경찰은 기초 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운영
 - 기초 자치단체는 헌법과 법령, 조례에 따라 자치경찰 운영
 - ※ 州의 경우 총 17개 州중 3개 州만이 자치경찰 보유
 - 국가·자치경찰간 협력 장치로 ‘기초·광역 치안위원회’ 운영
- 자치경찰은 단체장의 지휘를 받아 자치법규 집행, 지역교통의 소통·안전, 생활안전 유지 등의 업무 담당
- 조직도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 유사한 자치경찰제도 채택·운영

< 일 본 >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단일 체제 내에서 운영

- 국가경찰로 경찰청·관구경찰국, 자치경찰로 동경도 경시청·도부현 경찰본부 운영
- 총리 소속의 국가공안위원회(위원 5명)가 국가경찰 관리
-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조정·감독을 위해 관구경찰국 운영

□ 都道府縣 지사 소속 지방공안위원회가 자치경찰 관리

- 지방공안위원회는 都道府와 지정시를 포함한 縣은 5인, 기타 縣은 3인으로 구성되며 의회의 동의로 지사가 위원 임명
- 동경도 경시청 및 도부현 경찰본부 산하에 경찰서 운용
-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되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국가경찰의 지휘·감독을 받아 수행

□ 경찰관은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으로 이원화

- 국가공무원 : 경찰청 소속 경찰관, 都道府縣 「경시정(총경)」 이상
⇒ 국가공안위원회가 都道府縣공안위원회 의견을 들어 임명
- 지방공무원 : 都道府縣 「경시(경정)」 이하
⇒ 경시총감과 道府縣경찰본부장이 都道府縣공안위 의견을 들어 임명

25. 교육자치 확대·강화

지방교육자치 관련 중앙정부의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대폭 이양

□ 현 황

- '91년부터 시·도 단위의 광역교육자치 실시
 - 광역중심의 지방교육자치체제로 주민의 관심사를 지역여건에 맞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 미흡
- 일반자치와 교육자치간 의결기관은 통합('10년부터 시행), 집행기관은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으로 이원화
 -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부족, 불분명한 권한배분으로 행정상 비효율, 지역교육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소재 모호

□ 추진방향

- 교육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교육추진체계 개편
 - 교육감 선출방식 개편, 일반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 등 자치단체장이 지역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 ※ 교육감 선출방식 : 단체장과 러닝메이트, 단체장이 임명
 - 주민생활 중심으로 지방교육자치 실시단위 확대
 - 교육의 수요자인 주민의 선호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광역중심의 교육자치를 기초단위까지 확대
- ⇒ 자치단체 및 학계 의견수렴, 교육부 등 관계부처 협의 필요

□ 세부 추진계획

-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강화 방안 마련('08~'09년)
 - 일반·교육행정 집행기관 통합 등 연계강화 방안 검토
 -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개편방안 마련
- 기초자치단체까지 교육자치 확대 실시 검토('08~'09년)
 - 기초자치단체의 행·재정여건, 정책의지 등을 고려하여 검토
- 지방교육추진체계 개편('09~'10년)
 - 교육감 선출방법, 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통합 등
 - 광역자치단체부터 단계적 실시('10년 지방동시선거)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교육자치와 일반자치 연계강화 방안 마련		↔												
기초까지 교육 자치 확대 검토	←			→										
지방교육추진체계 개편 추진				↔										

□ 기대효과

- 교육발전을 위한 지방의 행·재정 역량 결집 및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자치 활성화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추정 곤란
- 입법조치 :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등 개정

참고	외국 교육자치 제도 개관
-----------	----------------------

		의결·집행기관	선출방식	
			교육위원	교육감(교육장)
미국	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주의회 ○ 집행: 주지사, 주교육위원회 	-주지사가 임명 또는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35개)	-주교육위원회 임명(25개) -주지사가 임명(11개) -주민직선(14개)
	학교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집행: 교육위원회 	-주민직선(대부분) *교육위원 자격제한 없음 -단체장이 임명	-교육위원회가 공모하여 채용
영국	광역	<지방교육행정기관 없음>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집행: 교육위원회 *교육장은 교육위가 선임한 교육집행책임자 	-50%이상은 지방의원이 겸직, 50%이내는 외부 전문가 선임	-교육장은 교육위원회가 선임
일본	도·도·부·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지방의회 ○ 집행: 교육위원회, 자치단체장 (예산 총괄 책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중에서 임명
	시·정·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지방의회 ○ 집행: 교육위원회, 자치단체장 (예산 총괄 책임)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중에서 임명
독일	교육·장학·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주의회 ○ 집행: 주교육부장관 *자치단체의 상·하급교육청은 교육부장관 산하 하급 행정기관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교육부장관 - 주지사가 임명 ○ 교육장 - 교육부장관이 임명
	학교·설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지방의회 ○ 집행: 자치단체장 	-	-
프랑스	교육·장학·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의회 ○ 집행: 교육부장관 *학구교육감, 지역교육장은 교육부장관 산하 하급 행정기관임 	-교육계 대표, 자치단체 대표, 수요자 대표로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장관 - 대통령이 임명 ○ 교육장 - 교육부장관이 임명
	학교·설치·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결: 지방의회 ○ 집행: 자치단체장 	-	-

26. 사회적 갈등관리·분쟁해결 제도 체계화

사회적 갈등이 불법시위로 확산되기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사전 갈등관리 및 분쟁해결 제도 체계화

□ 현 황

- 민선 이후 중앙-지방간, 지방간 갈등·분쟁의 지속으로 국정 시책 차질 및 사회적 비용 증가
 - ※ 민선('95) 이후~'02년 : 연평균 18건, 참여정부('03~'07) : 연평균 14건 발생
- 분쟁조정기구의 소극적 운영 등 해결체계 미흡, 분쟁의 사전적 예방보다는 사후적 해결에 치중하는 등 갈등·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관리역량 미흡

□ 추진방향

- 각 부처 정책 추진상 사회적 갈등·분쟁은 원칙적으로 소관 부처가 관리하고, 지방에서 발생한 중앙-지방간, 지방간 갈등·분쟁은 행자부에서 총괄·조정
- 갈등·분쟁에 대한 사전적 예방 시스템의 정착 및 발생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사후적 분쟁조정기능의 강화
 - ※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갈등예방 및 분쟁 조정기능 강화
 - 주요정책 갈등영향분석, 갈등 조정절차 제도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08)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직권상정권·이행명령제 도입 등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08~'09)
 - 자율적·예방적 갈등관리를 위한 지역별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08)

○ 중앙-지방간, 자치단체간 상생협력 기반 확대

- 지방 건의·애로사항의 One-stop 처리를 위한 '지방도우미 센터' 구축·운영('08)
- 지방 4대 협의체 국정참여 제도화('08~'09)
-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등 광역행정체제 및 자치단체 협력제도 내실화('08~'10)

○ 지역단위의 기관장 협의체(의장 - 자치단체장, 특별지방자치단체장 참석) 구성·운영으로 지역정책의 실질적 조정기능 강화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분쟁조정제도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		→											
지역별 민·관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방 도우미 센터 구축·운영	←→													
지방 4대협의체 국정참여 제도화	←→		→											
광역행정체제 및 자치단체 협력제도 내실화	←→		→											

□ 기대효과

○ 갈등·분쟁의 사전예방으로 사회적 비용 절감

※ 평택미군기지 이전, 천성산·사패산 터널공사, 새만금사업, 방폐장 건립 반대 등 5대 공공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총1,340억원 추산('05. 기준)

○ 직권조정·이행명령제 도입 등 분쟁조정 활성화로 분쟁의 조기해결(조정해소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없음

○ 입법조치 : 지방자치법 등 개정

27. '희망복지 129센터'를 통합 원스톱 서비스센터로 운영

- 주민생활지원국(과)을 '희망복지 129센터'로 전환
- '희망복지 129센터'내에 지역복지 통합정보체계 구축
- '희망복지 129센터'에서 보건복지부 콜센터 기능 흡수
- '희망복지 129센터'의 추가적 공간 확보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

□ 현 황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추진('06.7~)
 - 지방행정의 패러다임과 조직체계를 서비스 행정위주로 전환
 - 시군구에 주민생활지원국(과),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 신설
 - ※ 복지·보건·고용·주거·교육·체육·문화·관광 등 8대 서비스 통합 제공
 - 행정인력 전환배치(4,830명) 및 교육실시(약 21,000명)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07.7 시범개통)을 통해 공공·민간부문 서비스 자원을 연계한 대국민 서비스 실시
 - 지역별 주민협의회(67개) 및 민관협의체(50개) 구성 추진
-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민원상담 서비스 등을 위해 '보건복지 콜센터' 운영중
- 조직개편,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하드웨어적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통합·연계서비스의 제공 및 주민체감은 아직 미흡

□ 추진방향

- 『‘희망복지 129센터’를 통합 원스톱 서비스센터로 운영』은 현재 행자부가 추진 중인 주민생활서비스 전달체계 혁신을 보완하여 시행
 - 기존 주민생활지원국(과)의 원스톱 서비스센터 기능을 강화하여 유비쿼터스 ‘희망복지 129센터’화 추진
 - 지역복지 통합정보시스템의 확대 구축 및 고도화로 다양한 주민생활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
 - 읍면동 중심기능을 행정사무에서 주민생활 위주로 전환
 - 민관협력 분야와 자원봉사활동의 연계를 통해 지역별 복지공동체 기능 활성화
- ‘희망복지129센터’와 보건복지 콜센터는 그 역할과 기능에 있어 차이가 있으나 향후 통합운영 모색(보건복지부와 협의추진)
 - 보건복지 콜센터 : 보건복지 관련정보 제공, 긴급지원기구 역할 등 수행
 - 희망복지 129센터 : 공공·민간부문 조직과의 연계서비스망 구축을 통한 보편적 주민생활서비스 제공
-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동사무소 통폐합 후 유휴시설을 복지 시설 등으로 활용
-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실시

□ 세부 추진계획

- (가칭)“주민생활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08)
-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추진('08~'11)
- 보건복지부 등 관련부처와의 협의하여 '희망복지 129센터'의 보건복지 콜센터 기능 흡수 및 효율적 운영방안 모색('08)
- 전문인력(2,500명) 확보 및 교육 (8,100명) 강화('08~'09)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주민생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통합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서비스 확대	←							→		
복지부등 관련부처와 방안모색 및 협의추진	←	→								
전문인력 확보 및 교육 강화	←			→						

□ 기대효과

- 원스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 민관협력을 통한 자원활용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의 중복·누락 방지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661억원(통합정보시스템 구축)
 - 응용시스템 개발 : 185억('07~'11년)
 - 인프라구축 및 운영 등 : 476억('07~'11년)

총예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661억원	83억(기집행)	85억	177억	158억	158억

- 입법조치 : (가칭)“주민생활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8. 이주민 이해증진 및 지원시책 추진

이주민의 지역사회 정착과 사회적응을 위해 다자간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시책 추진

□ 현 황

- 그동안 자치단체에 이주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 표준조례('06.10), 업무편람('07.4), 실태조사('06.4, '07.5) 등
 - ※ 국내 체류 외국인 95만명(주민등록인구 4,913만명의 2%, '07.8월)
 - ※ 국제결혼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107,641명('07.9월)
 - ※ 새터민의 지속적 증가 : 1,043명('01년) → 11,499명('07.9월)
- 각 부처별 산발적 추진으로 종합적 지원업무 추진체계 미흡, 이주민·주민간 상호이해를 위한 문화교류 등 정착지원 부족

□ 추진방향

- 이주민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자치단체의 행정적 지원을 보완·발전시키고 중앙·지방의 이주민 지원 추진체계 구축
- 이주민에 대한 통제·관리에서 지역사회 정착지원으로 정책 전환
 - 결혼이주민, 산업연수생, 탈북자 등 다양한 이주민에 대한 다문화 존중의 지역사회통합 종합 지원
 - 자치단체의 관심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 지원
 - ※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행자부·자치단체에 이주민사업 종합지원 전담조직 설치('08)
- 주민자치센터 등에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개설('08)
- 순회 소양교육(이주민·담당자·주민), 실태조사, 책자발간('08~'12)
- 자치단체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08~'12)
- 이주민 「친정부모 초청행사」 개최('08~'12)
-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개발 용역 발주('09)

- 이주민 봉사 단체 · 개인 DB 구축('09)
- 5개 거점(서울 · 경기 · 충청 · 전라 · 경상) 「이주민 지원센터」 건립('09~'12)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사회통합지원팀 설치	←→									
자치센터 등 이주민 지원 프로그램 개설	←→									
순회교육, 실태조사, 책자발간	←→									
세계인의 날 지원	←→									
친정부모 초청행사기획	←→									
프로그램 개발용역			←→							
이주민 봉사단체 · 개인 DB구축			←→							
이주민지원센터 건립	←→									

□ 기대효과

- 체계적인 이주민 지원체계 정립으로 효율적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이주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다문화 지역 커뮤니티 구축 및 지역 사회통합 실현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총 123억15백만원
 - 세계인의 날 지원(2), 친정부모 초청행사(2) 등 : 4.15억('08)
 - 순회교육(2천), 세계인의 날 지원(2), 프로그램 개발 용역(1), 주민 지원센터 건립(20), DB 구축(1), 친정부모 초청행사(2) : 26.2억('09)
 - 순회교육(8천), 세계인의 날 지원(6), 이주민 지원센터 건립(80), 친정부모 초청행사(6) : 92.8억('10~'12)

총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3억15백	4.15억	26.2억	44.2억	24.3억	24.3억

- 입법조치 : 없음

29. 행자부의 역할을 지방분권의 창도자로 전환

행정자치부의 역할을 지방분권의 창도자로 전환

□ 현 황

- 행자부는 지방자치 지원 주무부처로서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는 선진형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행·재정적 토대 구축
- 중앙-지방간 연계 기능을 통해 국정의 지방 구현을 촉진하고, 지방의 입장을 국정에 반영
-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은 각 부처의 소극적 자세와 총괄 부처의 실행력 부족으로 지방의 분권체감도 저조

□ 추진방향

- 실질적 지방분권과 국정의 통합성 확보를 위한 견인차로서 행자부의 역할 정립
- 지방자치단체의 후원자, 지역균형발전의 총괄 조정자(Control Tower)로서의 기능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중앙-지방간 조정자 역할 정립
 - 지방 관련 주요 정책에 대해 소관부처 장관과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가칭)지방발전전략회의 신설 및 간사역할 담당
 - 자치단체의 대정부 건의사항 종합 관리기능 확대·강화
- 국가-지방간 합리적 사무배분 및 지방이양의 내실화
 - 법령 제·개정시 사무배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사무배분 사전심사제” 도입
 - 단편적 사무 위주의 지방이양을 중대 단위의 포괄적 지방이양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 특성에 맞는 차등이양 확대

○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확보

- 지방에 대한 각종 평가를 합동평가 위주로 일원화
- 지방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성과·정책·예방'감사 강화
-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살림') 고도화를 통해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한 발전 유도

○ 지방자치 역량 강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

- 자치단체 조직관리·지역개발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제공
- 지방재정의 실질적 확충 및 지방교부세제도의 합리적 개선
- 지방세 구조개편 및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 완화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중앙-지방간 가교역할 정립	←	→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			→						
지방행정의 책임성· 효율성 제고	←	→								
지방의 역량 강화	←									→

□ 기대효과

○ 지방분권에 대한 실행력 확보로 지방이양 가속화

※ 지방이양추진위 이양결정사무 중 312건(20%)이 소관부처 입법지연으로 미이양

○ 중앙-지방간 원활한 의사소통 및 합리적 사무배분으로 정책 실패를 최소화하고 행정비용을 절감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없음

○ 입법조치 :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지방분권특별법 등 개정

30. 안전관련 법령체제 정비

현재 70여개 법률로 분산된 안전 관련 법령체제를 재정비

□ 현 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제정('04.3.11)되어 체계적 재난대응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
 - 기본법으로서의 포괄성과 체계성이 미흡
-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용역(한국방재학회, '07.8~11)
- 105개 법률이 15개 부·청 업무와 연관, 법률간 연계성 부족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별 법령 개수>

구 분		관 련 법 령
재난 관리	재난관리	재난관련(4), 환경관련(5), 산림관련(5), 보험분야(3), 재난정보관련(4)
	소방관리	소방관련(5)
안전 관리	산업안전관리	근로자(2), 광산관련(2), 원자력관련(4), 화약류관련(1), 정보통신관련(3)
	시설안전관리	시설물(19)
	교통안전관리	교통관련(9)
	식품안전관리	전염병및위생(5)
	생활안전관리	승강기관련(1), 석유관련(3), 가스관련(3), 전기관련(5), 에너지관련(3), 유원지및공연행사관련(2)
	기 타	기타관련(14)

□ 추진방향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
 - “안전”에 관한 규정 명확화 및 재난관리체계 정비
 -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강화(정책개발·총괄조정 기능, 개별법·조직간의 연계방안 등)
- 법률, 조직, 기능의 분석과 통합·연계 추진
 - 각 분야별 계획, 교육, 평가기능을 중심으로 법률의 재조정 또는 분야별 통합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범정부적 협조체제 구성 및 운영('08~'09)
 - 학계, 산업계, 정부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재난 및 안전관련 법령정비 계획 수립('08)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09)
- 분야별 법령, 조직 및 기능 재정비('09)

< 추진일정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범정부적 협조체제 구성 및 운영	←————→									
재난 및 안전관련 법령정비 계획수립		↔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개정			↔							
분야별 법령, 조직 및 기능 재정비				↔						

□ 기대효과

- 재난 및 안전관련 법령 정비로 명료하고 구체적인 재난서비스 제공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 행정 추진으로 재난 피해와 경제적 손실 감소 등 “국민의 안전한 삶 구현” 가능

□ 소요예산 및 입법추진

- 소요예산 : 16억원('08년)
 - 8개 분야별 법률, 조직, 기능 분석을 위한 연구 용역 : 16억원
- 입법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관련 법령 개정

31. 사회복지 지방이양사업을 국고지원사업으로 환원

지방재정부담 완화 및 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

□ 현 황

- '05년 분권교부세 제도 신설 : 내국세 총액의 0.83%(8,454억원)
 - 국고보조 149개 사업(9,581억원)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보전
 - ※ 부족분(1,127억원)은 담배소비세 인상분으로 충당
- 분권교부세 법정률 인상 : 0.83%→0.94%(0.11%p 인상, '06년 시행)
 - ※ '08년 분권교부세 재원규모 : 1조 2,579억원
- 운영기한 : '05 ~ '09년(5년간) - 2010년 보통교부세로 통합
- 자치단체에서는 국가책임이 강한 복지를 지방으로 전가한 것으로 인식, 복지정책 확대 등으로 지방비 부담 가중 및 복지 불균형 발생

□ 추진방향

-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여야 할 복지사업이나 최소한의 기본적인 복지서비스(national minimum) 제공이 필요한 사업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
 - ※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운영, 아동시설·아동급식지원사업 등
-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과 병행 추진
 - ※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책감사 청구('07년 정기국회)
- 사회복지사업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국가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와 협의
 - ※ 지방이양사업의 재원을 보전해 주고 있는 분권교부세제도 보완

□ 세부 추진계획

- 타당성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08. 9월
- 국고환원 관련 관계부처 협의 : '09. 3월
- 국고환원 대상사업 확정 : '09. 9월
- 법령 개정 : '09. 12월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1/4	2/4	3/4	3/4	1/4	2/4	3/4	4/4
국고환원 타당성 검토 및 관계기관 의견수렴	←————→							
국고환원 관련 관계부처 협의				←————→				
국고환원 대상사업 확정					←————→			
법령개정 추진						←————→		

□ 기대효과

-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본적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지역간 복지 수혜의 불균형 해소
- 노인·장애인·정신요양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지방비 부담 완화
 - ※ 지방비 부담비율을 '07년(55%)에서 '04년 국고보조사업 당시 비율(42%)로 조정시 연간 약1,276억원 정도 완화 예상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해당없음
 - 기존의 분권교부세 재원 활용
 - ※ '08 분권교부세 총재원 : 내국세 총액의 0.94%(1조 2,595억원)
- 입법조치
 - 지방교부세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 개정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32. 무과업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지원확대

노·사·민·정의 타협이 이루어진 무과업 지역에 대하여는 지방교부세 등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여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음

□ 현 황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 재해 또는 지역현안사업,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을 지원
 - '08 지방교부세 규모 : 25조 7,465억원
 - * 보통 23조 5,430억원, 특별 9,455억원, 분권 1조 2,578억원
- 노사분규 해결을 이유로 현행 지방교부세 제도 내에서 지원 하는 것은 제도 성격과 미부합

□ 추진방향

-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
 - 성과 교부세 또는 특별교부세 “성과수요”를 신설하여 지원
- 성과교부세 신설(안)
 - 재원규모 : 1조원(보통 및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재원활용)
 - 지원대상 : 국가시책 참여, 상생협력·갈등관리 우수단체 등
 - 재원배분 : 시책성과, 재원운영성과 등으로 구분
 - ※ 기존 지방교부세 제도를 보완하여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 검토('08년)
- 지방교부세법 개정 추진('09년)
- 무과업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10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지방교부세제도 개선 연구 검토	←→									
지방교부세법 개정			←→							
무과업지역 교부세 지원					←→					

□ 기대효과

- 무과업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 촉진
- 해당 지방자치단체 재정확충으로 재정건전성 향상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입법조치

- 지방교부세법, 지방교부세법시행령 개정

33. 지방재정 분석제도 운용

투자성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방재정 분석제도를 운용하되, 지방이 주체가 되도록 추진체제를 전환

□ 현 황

- 지방재정의 건전성·투명성·효율성 확보를 위해 30개 재정분석 지표에 의한 분석 결과 공개
-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원
 - ※ 지원규모 : '05) 21개 단체 200억원, '06) 50개 단체 95억원, '07) 56개 단체 177억원
- 미흡단체는 재정진단 실시 후 재정건전화계획 이행 권고 이행실태 점검을 통해 건전 재정운영 도모
 - ※ 재정진단(총 30개 단체) : '05년 4개 단체, '06년 2개 단체, '07년 3개 단체

□ 추진방향

- 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재정분석을 실시하고, 행자부에서 종합 검증 및 자치단체 간 비교·평가 실시

□ 세부 추진계획

- 재정분석 절차 개선방안 마련('08년)
 - 자치단체는 재정분석 지표에 의거 자체분석 실시
 - ※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재정분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관리 시스템』 기능 보완('08년)
 - 행자부는 재정분석 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자치단체 자체분석 평가 결과에 대한 검증 및 공개 기능 수행
- 지방재정분석 진단위원회 및 지방재정분석 실무단 운영에 자치단체 참여 확대(~ '08년)
- 재정분석 우수단체, 성과교부세 지원과 연계

○ 지방재정분석 지표 개선(~ '08년)

- 전문가 자문을 거쳐 투자성과 평가지표 등 신규지표 추가

○ 지방재정 종합분석을 위한 전담조직 설치(~'09년)

- 지방재정 조사·연구·통계기능 수행 및 재정분석 제도 연구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기능 보완	↔									
자치단체 참여확대 방안 마련	↔									
지방재정분석지표 개선	↔									
지방재정분석센터 설치·운영	↔		↔							

□ 기대효과

-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사전예방
- 재정운용의 책임성·투명성·계획성 제고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총 48.4억원

- 지방재정분석·진단 연구용역 : 48.4억('08~'12년)

총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48.4억원	8.4억 (기확보)	10억	10억	10억	10억

- 지방재정분석결과 우수 자치단체, 성과교부세 지원

○ 입법조치 : 지방재정법 및 지방교부세법 개정

34. 최저가 입찰확대 및 계약심사 제도를 통한 예산절감

계약심사제도를 활용하여 중복사업과 낭비적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최저가 낙찰제도 및 원가심사제도 확대적용

□ 현 황

<최저가 낙찰제도>

-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도 단계적 확대
 - ('01) 1000억 이상 * PQ 대상(18개 공종) 공사⇒('03) 500억 이상 PQ 대상공사 ⇒(05) 300억 이상 모든 공사
 - ※ PQ (pre-qualification) : 입찰자격을 미리 심사한후 통과업체만을 대상으로 입찰하는 제도
- 다단계 하도급 등 현행 건설업 시공체계로는 최저가 확대시 직접시공자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및 부실시공 우려
- 건설 업계는 경영 애로, 선진국의 사례 등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를 확대할 경우 반발 예상

<원가심사제도>

-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전문기관에 설계서의 원가산정 적정성 심사의뢰제도 도입
 - 100억 이상 공사는 조달청(의무), 100억 미만공사는 전문기관에 의뢰(임의)
- 일부 자치단체에서 원가검토 전담 조직 또는 인력 운영
 - ※ 서울시 기술심사과 설치, 경상남도·당진군 전담인력(1명) 배치
- 공사원가의 현실화를 위하여 현재 건교부 주관으로 공사원가의 기준이 되는 품셈(2,500개 분야) 체계 개편 중
 - ※ 품셈 : 공사 단위당 투입되는 노무, 재료, 경비의 수량을 산출하는 기준

- 품셈을 실적공사비로 전환 ('07년 58%→'08년 64%→'09년 70%)
- 실적공사비 전환이 곤란한 품셈분야도 기계화 내용 등을 반영하여 현실화 추진 중 ('06년 : 487개 → '07년 : 540개)
- 자치단체는 원가검토 능력을 갖춘 인력확보가 어렵고 업계에서는 업계 경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실적공사비 제도 확대 반대

□ 추진방향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 : 재정경제부와 공동 추진

-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 추진
 - 확대금액 범위, 확대대상 공사종류 등은 별도 검토
- 부실시공, 덤핑입찰 등 최저가 낙찰제도 문제점 보완
 - 공사의 유형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도와 최고가치 낙찰제도 (best value)중 발주자가 선택 적용 가능토록 개선
 - 대기업·중소기업간 컨소시엄 형태의 「주 계약자형 공동도급 제도」 확대로 직접시공비 및 시공품질 확보
 - 건설업 시공체계 개편(건교부)과 병행하여 추진

〈원가심사제도〉 :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와 협조

- 지자체 원가심사 전문화를 위해 행자부-조달청 합동 지원 시스템 구축
 - 「원가심사 지원단」을 설치하여 자치단체 원가심사 지원
- 자치단체별로 원가검토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 추진
- 현행 품셈 등 공사비 원가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

□ 세부추진계획

- 최고가치낙찰제도 확대 도입 등 경쟁입찰 낙찰제도 정비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08년)
- 최저가 낙찰제도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 협조) ('08년)
- 원가심사제도 보완
 - 자치단체별 전담인력 (1명 이상) 배치('08년)
 - 행자부-조달청 합동 『원가심사 지원단』 설치·운영('08년 하반기~)
 -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체계 개선(~'09년)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낙찰제도정비를 위한 지방계약법 개정	←→									
최저가 확대를 위한 국가계약법시행령개정	←→									
원가전담 인력배치	←→									
원가심사지원단 설치		←→								
원가산정체계 개선을 위한 지방계약법시행령개정	←→									

□ 기대효과

- 연간 3천억원 정도(추정)의 예산 절감 효과
-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 난립 문제 해소

□ 입법조치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규칙 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방식¹⁾과 최고가치방식²⁾(Best Value)으로 크게 구분됨

1) 가격요소만을 고려, 2) 가격 뿐만 아니라 기술력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

※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가낙찰제(저가심의제 병행)는 최저가방식에 해당되며,
적격심사제 및 턴키·대안입찰은 일종의 최고가치 방식에 해당

- 최저가방식에는 대부분 우리와 유사한 **입찰가격의 적정성 심의(저가심의)가 병행되고 있음**. 다만, 각 국가마다 실제 **운용방법면에서는 다소 상이**

- 미국·일본의 경우 대체로 발주기관이 산정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심의
 - 미국의 경우 일부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저가심의에 앞서 입찰자들의 입찰가격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저가심의 수행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도 있음
 - 일본의 경우 지자체에서는 일정율(예: 예정가격의 80%) 이상 입찰자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있음

□ 선진 외국의 낙찰제도 현황

국가/기구	낙찰제도	비고(내용)
정부조달협정 (G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낙찰제 · 최고가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분한 계약이행능력 보유자 중 최저 가격 제시한 입찰자 ·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the most advantageous) 입찰자
유럽연합 공공조달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낙찰제 · 최고가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lowest price only(저가심의회 병행) · 경제적으로 가장 유리한(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입찰자
미 국 연방조달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낙찰제 · 최고가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가심의회 병행 · 협상(negotiation)을 통해 가격과 기술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발주자에게 가장 유리한 입찰자
영 국 공공건설계약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고가치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the most economically advantageous) 입찰자 ※ 영국 재무부의 정부공사 조달지침 (Government Construction Procurement Guidance)은 최고의 "Value for Money"를 제공할 수 있는 입찰자
일 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가낙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정가격의 제한범위내 최저가입찰자 · 저가심의회 병행

35. 중앙과 지역의 상생·융합·경쟁시스템 구축

- 국가차원의 통합·조정시스템을 구축, 지역지원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지역 및 광역경제권간의 연계사업 강화

□ 현 황

- 정부 부처간, 중앙-지역간 연계 부족으로 중복투자 및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 저해
 - 지역차원에서는 개별부처별로 추진되는 사업간 연계 결여
 - 중앙주도의 사업 개발 및 추진으로 지방의 자율성 미흡
 - 중앙부처별 소관사업의 지나친 세분화로 소규모 분산투자의 비효율 및 지역의 자율성 훼손
 - ※ 군특 개발계정 사업('07기준): 12개 부처에서 약 90여개 사업 추진
- ⇒ 각 지역간 사업의 통합 추진을 위한 초광역 단위 사업연계 체제 구축 및 지방의 자율성 제고 필요

□ 추진방향

-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조정시스템 구축
 - 기획, 평가, 예산운영의 일원화된 관리로 정부부처간 사업 추진의 중복성 최소화
 - 중앙-지역간, 지역간 사업의 기획·조정·집행의 공조체제 구축으로 지역에 대한 자원투입의 효율성 극대화
- 초광역사업 추진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성과 제고 및 지역지원사업간 유사·중복의 비효율 해소
- 지역주도의 자율·책임·경쟁체제 구축으로 지방 자율성 강화

□ 세부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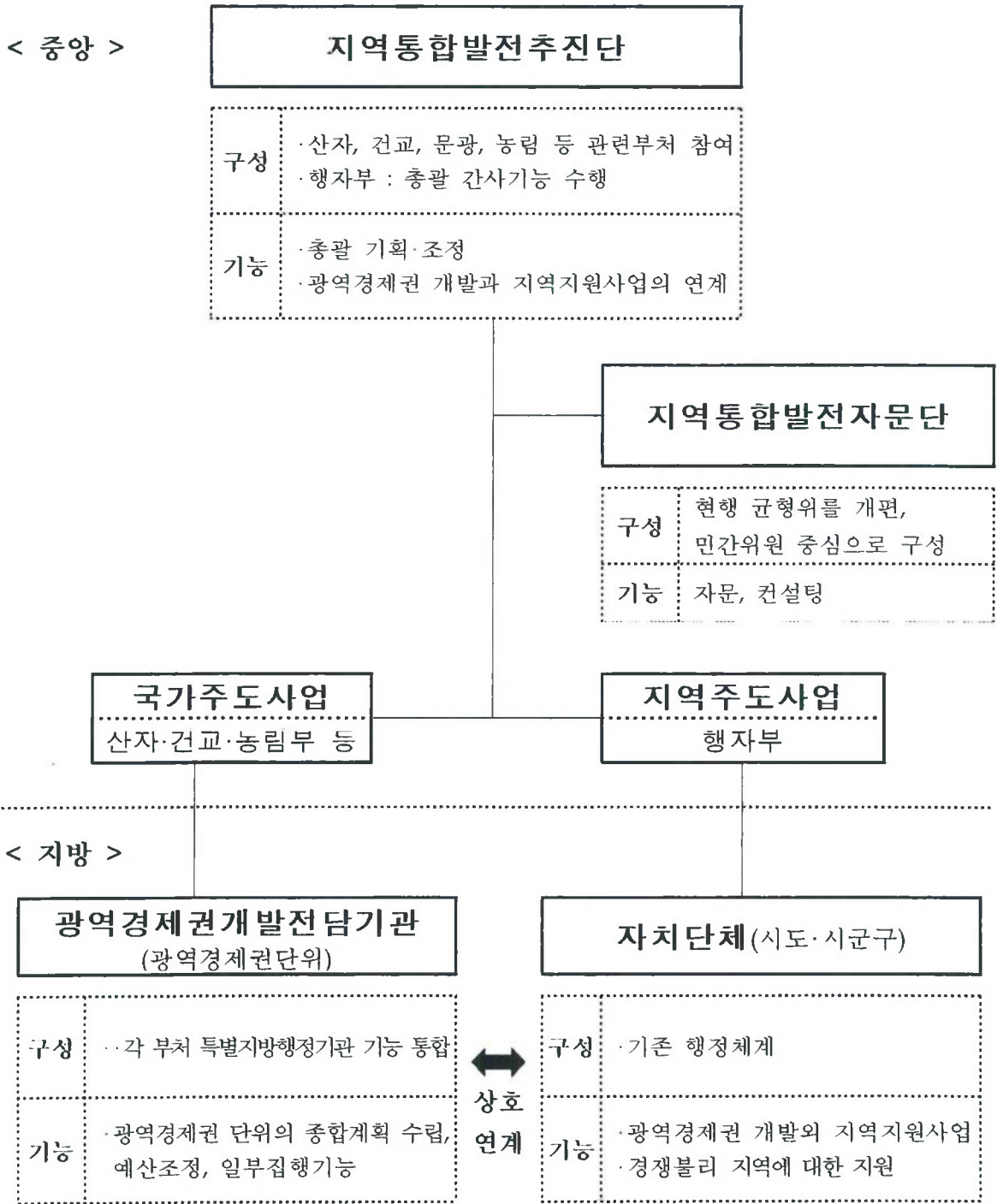
-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직속의 『지역통합발전추진기획단』 구성
 - 중앙부처간, 중앙·지역간 사업 연계·조정을 위한 총괄·기획
 - 지역 및 초광역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신사업 기획·발굴
 - 지역 및 초광역권 사업에 대한 조정 및 평가, 예산조정 등을 통한 사업간 유사·중복 해소
 - 『지역통합발전자문단』을 구성, 정책연구·자문기능 수행
 - ※ 산자부·예산처·행자부의 실무 지원기능을 기획단으로 일원화

- 광역경제권 개발 추진시스템 구축
 - 권역별 『광역경제권개발전담기관』을 신설, 광역경제권 단위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조정, 일부 집행기능 수행
 - ※ 전담기관은 특별지방행정기관 기능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연계 추진
 - 『광역경제권지원특별회계』 신설하여 체계적 재정지원
 - 권역별 성과관리 및 차등적 재정지원으로 권역별 경쟁 유도

- 지역차원의 지역주도의 자율·책임·경쟁체계 구축
 - 광역경제권 종합계획과의 연계, 기존 지역지원사업을 통폐합
 - ※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포괄적 재정지원으로 자율성 부여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를 행자부로 이관,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의 연계
 - 성과 책임성 부여를 위해 평가, 예산안 검토 등 성과관리 강화
 - 자치단체간 경쟁유도를 위해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한 특별지원프로그램』 운영
 - 경쟁 불리지역(낙후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 추진체계 개요 >

추진
체계



재원

「광역경제권지원특별회계」

- 균특회계 혁신계정
- + 기타 지역개발 관련 특별회계

「지역발전교부세」

- 균특회계 개발계정
- + 부동산교부세 등 일부 교부세 재원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균특법 개정	↔									
지역통합발전 추진기획단 구성	↔									
광역경제권개발전담 기구 구성	←					→				
광역경제권지원특별 회계 및 지역발전 교부세 신설	↔									
지역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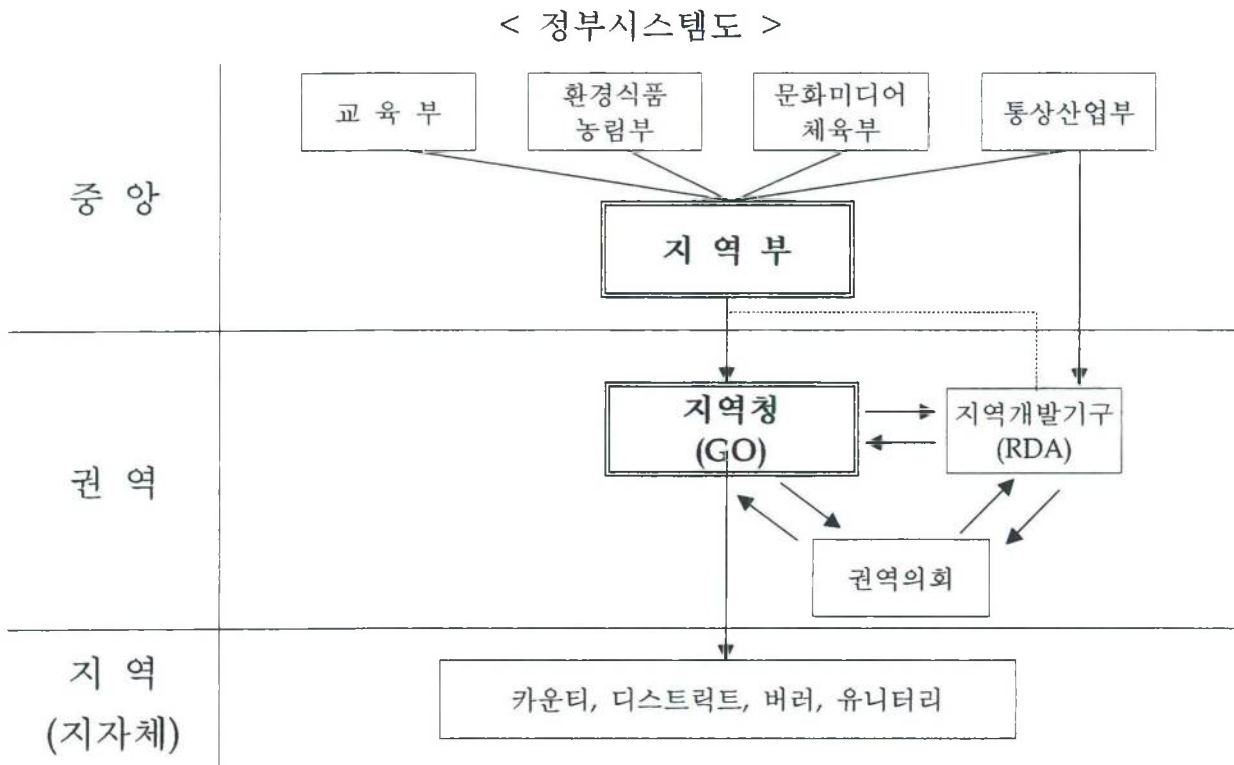
- 광역경제권 개발과 지역지원사업간 연계로 사업간 유사·중복의 비효율 해소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거점형 개발로 균형발전의 성과 향상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10억원
 - 균형발전추진체계 개편 연구용역 : 10억원
- 입법조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균특회계) 개정
 - ※ ‘지역통합발전추진기획단’, 권역별 ‘지역개발청’, ‘광역경제권지원특별회계’ 신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
 - ※ 주관부처 이관 (재경부 → 행자부)
 - 『지역활성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 ‘지역발전교부세’ 운영 등 지역주도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사항 규정

□ 지역정책 추진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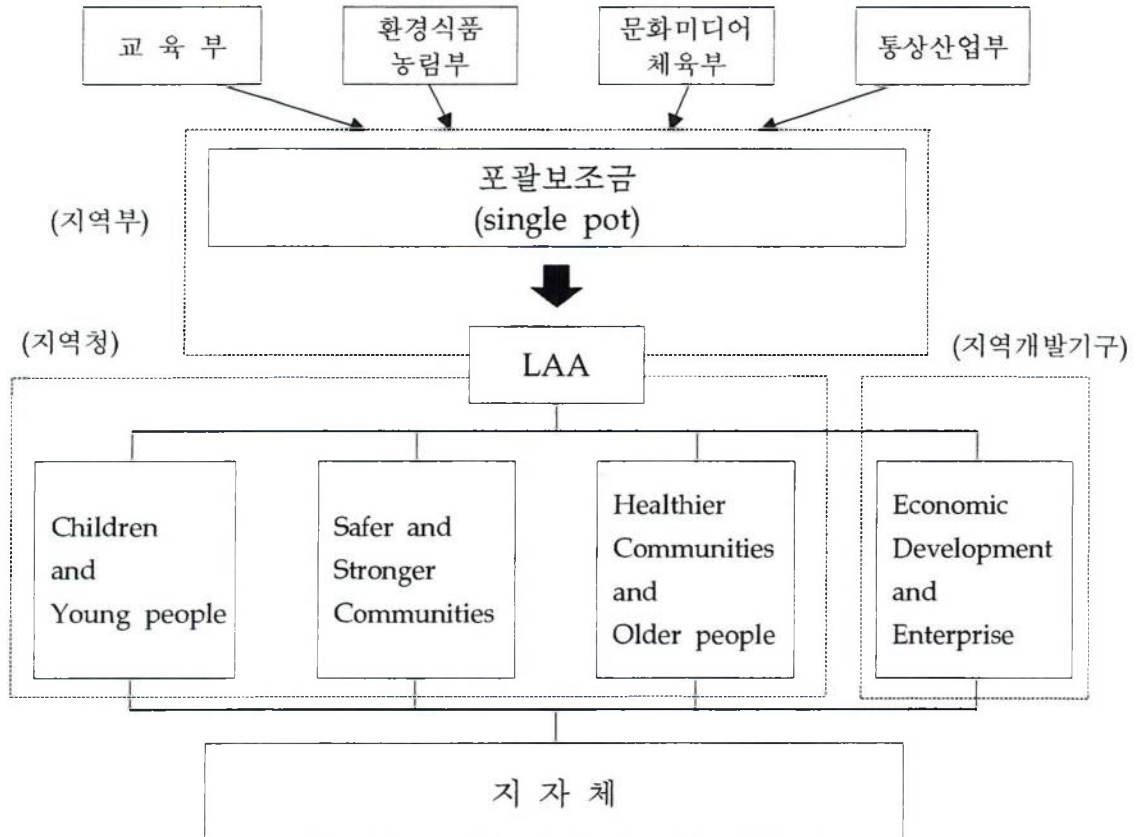
- 2000년 부수상실(ODPM) 산하에 지역조정국 신설, 지역청(GO)을 관할하며 지역정책의 원활한 조정과 통합 도모
 - 부수상실(ODPM)은 지역거버넌스, 지방정부, 사회정책 등 관장하며, 정부내 모든 부처의 지역관련 업무의 종합·조정
 - * 최근에 지역부(DCLG)로 개편
 - 9개 권역에 설치된 지역청(GO)은 지역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정·집행집행
-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정부의 각종 투자를 조정하기 위하여 **非정부 공공법인인 지역개발기구(RDA)** 권역별 설치(RES 권역경제전략 수립)



□ 지역협약(LAA : Local Area Agreement)과 포괄보조금

- LAA는 중앙정부가 상호 신뢰와 책임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에게 우선적으로 중요한 정책업무를 실천하겠다는 약속(협약)
 - 지역에서는 LAA 초안을 마련 지역청(GO)에 제출,
 - 지역청은 각종 성과목표, 지원자금, 특례 등의 적정 여부를 검토, 최종안 마련
- ※ 3년에 걸친 목표 및 목적, 자원, 성과 및 효율성의 달성 목표치를 구체적·계량적으로 제시
- 26개의 정부 지원자금들이 자동적으로 LAA의 풀에 포함, 정부의 지원 자금을 일괄화(Pooled funding streams)하고, 지역적으로 종합·간소화함으로써 성과관리와 제도적으로 연계

< 성과-예산 연계도 >



□ 필요성

- 광역경제권을 형성,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경제협력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 중앙정부의 정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 노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정책 프로그램 필요
- 지역의 자주·자립적 사업 발굴 및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지역 활성화 유도

□ 주요내용

- 지역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 기초 자치단체는 당해 지역의 개성 있고 창의적인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
 - ※ 계획인정시, 보조금 우선인정 및 지역개발사업 패키지 지원
- 『노력하는 자치단체 특별지원프로그램』을 통한 경쟁촉진
 - 독자적 시책을 전개, 노력하는 지방에 대해 교부세 등 재정지원
 - ※ 『지역발전교부세』 재원 활용
- 『특별구조개선지역』 지정 및 특례조치
 - 인구감소, 재정력 취약, 산업구조의 급속한 쇠퇴 등으로 자립적인 지역발전이 어려운 지역은 『특별구조개선지역』으로 지정, 정책 및 재정상 특례조치 강구

< 신활력사업의 행자부로의 이관 및 발전적 개편 >

- 지역선정(행자부)과 사업 추진부처(농림부)간 일원화
- 단순 재정지원에서 지역분석·진단과 연계한 지역구조개선사업(혹은 지역활성화사업)으로 발전적 개편

○ 지역분석·진단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진단결과에 따라 지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 지원

○ 규제특례 촉진 프로그램 운영

- 『지방발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 지방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완화

※ 지방발전영향평가 개념 : 기존 법령이나 제도에서 자치단체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요소가 지방의 발전이나 주민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

- 지역특화발전특구제도와 재정지원제도를 연계 운영,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추진

◁ 지역특화발전특구업무 이관 필요성 ▷

▪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여건에 따른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재경부에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2004. 3)을 제정,
- 동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으나, 재정지원 및 기존 법률의 규제 완화와 연계되지 않아 실효성 미흡

※ 일본의 경우 규제완화와 재정지원을 연계, 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재생법 제정(2005)

▪ 지역활성화 시책과 연계 추진

- 국가전체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재정경제부에서 자치단체를 총괄 지원하며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자부로 업무이관
- 교부세 제도를 활용한 재정지원제도, 지역진단·분석 컨설팅 기능과 연계 추진함이 효과적

□ 추진계획

- 정부입법마련 입법화 : '08. 상반기

36.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경제권 형성

- 인구 300만~500만 명을 포용하는 광역경제권을 형성하여 독자적 경쟁력을 확보, 지방의 적극적·자생적 발전추구
- 지역의 산업, 교통, 교육, 의료시설 등을 합리적으로 재편

□ 현 황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06),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04) 등에서 광역경제권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 개별 행정구역 중심의 균형발전시책 추진으로 지역경쟁력 제고에 미흡

- OECD 국가에서도 행정구역 중심에서 벗어나 광역기구화 추진

- 영국 : 인구 500만명을 고려하여, 9개 권역별 지역개발기구(RDA) 설치
- 프랑스 : 22개 레지옹을 6개의 대지역(Grandes regions)으로 개편 구상
- 독일 : 최소 인구규모 500만의 현행 16개주를 9개 주로 개편추진
- 일본 : 47개 도도부현을 6-12개의 道州制로 개편하는 논의 지속

- 최근 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경제통합 논의 활발히 전개

□ 추진방향

- 광역경제권 형성의 실질적 효과가 나타나도록 행정구역, 지역 개발추진기구 개편 등 의사결정기구 통합문제 적극 추진
 - 행정계층구조 개편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문제와 연계 검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립적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 연계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광역경제권 형성

-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원 등이 참여, 적정규모의 인구와 산업기반을 갖춘 5~6개 초광역 경제권 형성

◁ 광역경제권 형성시 고려사항 ▷

- 기존 행정구역, 경제적·기능적 연계성, 역사·문화적 동질성, 자연 지리적 특성 등
- 권역별로 교육·의료·복지·문화 등의 생활서비스 자족성

○ 광역경제권 개발 추진계획 수립

- 지역전략산업 육성, 혁신도시 건설, 지방금융기관 육성, 국제 인프라 구축 등 기존 산업·금융·공간정책의 합리적 개편
- 산자부, 행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 교육·의료·문화 등 지역생활여건의 종합적 개선과 연계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추진체계 구축, 법·제도 정비 등 추진기반 마련

- 광역경제권 개발 추진을 위한 국가차원의 통합·조정체계 구축
 - ※ 중앙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역통합발전추진 기획단」 구성
 - 지역 : 각 부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통합, 권역별 「지역개발청」 구성

◁ 추진체계 구축시 고려사항 ▷

- 기존 행정계층(시도 및 시군구)과 권한 중복·충돌 가능성
- 중앙부처와 광역경제권 개발기구간의 의사결정구조

- 광역경제권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광역경제권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관련 법·제도 정비
- 지방재정 확충(교부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 등을 통해 자립형 지역경제 기반 마련
- 산·학·연 지역협력체계(RIS) 구축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광역경제권 형성	↔									
○추진체계 구축	↔									
○관련 법·제도 정비	↔									
○추진계획 수립		↔								
○본격적 사업추진			↔							

□ 기대효과

- 규모의 경제를 통한 균형발전사업 효율성 제고
- 지방의 자생적 발전을 통한 특성화 발전 가능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10억원

- 광역경제권 형성 연구용역 : 10억

※ 관계부처 및 국책연구원이 참여, 광역경제권의 형성 및 세부 추진방안 연구

- 사업추진 예산은 추진계획 수립시 기존 사업예산과 조정, 전체 소요예산 및 연도별 소요예산 규모 산출

○ 입법조치

- 현행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광역경제권지원 특별회계' 신설 등 관련 규정 정비

- 교부세율 인상,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부세법」 등 관련 법령 개정

37. 'Designed in Korea' 멋진 한국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공공디자인 확산으로 창조적 생활공간 조성
디자인 교육 강화, 디자인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현 황

- 60년대 이후 대규모 양적 지역개발정책 추진으로 지역특성과 미관에 대한 배려 부족 및 획일적 도시 양산
- 아름다움과 지역특성이 도시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를 맞아 삶의 질 및 공간의 품격 개선에 시대적 요청 증가
- 최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부처별로 산발적 노력을 전개, 도시의 토털디자인 개선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종합적 접근 필요
 - 22개 기관에서 100여종 가로시설물 개별관리(신호등, 보도블럭, 지하철환기구, 옥외광고 등)
 - 자치단체의 지역디자인에 대한 전문성 부족, 추진체계 미구축

□ 추진방향

- 국가디자인위원회 신설, 부처별 합리적·효율적 역할분담 등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범국가적 국가디자인 개선 종합계획 수립·추진
 - 디자인 가이드라인 마련, 중앙·지방간 역할분담, 시범사업 추진, 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평가, 공공디자인상 제정 등 대책 추진
- 디자인 핵심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디자인 교육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범정부적 『국가디자인위원회』(NDC) 구성

- 국가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디자인관련 중요사항 심의
- 국가디자인 종합계획에 의거 **관련기관별 소관기능 수행**
 - ※ 행자부(공공건물, 공공시설, 옥외광고), 산자부(산업디자인), 문광(문화), 건교부(국가도로·철로), 소방방재청(안전시설), 경찰청(교통표지판) 등
- 지역디자인 업무의 자치단체 고유사무적 성격, 초기단계 전국 확산·파급을 위해 **행자부가 자치단체 지역디자인 종합지원기능 수행**
 -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간판 등 공공디자인 연구·개발기능 수행
 - 지역디자인 시범사업 『디자인 대상』 운영을 통해 국가적 범업 조성

○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지역디자인 전담조직 설치

- 국가 종합계획에 의거 지역단위의 디자인 개선 시행계획 수립·추진
- 지역디자인 전담기구, 인력 및 예산 등 추진기반 대폭 확충
 - ※ 서울시는 디자인 총괄 본부를 부시장급 기관으로 기 설치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종합계획 수립	↔									
지역디자인 시범사업		←————→								
지역디자인 대상		←————→								
전담 기구 설치	↔									
디자인 교육기관 신설		↔								

□ 기대효과

- 범정부차원의 추진체계 구축으로 종합적·체계적 국가디자인 사업 추진 가능
- 삶의 질, 공간의 품격 개선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의 성과 도모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총 490억원
 - 국가디자인 개선 연구용역 및 지역디자인 대상 : 매년 10억
 - 지역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매년 5개 (3년간 지역별 매년 10억)

총 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490)	-	60	110	160	160
총괄예산 (40)	-	10	10	10	10
시범사업 (450)	-	50	100억	150억	150억

○ 입법조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 촉진법』 제정

※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박찬숙의원 대표발의) 및 산업디자인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법사위 계류중

장기과제(6건)

〈장기과제 목록〉

- 38.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
- 39. 노사관계의 법치화
- 40. 위임사무 폐지 및 국가·자치사무 이원화
- 41. 지방기금의 효율적 운영
- 42.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
- 43. 신 농촌-도시지역 상생발전 전략

38. 절약하며 일 잘하는 실용정부 구현

열심히 일 잘하고 대우받는 공직문화 정착(성과와 보상의 합리적 연계,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혁신성과 추구)

□ 현 황

○ '성과와 경쟁' 중심의 정부운영체제 도입·운영

- 정부업무평가시스템, 직무성과계약제, 고위공무원단체, 총액인건비제, 총액배분 자율편성예산제(Top-down) 도입 등
- 온나라 BPS(업무관리시스템)으로 일하는 방식 표준화·효율화

○ 공직내부의 일하는 방식 개선에 치중,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성과는 미흡

- 지자체·교육·공공기관 등 국민생활 접점분야에서 성과 가시화 부족

□ 추진방향

창조적 실용정부 구현

저비용 고효율의
정부운영체제

국민을 섬기는 정부

- 서구의 실용주의(Pragmatism)와 우리나라 실학의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접목하여 '창조적 실용정부' 철학 정립
 - * 외국(중국 등소평, 프랑스 사르코지, 독일 메르켈 등)의 실용주의 사례연구
- '경제살리기' 관련 민생과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하는 '서비스 정부' 실현

□ 세부 추진계획

가. 새 정부 국정운영 철학의 정립 및 전파

-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새로운 공직자상' 확립
- 장·차관 워크숍 및 실·국장 연찬회 실시
 - *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연찬회 별도 추진

나. 열심히 일 잘하고 대우받는 공직문화 정착

- 실시간 국정관리 시스템 등 '일 잘하는 방식'의 공직내 정착
 - 온-나라 BPS(업무관리시스템) 중심 통합적 국정관리 완성
 - * 국정관리·디지털예산회계·전자통합평가·지식관리·기록관리 등과 연계
- 고객과 성과를 지향하는 생산적 공직문화 구현
 - 일 잘하는 공무원이 대우받는 성과관리제도 지속적 개선
- 창조적 변화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선진화
 - 조직·기능 재편후 성과 창출을 지원하는 맞춤형 컨설팅 추진
 - * 민간의 최첨단 컨설팅 기법을 활용, 부처별 성과 창출 지원

다.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 정부 실현

- 국민생활 관련 민생과제 적극 해결
 - 교육·부동산·일자리 창출 등 국민체감 정책과제 중점 발굴·해결
 - One-stop 민원서비스 등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 개선
- 정책단계별 국민참여와 소통 활성화로 정부 신뢰성 제고
 - 정보공개법 전면 개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 공개 달성
 - 전자공청회, 전자 시민투표 등 온라인 국정참여 활성화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열심히 일 잘하고 대우받는 공직문화	새 정부 국정철학 교육	←→									
	일 하는 방식 혁신	←→									
	생산적 공직문화 구현	←→									
국민을 섬기는 서비스정부	창조적 변화역량 지원	←→									
	민생과제 중점 발굴·해결	←→									
	국민참여 채널 다양화	←→									

□ 기대효과

- 성과중심의 공직문화 정착으로 행정의 효율성 증대
 - 온-라인 기반 업무속도 향상, 시스템에 의한 업무수행 등
- 국민의 혁신체감도 향상
 - 경제 살리기관련 민생과제를 해결하여 체감도 제고(목표 : 70점 이상)
 - ※ 국민의 혁신체감도(미디어리서치 조사) : '06년 49.8점 ⇒ '07년 54.6점
- 국가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 격상
 - 정부혁신으로 세계 7위권 국가경쟁력 달성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총 578억원(연간 126억원)
 - 공직문화 정착 : 65억원, 서비스 정부 실현 : 61억원

총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578억원	126억 (기확보)	113억	113억	113억	113억

※ 새정부의 예산 10% 절감방침에 따라 '09년부터는 10% 감축

○ 입법조치

- 『정부의 효율성 및 서비스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국회계류중)

참고	주요 선진국의 정부개혁 동향
----	-----------------

• 1990년대 이후 세계 각국은 공공부문에 대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

국 가	주요 내용
미 국 (클린턴/부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중심, 감축관리, 성과관리, 규제완화, 민간과의 협력(클린턴), 관리직 감축, 민간화 등 정부를 국민중심으로 변화(부시) ○ 대통령 정부운영협의회(PMC), OMB(관리예산처), OPM(인사관리처)
영 국 (블레어/브라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책임성·투명성 강화, 민간 참여와 파트너십(블레어), 교육·고용·주거 등을 중심으로 개혁 추진(브라운) ○ 미래전략기구(Forward Strategy Unit, 수상실), 공공서비스과학청(OPSR), 서비스 전달기구(Delivery Unit) 등 신설
프 랑 스 (사르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인력감축, 부처 축소, 국민서비스 향상 등 ○ 예산·공공책임·행정서비스부(행정서비스 담당장관) ※ 공공부문 정책혁신 권고 발표('07.12.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수요에 대응하는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 작은정부에 기반한 예산절약 등 기본적 개혁방침 및 각 부처별 개혁, 지방정부 개혁 방침 등 발표
독 일 (메르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적자 감축, 경제 활성화, 실업해소, 사회복지제도 개혁 등 ○ 내무부(공공서비스국, 행정조직 및 행정현대화국) ※ '현대화된 국가 - 행정현대화(1999~)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현대화-행정혁신, 관료적 절차와 규제철폐, 전자정부 구현 - 구조개혁(기구 18.5%, 인력 8.8% 감축, 7억 5천만 유로 예산절약)
일 본 (고이즈미/후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각기능의 강화(중앙성청 개혁), 규제완화, 분권화 ○ 총리직속의 내각부가 정부혁신 작업 주도 2006.5 행정개혁추진법 등 행정개혁 관련 5개법마련 ※ 중앙성청 개편(2001) : 1부(총리부) 22성청→1부(내각부)11성 '총리부→내각부'로 확대개편, 수상의 권한강화, 실질적 정부인력 감소에는 실패
중 국 (후진타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발전 우선정책 추진, 시장화, 공업화, 개방화 ○ 국무원 국가발전개혁위원회(State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 제11차 5개년 계획(2006-2010) : 농업, 첨단기술, 제조업, 교통인프라건설, 환경, 과학기술, 교육, 공공설비 등 중앙정부가 추진할 사업들을 제시

39. 노사관계의 법치화

합리적 노사관계의 확립을 위해 '법의 지배' 원칙을 세우고, 노동관련 법규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맞도록 정비

□ 현 황

- “직장협의회법”(1999), “공무원노조법”(2006)의 시행으로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제도적 보장
 -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법단체의 합법전환 완료(07.10)
 - 건국이후 첫 정부교섭의 원만한 타결(07.12)로 노사문화를 “대립과 갈등”에서 “상생과 협력” 관계로 전환하는 계기 마련
- 공무원의 노동기본권과 관련하여 국제기구(ILO)와 공무원노조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
 - ILO는 공무원단결권 확대, 파업권 보장 등 권고(06.3/'07.6)
 - 일부 강성노조는 노동3권의 완전 보장, 해직자 구제 등의 강력요구로 노사간 갈등의 불씨 잔존

□ 추진방향

- 공무원단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일관성 있는 대응 및 협력적 파트너십 형성으로 생산적 공무원노사관계 정립
- 공무원노조법과 직장협의회법간 기능 재정립, 법령 개정 등으로 합리적 노사관계의 제도적 틀 구축

40. 위임사무 폐지 및 국가·자치사무 이원화

위임사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분리, 이원화하여 권한과 책임소재의 명확화를 기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 강화

□ 현 황

- 지방자치법 제정(1949.7.4)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중 위임사무가 중요한 사무유형으로 유지
 - * '02년 조사결과 전체 지방사무 중 위임사무는 약 11.5%(1,311건)
- 기관위임사무 정비를 위해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분권과제로 추진하였으나, 학계·실무차원의 합의 부족으로 종결('07.2)
- 국가사무의 지방적 수행이라는 장점과 지방의 자율성 침해라는 단점을 동시에 갖는 위임사무의 존폐에 대해 이견 첨예
 - 학계도 존폐론이 대립하고 있고, 실무상 기관위임이 널리 활용

□ 추진방향

-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해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
 - 중앙부처, 자치단체, 학계 등과 실현가능한 대안에 관해 논의 필요
 - * 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모든 중앙부처와 협의, 공동추진
- 사무유형을 단순화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재원 배분을 병행하여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단계별 사무조사를 통한 위임사무 현황 파악('08년)
 - 정비 대상이 되는 부처별·법령별 위임사무 통계 산출
- 실행방안 마련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 및 운영('08년)
 - 그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사무구분 개선방안 모색
 - 위임사무의 국가 또는 자치사무 전환 방안, 재원의 병행배분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
-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사무구분체계의 정비('08~'09년)
 - 사무유형, 사무배분 기준, 위임사무 표현삭제 등
- 개별법령 개정 및 사무·재원의 재배분 추진('09~'12년)
 - 개별법령상 위임조항 삭제, 사무 재배분, 재원확보 조치 등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위임사무 현황파악	↔									
T/F 구성 및 운영	↔									
지방자치법 개정			↔							
개별법령 개정			↔							

□ 기대 효과

- 국가의 포괄적 감독이 제한되고, 국가와 지방의 역할이 명확하게 설정됨에 따라 지방의 자주적·종합적 행정이 가능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없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활용 개선방안 도출)
- 입법조치 :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개정, 위임사무가 규정된 개별 법령 개정

□ 추진배경

- 중앙집권형 행정시스템을 주민중심의 개성있는 지역사회로 전환하여 세계화, 고령·저출산, 동경 일극중심을 시정하기 위함
- * 지방분권추진위원회(1995년 발족) 주도로 정부내부 합의를 거쳐 제정된 지방분권일괄법이 시행(2000년 4월)되면서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이 일괄 개정되고, 지방분권 개혁이 가속화

□ 주요 내용

- 국가역할을 한정하고 지방의 자주적·종합적 역할 명시
 - 국가는 국가존립, 전국적 통일성, 기본준칙, 전국적 규모의 시책이나 사업을 담당하고, 지방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행정을 담당
-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구분체계 재구성
 - 기관위임사무를 국가·자치사무로 전환하는 한편,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이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절충적 형태인 법정수탁사무로 전환
 - * 기관위임사무 전면 폐지를 중앙이 강력하게 반대함에 따라 법적으로 자치사무이나 국가의 관여가 인정되는 법정수탁사무 신설
- 새로운 사무구분에 따른 국가 관여의 재검토
 - 위임사무 폐지로 포괄적 지도감독은 없어지고, 법령에 의한 관여만이 인정되었으며, 사무유형별 관여수단을 명시

□ 시사점

- 국회,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기관위임사무 폐지 등 분권적 개혁 추진
- 국가와 지방의 역할 재설정과 중대기능의 지방이양, 사무구분체계 개선을 병행함으로써 학습비용의 최소화

41. 지방기금 예산의 효율적 운영

불필요한 기금의 통·폐합, 기금여유자금 통합적 관리·운용, 기금성과분석제도 활성화 등을 통한 기금운용의 효율성 제고

□ 현 황

- '06년말 현재 지방기금은 총 2,149개(224종), 17조 9,821억원으로 민선이후 기금의 조성액이 증가하는 추세임

※ ('02) 176종 11.4조 → ('04) 198종 14.9조 → ('06) 224종 17.9조

- 일부기금은 재원 영세성으로 운용실적 미흡, 개별법령에 의한 설치 강제로 재정운용의 탄력성 저하 및 통·폐합 곤란 등 문제점 발생

※ 개별법령으로 설치 : 1,485개(69%) 7.7조원, 자체조례로 설치 : 664개(31%) 10.2조원

- 기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 기금운용의 효율성 등 제고를 위해 성과분석제도를 도입 추진(지방기금법 제정, '06.1시행)

- 모든 기금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사업운용성과 등 성과분석

※ 사회복지기금 625개('06), 재난관리기금 등 4종 686개('07) 실시

□ 추진방향

- 지방기금운영 건전성 제고

- 불필요한 기금 및 회계간 중복·유사기금 통폐합 등 추진

-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효율성 제고

- 통합관리기금 설치 확대, 여유자금의 활용 다양화 등 추진

- 「성과분석」 강화로 기금운용의 실효성 확보

- 분석지표 개선, 분석체계 개선 등 추진

참고 1 기금제도 현황

□ 기금의 의의 및 설치·운용 절차

-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안정적인 자금지원 및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과 별도 운용하는 재원
- 개별법령,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지자체 조례설치·운용
※ 조례안 ⇒ 입법예고 ⇒ 조례심의회 의결 ⇒ 지방의회 의결 ⇒ 공포

□ 기금의 분류 및 재원조성

- 목적에 따라 사업관리기금, 융자성기금, 적립성기금 등 구분하고 지자체 출연, 민간 출연, 부담금,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재원조성

□ 기금의 설치제한 및 일몰제(지방기금법 제3조, 제4조)

-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고자 하는 중앙부서는 행자부와 사전 협의, 기금의 존속기한을 정함(5년, 필요시 10년)

□ 기금의 통·폐합 의무화(지방기금법 제15조)

- 설치목적 달성, 목적달성 불가능, 회계와 기금간 또는 기금 상호간 유사·중복, 재정운용 효율성 등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법률에 의무화된 기금 : 지자체 ⇒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 ⇒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 ⇒ 통·폐합 지자체장 통보

□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지방기금법 제16조)
-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자치단체 조합을 설립, 지역발전협력기금을 설치 가능(지방기금법 제17조)

□ 기금의 성과분석(지방기금법 제14조)

- 모든 기금에 대하여 3년에 1회 이상 사업운용성과 등 성과분석 실시
※ 사회복지기금 625개('06), 재난관리기금 등 4종 686개('07) 실시

참고 2 시·도별 예산대비 기금현황(2006년말 기준)

(단위 : 억원, %)

시·도별	2006 최종예산		2006말 기금조성액	예산대비 비율	
	총 계	순 계		총 계	순 계
총 계	1,500,216	1,154,722	179,821	12.0	15.6
서울	222,288	171,509	95,230	42.8	55.5
부산	83,271	64,313	7,426	8.9	11.5
대구	51,691	39,457	1,268	2.5	3.2
인천	65,019	51,931	4,361	6.7	8.4
광주	32,690	24,716	949	2.9	3.8
대전	32,636	24,446	3,362	10.3	13.8
울산	25,986	20,503	1,264	4.9	6.2
경기	294,780	230,640	28,148	9.5	12.2
강원	106,037	75,430	4,142	3.9	5.5
충북	58,881	45,899	3,874	6.6	8.4
충남	86,399	66,992	4,356	5.0	6.5
전북	75,952	58,005	3,766	5.0	6.5
전남	108,120	81,774	4,317	4.0	5.3
경북	110,635	84,852	5,918	5.3	7.0
경남	118,478	93,009	7,851	6.6	8.4
제주	27,352	21,246	3,589	13.1	16.9

※ 시·군·구 포함

42.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

지방공기업의 민영화·통폐합 등 경쟁력 강화 추진

□ 현 황

- '99년 설립허가권 지방이양 후 지방공기업 수 지속증가
 - ※ 지방공사·공단 수 : 57개('99)→76개('03)→97개('05)→112개('07)
 - ※ 분야별('07) : 지하철공사 7, 도시개발공사 16, 시설관리공단 69, 기타 19
- 지방공기업 중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은 건전재정을 유지하나, 지하철은 만성적 적자경영 상태('06: △8,556억원)
 - ※ 당기순손익 : △7,890억원('00)→△7,333억원('03)→△7,204억원('06)
- 국가공기업에 비해 자산규모는 적으나, 상·하수도, 지하철, 임대주택, 공공시설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제공
 - ※ 자산규모(조) : 지방공기업 전체 32, 국가공기업(주공 40, 코레일 38, 도공 36)
- 지방공기업 경영부실·민간영역 침해 등 일부 부작용 발생
 - 지방직영기업의 경우, 전문성 확보곤란·책임경영체제 미흡 등

□ 추진방향

- 경영평가·경영진단을 통한 부실공기업 민영화 등 구조조정 및 지방상수도 구조개편 추진
- 설립허가권 지방이양에 대응한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대책 마련
- 중장기 로드맵 마련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경영혁신 추진
 - 경영혁신의 상시화를 통한 효율성 및 투명·건전성 강화

□ 세부 추진계획

- 경영평가 결과 부실공기업 민영화·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
 - 공사·공단 존립타당성 검토 의무화, 경영진단 「2진 아웃제」 도입 등
 - 지방상수도 공사화, 민간위탁 등 민영화 검토·추진
- 지방공기업 남설 방지를 위한 지방공기업법령 개정 등 추진
 - 설립심의위원회 민간위원 과반수 참여, 설립검토기관 요건 강화
 - 설립 전 광역·기초지자체간 협의 의무화, 표준매뉴얼 제공 등
- 지방공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로드맵 마련·추진
 - 만성적자기관 인력감축, 경영공시 강화, 임원 임명제도 개선 등

<추진일정>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경영혁신 로드맵 마련	↔									
남설방지 등 법령개정		↔	↔	↔						
부실기관 구조조정 추진		↔	↔	↔	↔	↔	↔	↔	↔	↔

□ 기대효과

-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고객만족 경영 정착
- 지방공기업의 자율·책임성 및 경영의 효율성 강화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14억원
 - 경영진단 확대 실시(6.5억원), 경영컨설팅 서비스 제공(7.5억원)

총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4억원	2.8억원	2.8억원	2.8억원	2.8억원	2.8억원

- 입법조치 :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령 개정

43. 신 농촌-도시지역 상생발전 전략

- 농촌지역은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및 새마을 운동 추진
- 도시지역은 WHO건강도시 육성 및 340개 건강지표 추구

□ 현 황

- 도시지역의 생활의 질 열악 및 농산어촌의 존립위협 가중
 - ※ 교통난 ('02년 수도권 교통혼잡비용 12.4조), 환경난 ('06년 미세먼지농도 OECD 국가중 1위, 주택난 '06년 1인당 주택면적 한국 6평, 영국 13평, 미국 18평)
 - ※ 농촌인구 비중 ('60년 61% → '05년 11.6%), 고령화율이 도시의 2~3배
- 중앙주도 및 성장지상주의로 지역역량 약화 및 개성없는 지역의 양산
- 종래에 각 부처별 농촌지역 대상 마을개발사업의 낮은 성과 및 유사사업을 분산 추진함에 따른 비효율과 중복 초래
 - ※ 농촌·어촌·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 정주기반확충사업, 농촌·어촌체험마을 등
- 새로운 개념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도 총괄적 기획·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부처간 사업내용, 기간, 추진방식이 상이
 - ※ 행자부(살기좋은 지역), 건교부(살고싶은 도시), 농림부(잔원마을), 문광부(가고싶은 섬) 등

□ 추진방향

- 관련 사업들을 통폐합하고 지방에 이양하여, 지역주도로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색있는 마을 단위 발전계획을 수립·추진
- 정부는 지역을 지원하는 사업들의 체계적 조정·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지방에서 부족한 전문가 지원 등 자문역할 수행
- 국민실천역량 강화 및 의식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새마을운동 추진

□ 세부 추진계획

- 마을단위 발전사업의 추진권한을 지방에 이양, 자율추진 지원
 - 기초지자체별로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추진
 - 정부는 관련 전문가 및 재정지원 등 후견인 역할 수행
 - ※ 행자부가 총괄기획 및 자원배분, 관계부처는 교육·의료 등 전문분야 지원
- 시범사업 추진으로 마을발전방식의 질적 방식으로 대전환 유도
 - 의지와 여건이 되는 시범지역을 선정·지원하여 성공사례 창출·확산
 - ※ 현재 30개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중, 격년으로 15개씩 선정·지원
- '08년부터 시범사업의 추진틀을 확산, 230개 시군구에 적용하여 종래 마을발전 방식을 전면개편
 - ※ 추진방식 : ①공간의 질 제고, ②삶의 질 향상, ③공동체 복원, ④소득기반 강화 등이 상호연계, 지역의 부존자원을 활용한 특성화된 발전추진
- 지역재창조를 국민생활운동화하기 위한 새마을운동 추진
 - '70년대 '새마을운동'의 장점을 살려 범국민적 운동으로 발전
 - 주민리더 양성 등 주민교육 강화, "마을가꾸기", "우리마을 보물찾기" 등 주민실천운동 전개
- 각종 마을개발사업 관련재원을 통합,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 ※ 일본은 관련 국고보조금을 통합('04), 마을만들기 교부금 신설('06, 6조원)

<추진일정>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1/2	2/2	1/2	2/2	1/2	2/2	1/2	2/2	1/2	2/2
지역별 마을단위 발전계획 수립		←	←	←	←	←	←	←	←	←
시범사업 추진	←	←	←	←	←	←	←	←	←	←
새마을운동 추진		←	←	←	←	←	←	←	←	←

□ 기대효과

- 개성과 특성을 가진 대한민국의 도시와 농산어촌 구현으로 우수한 인재와 기업의 유인 및 국가경쟁력 상승에 기여
- 도시지역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으로의 청년층 유입 및 산업발달로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 유도

□ 소요예산 및 입법조치

○ 소요예산 : 총 1,634억원

- 정책연구, 기획홍보 등 총괄지원 예산: 96억('08~'12년)
- 시범지역(마을) 지원예산: 930억('08~'11년)

* '07년 선정 30개에 대해 5('07)-7('08)-8억원('09)씩 지원, 이후 격년으로 15개 선정하여 3년간 5-7-8억원 지원

- 우수마을 지원을 위한 지자체 인센티브 예산 : 608억('09~'12)

(단위 : 억원)

총 예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 (1,634)	226 (기확보)	383	285	375	365
총괄예산 (96)	16	20	20	20	20
시범사업 (930)	210 (종래 30개×7)	240(30개×8) 75(신규 15개×5)	105 (15개×7)	120(15개×8) 75(신규 15개×5)	105(15개×7)
인센티브 (608)	-	48(16개×3)	160 (32개×5)	160 (32개×5)	240 (48개×5)

○ 입법조치

- 가칭 『마을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